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삼 식 (한양대학교 교수)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 기 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승 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염 혜 경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449-01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목 차

요약	1
I. 서론	4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1
3. 연구 범위	55
4. 평가 지표 개관	61
II. 연구의 배경	63
1. 선행연구 개관	65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환경 변화	67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재정 분석	82
III.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91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93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100
3. 종합 및 시사점	134
IV. 아동 돌봄 사업군 사회보장지원현황 및 평가	143
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145
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151
3. 부문 종합 평가	176

V.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81

- 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183
- 2. 요보호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196
- 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222
- 4. 학교밖 및 위기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253
- 5.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종합 279

VI. 총괄 평가 및 정책 제언 289

- 1.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291
- 2.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305
- 3. 재정 구조 관련 개선점 314
- 4.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318

참고문헌 321

부록 327

- 부록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사업 329
- 부록 2. 아동돌봄 사업군 평가 사업 352
- 부록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사업 368

표 목차

〈표 I-2- 1〉 전문가 조사 목표 표본	53
〈표 I-2- 2〉 전문가 응답자 특성	53
〈표 I-2- 3〉 평가단 회의 및 정책연구 실무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현황	54
〈표 I-3- 1〉 사회보장 기본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군 구분 (강신욱 외, 2015)	56
〈표 I-3-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59
〈표 I-3- 3〉 생애주기 및 지원 범위, 기능별 사업 분류	60
〈표 I-4-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61
〈표 II-2- 1〉 영·유아 돌봄 현황	70
〈표 II-2- 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및 아동 현황	72
〈표 II-2- 3〉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추이	75
〈표 II-2- 4〉 초등학교 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	76
〈표 II-2- 5〉 초등학생 오후 돌봄 참여 현황	77
〈표 II-2- 6〉 가구유형별 참여 현황	77
〈표 II-2- 7〉 아동학대 피해 아동 추이	79
〈표 II-2- 8〉 청소년 스트레스, 우울감 및 자살 시도	81
〈표 II-2- 9〉 청소년 가출 경험 및 사유, 2017	81
〈표 II-3- 1〉 영유아, 아동, 청소년돌봄 관련 세출예산 구조	83
〈표 II-3- 2〉 영유아, 아동, 청소년돌봄 관련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85
〈표 II-3- 3〉 보건복지부 회계별 예산현황	86
〈표 II-3- 4〉 교육부 회계별 예산현황	86
〈표 II-3- 5〉 여성가족부 회계별 예산현황	87
〈표 II-3- 6〉 보건복지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87
〈표 II-3- 7〉 교육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88
〈표 II-3- 8〉 여성가족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89
〈표 III-1-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개요	95

〈표 III-1-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의 지원 방식 및 목적별 구분	97
〈표 III-1- 3〉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99
〈표 III-2- 1〉 연도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101
〈표 III-2-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지원 대상자 연령 구분	102
〈표 III-2- 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이용 기관 및 취약여부 등에 따른 지원 대상 분류	103
〈표 III-2- 4〉 OECD 회원국의 ECEC 재정 체계	107
〈표 III-2- 5〉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예·결산 현황	111
〈표 III-2- 6〉 영유아 보육 사업군 재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112
〈표 III-2- 7〉 연도별 및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113
〈표 III-2- 8〉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	115
〈표 III-2- 9〉 시간 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현황	116
〈표 III-2-10〉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117
〈표 III-2-11〉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118
〈표 III-2-12〉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 및 수탁처 수	119
〈표 III-2-1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지원 대상자 현황	125
〈표 III-2-14〉 사업별 성과 관리 지표 및 달성 여부	131
〈표 III-3-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136
〈표 III-3-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 단계	138
〈표 III-3- 3〉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성과, 영향 단계	139
〈표 IV-1- 1〉 아동 돌봄 사업 및 평가 대상	146
〈표 IV-1- 2〉 아동 돌봄 평가 대상 사업의 지원 방식 구분	147
〈표 IV-1- 3〉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149
〈표 IV-2- 1〉 사업별 지원 대상자 연령 구분	152
〈표 IV-2- 2〉 사업별 서비스 신청자수와 이용자수	154
〈표 IV-2- 3〉 아동 돌봄 사업군 예·결산 현황	157
〈표 IV-2- 4〉 아동 돌봄 사업군 예산 증감 현황	158
〈표 IV-2- 5〉 방과후 보육료 지원규모액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158
〈표 IV-2- 6〉 아동 돌봄 사업군 재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159

〈표 IV-2- 7〉 아동 돌봄 사업군 대상자 규모 및 서비스 이용자 비율	160
〈표 IV-2- 8〉 아동돌봄 사업군 지원 방식	164
〈표 IV-2- 9〉 아동돌봄 사업군 모니터링 방법	166
〈표 IV-2-10〉 아동 돌봄 사업군 서비스 이용자 현황	168
〈표 IV-2-11〉 아동 돌봄 사업군 시설수 대비 인원	169
〈표 IV-2-12〉 아동 돌봄 사업군 인력 대비 실인원	169
〈표 IV-2-13〉 아동 돌봄 사업군 향후 추진 계획	171
〈표 IV-2-14〉 아동 돌봄 사업군 성과 달성률(2017년 기준)	173
〈표 IV-2-15〉 아동 돌봄 사업군 성과 절차	174
〈표 IV-2-16〉 아동 돌봄 사업군 만족도	174
〈표 IV-3- 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177
〈표 IV-3- 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단계	178
〈표 IV-3- 3〉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성과, 영향	180
〈표 V-1- 1〉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대상특성별 분류	184
〈표 V-1- 2〉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기능별 분류	185
〈표 V-1- 3〉 아동·청소년보호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포괄성 분류	186
〈표 V-1- 4〉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 법의 정의	187
〈표 V-1- 5〉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188
〈표 V-1- 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189
〈표 V-1- 7〉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189
〈표 V-1- 8〉 요보호 아동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191
〈표 V-1- 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193
〈표 V-1-10〉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	195
〈표 V-2- 1〉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개요	197
〈표 V-2- 2〉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198
〈표 V-2- 3〉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접수 및 미발견 수('17. 12월, 경찰청) ...	199
〈표 V-2- 4〉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201
〈표 V-2- 5〉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	202
〈표 V-2- 6〉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 (결산 기준)	203

〈표 V-2- 7〉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지원 인력 현황	204
〈표 V-2- 8〉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이용자수 현황(실인원)	205
〈표 V-2- 9〉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시설 공급 현황	205
〈표 V-2-10〉 실종아동보호및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206
〈표 V-2-11〉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현황	206
〈표 V-2-12〉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확대 계획	207
〈표 V-2-13〉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	208
〈표 V-2-14〉 장애유형별 입양 양육보조금 현황	209
〈표 V-2-1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015-2017)	210
〈표 V-2-16〉 지역가정위탁센터 운영현황(2015-2017)	211
〈표 V-2-17〉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추진 방법	213
〈표 V-2-18〉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모니터링 현황	215
〈표 V-2-19〉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수 (서비스 이용자 현황)	216
〈표 V-2-20〉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218
〈표 V-2-21〉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성과 관리 절차	219
〈표 V-3-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설계 특성	223
〈표 V-3-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지원 대상 연령 기준 구분	224
〈표 V-3-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구분	224
〈표 V-3- 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자 규모 및 근거	225
〈표 V-3-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예·결산 현황	229
〈표 V-3- 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예산 증감 현황	230
〈표 V-3- 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 (결산 기준)	232
〈표 V-3- 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인력 공급 현황	234
〈표 V-3- 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시설 공급 현황	234
〈표 V-3-1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235
〈표 V-3-11〉 드림스타트 담당인력 및 지원 아동수 현황	235
〈표 V-3-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유형	237
〈표 V-3-1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	238
〈표 V-3-1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주요사업별 지원 아동수 및 예산 (2017년)	240

〈표 V-3-1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추진계획 여부	241
〈표 V-3-1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전달체계	242
〈표 V-3-1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모니터링 체계	243
〈표 V-3-1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신청자 및 수혜자 수	245
〈표 V-3-1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성과지표	248
〈표 V-3-2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성과관리 절차 유무	249
〈표 V-4- 1〉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개요	253
〈표 V-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 ...	255
〈표 V-4- 3〉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258
〈표 V-4- 4〉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261
〈표 V-4- 5〉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	262
〈표 V-4- 6〉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재원 매칭 방식 및 비율 (결산 기준)	263
〈표 V-4- 7〉 주요국 청소년예산 비교(2013)	264
〈표 V-4- 8〉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지원 인력 현황	265
〈표 V-4- 9〉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이용자수 현황	266
〈표 V-4-10〉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시설 공급 현황	266
〈표 V-4-11〉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확대 계획	267
〈표 V-4-12〉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추진 방법	270
〈표 V-4-13〉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270
〈표 V-4-14〉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모니터링 현황	271
〈표 V-4-15〉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지원 대상 충족률	273
〈표 V-4-16〉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277
〈표 V-5- 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280
〈표 V-5- 2〉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 단계	284
〈표 V-5- 3〉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단계	286
〈표 V-5- 4〉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성과 단계	287

그림 목차

[그림 I-2-1]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사업 기본 평가 수행 절차	55
[그림 II-2-1] 0-5세 아동 수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증가율	74
[그림 II-3-1]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 2013	82
[그림 V-3-1] 연도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226
[그림 V-3-2] 연도별 연령대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227
[그림 V-4-1] 고교 졸업자 중 무직자(미상 포함)와 대학 학업중단자 현황 ...	256
[그림 V-4-2] 전체 지원 대상 기준 수혜자 충족률	274
[그림 VI-2-1] 통합사례관리 절차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312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1〉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	329
〈부록 표 1- 2〉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330
〈부록 표 1-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331
〈부록 표 1-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332
〈부록 표 1- 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333
〈부록 표 1- 6〉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334
〈부록 표 1- 7〉 가정양육수당	335
〈부록 표 1- 8〉 시간제 보육	335
〈부록 표 1- 9〉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336
〈부록 표 1-10〉 아이돌봄서비스	336
〈부록 표 1-1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37
〈부록 표 1-1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338
〈부록 표 1-13〉 지역별 영유아 수 및 영유아 비중	339
〈부록 표 1-14〉 지역별 및 연도별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340
〈부록 표 1-15〉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 현황	341
〈부록 표 1-16〉 시간 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현황	342
〈부록 표 1-17〉 지원 대상별 보육료 지원자 수	343
〈부록 표 1-18〉 가정 양육 수당 수급자 현황	344
〈부록 표 1-19〉 가정 양육 수당 수혜율	344
〈부록 표 1-20〉 시간제 보육 이용자 현황	345
〈부록 표 1-21〉 프로그램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345
〈부록 표 1-22〉 시도별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346
〈부록 표 1-23〉 지원 대상별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 지원 금액	347
〈부록 표 1-24〉 지원 대상별 시간 연장형 보육료	348
〈부록 표 1-25〉 지원 대상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349
〈부록 표 1-26〉 연도별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단가	350
〈부록 표 1-27〉 연도별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 단가	351

〈부록 표 2- 1〉 초등돌봄교실(방과후돌봄서비스)	352
〈부록 표 2- 3〉 지역아동센터지원	353
〈부록 표 2- 4〉 방과후 보육료 지원	354
〈부록 표 2-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55
〈부록 표 2- 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356
〈부록 표 2- 7〉 연도별 및 연령별 아동 수	357
〈부록 표 2- 8〉 지역별 아동 수 및 비중	357
〈부록 표 2- 9〉 지역별 초등돌봄사업 자원 투입 배분 (2017년 자료 보완 필요)	358
〈부록 표 2-10〉 지역별 방과후 보육료 자원 투입 배분	359
〈부록 표 2-11〉 지역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자원 투입 배분	360
〈부록 표 2-12〉 지역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원 투입 배분	361
〈부록 표 2-13〉 시도별 초등돌봄사업 이용자 현황	362
〈부록 표 2-14〉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수	363
〈부록 표 2-15〉 시도별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연인원)	364
〈부록 표 2-16〉 시도별 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아동수(실인원)	365
〈부록 표 2-17〉 시도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366
〈부록 표 2-18〉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자원 투입 배분	367
〈부록 표 3-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68
〈부록 표 3- 2〉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368
〈부록 표 3-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9
〈부록 표 3- 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370
〈부록 표 3- 5〉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71
〈부록 표 3-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371
〈부록 표 3- 7〉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372
〈부록 표 3- 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373
〈부록 표 3- 9〉 청소년 특별지원	374
〈부록 표 3-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376
〈부록 표 3-11〉 장애아동수당	377
〈부록 표 3-1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378
〈부록 표 3-13〉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379

〈부록 표 3-14〉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80
〈부록 표 3-1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80
〈부록 표 3-16〉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운영	381
〈부록 표 3-1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382
〈부록 표 3-1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382
〈부록 표 3-1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83
〈부록 표 3-20〉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383
〈부록 표 3-21〉 WEE 클래스 상담지원	384
〈부록 표 3-22〉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 지원)	384
〈부록 표 3-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85
〈부록 표 3-2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385
〈부록 표 3-25〉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386
〈부록 표 3-26〉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386
〈부록 표 3-27〉 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387
〈부록 표 3-28〉 2016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388
〈부록 표 3-29〉 2017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389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러 사회보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한국은 여전히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전반적인 아동·가족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사각지대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임.
 - 사회보장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함께 기존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원 정책 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군’에 대한 기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는 지원 대상(생애주기 혹은 취약계층 여부)과 내용에 따라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정책 수혜집단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와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반한 사회보장사업 중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관련 사업군의 범위와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을 고찰함.

-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실시, 평가단 운영, 정책연구 실무협의 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

다.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이하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로, 해당 분야는 영유아보육, 아동 돌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지원 등 총 3개 사업군을 의미함.
 - 3개 사업군에 속하는 개별 사업들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업 중, 해당 분야에 속하는 사업과 강신욱(2015)외에서 해당 분야로 분류한 사업을 모두 합쳐서 작성함.
- 검토 대상 사업 중, 사업의 기능이나 목적이 해당 부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사업군에 대한 일관된 기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12개, 아동 돌봄 사업군은 6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2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라. 평가 지표 개관

- 기존에 수행된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강신욱(2015)의 평가 지표를 기본 틀로 활용하되,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통해 일부 수정함.
 - 공통 지표는 강신욱 외(2015)에 제시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2. 연구배경

가. 선행연구 개관

- 영유아·아동 지원 사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동복지정책의 국제비교, 부처 간 돌봄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초등학생 대상 사업과 제도의 평가 분석 등임.
- 청소년 사업 성과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 지표 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모색한 연구, 청소년 보호정책의 전반적 현황과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들로 이루어져있음.

- 취약 아동 대상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체계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 구축 방안을 도출한 연구, 장애 영유아 지원에 관한 연구,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등의 연구들이 성과를 이루었음.

나.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환경 변화

- 2001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에서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조명됨.
 - 2012년 이후 전면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시작 이후 2013년 무상 보육·유아교육 실시, 가정양육수당 시행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 지원 체계가 완성됨.
-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영·유아 돌봄은 수요초과에서 공급초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신규 추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간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아동희소지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돌봄서비스 접근성 약화 우려 있음. 이에 따라 지역특화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함. 더불어 한국사회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함.
-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의 확대가 어려우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아동 인권 침해 증가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아동 학대 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함. 청소년의 각종 문제 해결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필요함.

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재정 분석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사업은 예산이 부처별, 재원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총지출 예산을 회계별로 파악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세출예산 구조에 따라 부처별 관련 부문 및

프로그램의 예산 현황을 파악함.

- 보건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취약계층지원 부문,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예산은 2013년 4.6조원에서 2017년 5.9조원으로 1.3조원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비율이 11%에서 10%로 감소하였음. 이는 다른 사업의 예산 증가에 비해 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예산 증가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교육부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이 이에 해당됨.
- 여성가족부 사업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의 예산은 2013년 2,234억 원에서 2017년 2,801억원으로 576억원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중 비율은 45%에서 41%로 감소함.

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가.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총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프라 혹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 내 사업들은 지원 방식과 목적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큰 틀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평가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는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 단계별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함.
- 설계 단계의 지표에서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해 개별

사업별 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함.

- 집행 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을 평가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현황 등을 분석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지원 수준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보육통계, 교육통계 등의 현황과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분석을 병행함.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대비 급여 지원액, 영유아 가구 보육비 지출 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함.
- 유아 보육 사업군에서 효과성은 주로 산출 단계 지표로 측정되며, 성과 단계 지표는 보조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나.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 설계 단계 평가
 - 영유아보육 사업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상자 포괄성이 매우 높음.
 - 여기에 장애, 다문화 등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 지원,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편적 지원 체계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집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함.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상자 포괄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기관 이용 여부 및 기관 종류 등에 따라서는 5개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가정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은 기관을 이용하면 이용이 불가능한 가정 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이 있는가 하면 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섞여 있음.
 - 취약계층 유무에 따라서는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가정 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은 가구 소득 등과 무관하게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대부분은 연령별 영유아 수를 모수로 보고 있으며, 각 연도별 취학 전(만 0~6세)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 추세로 2015년 318만 7,718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04만 4,577명으로 감소함.
- 특히 2017년도 출생아는 345,786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 영유아 대상 정책의 대상자가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장애, 다문화, 한부모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수가 부재한 상황으로, 발견율과 실제 발생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DB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근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사업이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중첩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이런 경우도 가정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거나 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간 중복 수혜로 보기는 어려움.
- 취약 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외의 생필품 등 양육 관련 추가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수혜로 볼 수 없음.

□ 집행 단계 평가

-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사업이므로 예산 규모가 매우 큼.
- 평가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4개 통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4.3%,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36.4%, 가정양육수당

이 15.4%로, 전체에서 96.1%가 무상보육·유아교육 관련 비용 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기 아동의 기관 이용률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해마다 증감을 보이는 하나 전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확대를 통한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2017년 예결산 현황 및 2018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예산	예산 비중
보육료 지원 사업 소계*	4,658,575	4,764,175	100.0	4,740,547	44.3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	4,535,579	-	-	4,615,386	43.1
다문화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3,940,881	3,940,881	100.0	3,892,717	36.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21,769	112,873	92.7	145,125	1.4
가정양육수당	1,835,358	1,614,979	88.0	1,645,222	15.4
시간제 보육	17,442	17,696	101.5	19,348	0.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1,945	54,819	171.6	40,319	0.4
공동육아 나눔터	1,688	1,674	100.0	4,520	0.0
아이돌봄서비스	136,622	136,622	100.0	172,140	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42,560	23,491	55.2	38,050	0.4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추경 및 전용 예산 포함 금액임.

2)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액은 가정 양육 지원 사업 부분(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행사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만 합산한 금액임. 이 외에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기타(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등) 비용이 있음.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결산액은 실행행액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영유아 전체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신청 시 모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예산 투입의 충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마찰이 발생한다는 점임.
- 재원 출처 및 매칭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일반회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운영되고 있음.
 -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함.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현금성 사업에 지방 재정이 투입되면서 보육지원 사업¹⁾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 있음. 따라서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만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은 2017~2019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 특별회계(국비)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잠시 소강 상태이나, 또 다시 재원 마련을 위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이후 만3-5세 누리과정지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공급 충분성 및 지역별 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감소세, 유치원은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을 띠(*지역별 현황은 본문 참조).
 - 유아기 자녀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차별성도 있지만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에 전체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1)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보육지원 사업을 의미함. (자료출처 : 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참조).

표 2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 현황

단위 : 개소수, %

	어린이집			유치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42,517	41,084	40,238	8,930	8,987	9,029
공급률	56.2	56.0	57.7	34.2	41.9	43.2

- 주: 1) 주민등록인구는 생활연령 기준으로 만나이 0-6세(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어린이집 공급률 = (정원/만0-6세 주민등록인구수) *100
 3) 유치원 공급률 =(정원/만0-6세 주민등록인구수) *100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각 년도 12월말 기준.
 2)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각 년도 4월말 기준.
 3) 행정안전부,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각년
 도 12월 말 기준. (2018. 8. 17 인출)

- 반일 이상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 외의 서비스의 구체적 공급 현황은 본문 참조2).

- 시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는 특수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 요구인데 수요 자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필요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제공기관의 충분성도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시간 연장형 보육은 이용 희망자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인한 문제와 어린이집의 장시간 운영에 따른 폐해가 상충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
 - 시간제 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보미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전반적으로 국공립 기관이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나치게 기관 보육에 의존하게 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판단됨.
- 장시간의 기관 보육을 대체하거나 보육 사각지대(특히 시간적 측면에서)를 해소하기 위한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보육료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아이행복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2) 공급 현황 작성 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 적용 불가하기 때문임.

- 기관 이용 혹은 아이돌보미 등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카드 결제 형식의 바우처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부모들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체감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급여 사용을 위해서는 현행 바우처 형태의 지원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
- 기관 미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 수급에 대한 체감이 높음. 단, 현금 지원인 가정 양육수당 지원액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액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본 연구 평가대상 사업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단위로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비교적 적절한 지원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체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이러한 보육료의 사용 등에 관해 재무 회계 감사 등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질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센터별 사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지원금이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산출 단계 평가

- 만0-2세 보육료 지원은 85만 가구 내외를 보임. 가정 양육 수당 수급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임. 시간제 보육 이용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등의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특정된 사업으로, 수급자 수가 적은 사업에 속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해당자가 적기 때문으로,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이용자 수의 90%이상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기관 보육으로 충족되지 않은 보육시간을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재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되어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지원자 수 현황

단위: 명, 가구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보육료 지원 사업	857,508	837,755	853,625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1,301,891	1,297,341	1,281,45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44,765	52,302	58,454
가정양육수당	1,009,346	933,153	836,290
시간제 보육	7,297	13,377	18,115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351,522	5,357,314	5,905,652
공동육아 나눔터	192,917	318,001	401,334
아이돌봄서비스	57,687	61,221	63,54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6,786	31,298	56,646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3)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단위가 가구이며, 다른 사업은 명으로 산출.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비용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의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금액 사이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금도 많음.
- 현행 비용 지원 체계상 보육료 이외의 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 상한 이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는 모두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 보육료 지원금은 다른 비용 지원 체계 등과 맞물려 무상 보육을 실시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어린이집이 보육료 상한제 및 필요경비 상한 등으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비 총액 내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심각한 어려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의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음.
- 현행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수준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가장 포괄적임.
- 가정 양육 수당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기관 이용이 절실하지 않은 영아들의 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가정 양육 수당 지원금의 증액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전문가 조사는 전반적으로 비용 지원보다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의 확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성과 단계 평가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다수 사업이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성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려움.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개별 사업들은 주로 성과 지표로 이용자 만족도를 지표로 삼고 있으며, 지원 아동의 수 혹은 서비스 제공 기관 수 등을 정책 성과 지표로 삼고 있음.

□ 영향 단계 평가

- 영향 단계의 지표들은 비단 평가 대상 사업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간접적으로만 측정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됨. 또한, 영향 평가는 주로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의 확장(전면 무상 보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2009년 대비 2012년도에는 영아기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시설 이용 및 가계 부담을 일부 완화한 효과가 있었으나, 유아기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김은정·이혜숙, 2016).
- 영유아 아동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5명(통계청, 인구동향조사³⁾)으로 2008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나 1.30명이하의 초저출산은 지속되고 있음.
- 다수의 선행 연구(최성은, 2011; 우석진, 2014; 김은정·이혜숙, 2016 등)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음.
- 단, 영유아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은데다, 일부 연구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향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의 틀 자체를 크게 변경시키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사료됨.

다. 종합 및 시사점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대상자 포괄성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성 보편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업 간 중복성이 크지 않음.
 - 오히려 장시간의 돌봄을 요하는 영유아기 자녀 돌봄에 있어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 간에는 중복 수혜를 허용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장시간 기관 보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 단계 지표 중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총계 차원의 예산은 해당 분야의 예산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기관 보육서비스의 공급도 적정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기관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적정 수준이나,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 취약 보

3) 통계청, KOSIS, 합계 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_A21&checkFlag=N

육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지역적으로 가정 양육 서비스의 지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지역별로 재정 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 사업 특히 현금성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의 부담이 언급되고는 함.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 조정,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보육료, 누리과정 등의 지원을 카드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은 대규모 지원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타당한 방식으로 사료됨.

- 가정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나 신청과 지원은 모두 전산상으로 관리되어 중복 수혜 등을 방지하고 있음.

□ 모든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중 하나를 수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수혜율이 높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보육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수혜율도 기관 보육에 치중된 양상을 띠.

- 기관 보육에 치중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액이 기관 보육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맞벌이 가구 혹은 취약 계층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우선권 확보와 가정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때, 전반적인 지원의 확대는 서비스의 추가 지원 등이 적절하고 비용 지원을 늘리는 형태의 제도 개선은 정책적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되,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 현행 보육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 기관 이용자에게 집중된 비용 지원을 가정 양육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강화가 요구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 특히 저비용으로 장시간 보육을 담당해야하는 어린이집의 비용지원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며, 국가지원시간 등의 설정을 통한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등과 관련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논의, 2018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등은 해당 부처에 이미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이므로, 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성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아동 돌봄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가. 아동돌봄사업군 분류

- 아동돌봄사업군은 초등학교령기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사업과 현금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으로 분류함.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평가는 1개 사업으로 진행됨.
 -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의 주 이용자가 영유아로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군으로 재분류됨.
- 이렇듯 아동 돌봄 사업 평가 대상에 속하는 5개 사업은 지원 방식과 지원 목적 등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아동 돌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함
 - 특히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되고 사업 내용도 유사하여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평가함.

나. 아동돌봄사업군 평가지표

- 아동돌봄사업군 평가지표는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 설계 단계에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사

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관계를 지표로 선정함.

- 집행 단계에서는 투입의 충분성,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지원방식,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인력의 적정성을 지표로 선정함.
- 산출 단계에서는 수급자 비율,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을 지표로 선정함.
- 성과 단계에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관령 대한 절차 여부를 지표로 선정함.
- 영향 단계에서는 사업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다. 아동돌봄사업군 평가 결과

□ 아동돌봄사업군의 설계 부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기준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맞벌이 유무 등 선별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 다수의 사업이 신청자 수 혹은 대기자수를 파악하지 않아, 표적화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향후 표적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대상자 확인과 함께 서비스 신청자 수, 실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대부분의 사업이 지원 대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함.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모수를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맞벌이, 차상위계층, 가족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정함이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
- 지원 대상이 다소 중복적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사업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동시간대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 수혜의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중복될 경우 사업들 간의 차별성이 낮아져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지역사회돌봄도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수요자(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의 집행 부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비슷한 수준임.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은 꾸준히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

■ 표 4 ■ 아동 돌봄 사업군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예산 (A)	결산 (B)	B/A*100	예산	예산 비율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서비스)	315,980	315,980	100.0	322,934	31.4
지역아동센터지원	305,423	305,238	99.9	328,323	31.9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319,353	319,146	99.9	337,968	32.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7,894	37,722	99.8	40,024	3.9
방과후 보육료	2,265,246			-	-

주: 1) 방과후 보육료는 지원규모액 기준.

2) 예산 비율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예산과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 사업 재원은 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과후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 사업 대상자는 선별지원으로 직접 혹은 학교 내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이용시설, 예산 인력 등도 꾸준히 증가하여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음.
 - 아동돌봄 사업군 대상자 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방과후 학교 자

유수강권은 100%이며, 전체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중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선정됨.

-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26.7%가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초등돌봄의 공급량에 맞추어진 수요량으로 잠재적 수요는 더 존재할 수도 있음.
-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2.5%)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0.4%), 방과후 보육료지원 사업(0.2%)은 이용자 비율이 낮은 편임. 단, 해당 수치는 전체 대상자 산정에서 소득수준별로 선별된 자료가 아닌 사업 대상자 연령 인원을 기준으로 모수를 추정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해석이 필요함. 즉, 세 개 사업의 이용률은 대상자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확한 모수를 추정한 상태에서 공급량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Ⅱ 표 5 | 아동 돌봄 사업군 대상자 규모 및 서비스 이용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상자(A)				서비스 이용자				비율(B/A)
	'15	'16	'17	계(A)	'15	'16	'17	계(B)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	931,773	887,325	891,642	2,710,740	239,798	238,480	245,303	723,581	26.7
지역아동센터	4,513,664	4,322,672	4,236,650	13,072,986	109,661	106,668	108,578	324,907	2.5
방과후보육료	1,670,000	1,769,000	1,759,000	5,198,000	3,492	3,075	2,631	9,198	0.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735,000	724,000	689,000	2,148,000	734,552	724,062	688,923	2,147,537	1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472,189	2,770,634	2,711,622	7,954,445	9,490	9,745	9,773	29,008	0.4

- 주: 1) 각 사업별 전체 대상자는 서비스 신청자가 아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에 모수로 선정한 대상자 규모임. 단, 초등돌봄교실은 서비스 이용자 수치가 오후돌봄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체 대상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한정함.
- 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이용자는 오후돌봄(초등학교 1-2학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임. 따라서 전체 대상자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산정함.
- 3) 지역아동센터지원은 2018년 6월 기준
- 4)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수이며,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수는 아님.
- 5)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실인원임. 전체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중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기준임.
- 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18년 4월 기준임. 각 서비스 이용자수는 실인원임.
-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5-'17년) 유초등현황 중 학년별 인원수 참조(<http://kess.kedi.re.kr>)(인출일: 2018년 7월 30일).

- 아동돌봄사업군의 지원 방식은 서비스 형태의 사업과 현금성 형태로 나누어짐. 각 사업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추진방식과 전달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서비스 형태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부처와 중간 단계 관리 기관, 지역 기관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현금성 형태 사업인 방과후 보육료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예산이 관리되며, 각 지자체는 지역내 대상 기관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바우처 형태의 사업인 방과후 보육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서비스 전달체계와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내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지역 내 대상 기관에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추진됨.
- 아동돌봄 사업군은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음.
 - 모니터링의 형태는 현장점검, 지도점검 등으로, 지자체 단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의 산출 부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돌봄사업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대부분의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기준에 맞추어 지역내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산출 결과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초등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의 부족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업은 필요한 재원인 시설이나 예산 등도 증가하여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도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증가된 예산의 충당은 지방비를 통해 확보될 예정임.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증액되어 충당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도 이용자수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Ⅱ 표 6 Ⅱ 아동 돌봄 사업군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합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239,798	238,480	245,303	261,287	984,868
지역아동센터지원	109,661	106,668	108,578	110,283	435,190
방과후 보육료 지원	3,492	3,075	2,631	2,603	11,80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734,552	724,062	688,923	626,211	277,374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9,490	9,745	9,773	10,463	39,471

주: 1) 초등돌봄교실은 매년 4월 30일 기준임.
 2) 지역아동센터지원은 2018년 6월 기준
 3)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수이며,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수는 아님.
 4)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실인원임.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18년 10월 기준임. 각 서비스 이용자수는 실인원임.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아동돌봄사업군의 성과 관련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성과를 만족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 성과관리 절차가 존재하나 방과후자유수강권과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절차가 부재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특히 청소년 효과성 변화로 성과 관리를 시행 중임.
- 한편,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돌봄종사자의 자격기준 수립과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5.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분류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평가틀의 어려움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학대, 입양, 실종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출청소년,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등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3개부문으로 분류하였음.
- 지원형태로는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사업의 상당수는 서비스지원 형태이며, 비용지원의 경우에 일부 서비스지원 형태를 동시에 지님.

나.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지표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3개 부문별로 '설계-투입-집행-산출-성과'의 큰 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함.
-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내 사업 간의 상충/보완 관계 등을 검토함.
- (투입)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을 검토함.
- (산출) 수급자 비율, 지원 수준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등을 검토함.

다. 요보호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 평가결과

- 요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부문의 설계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부 측면에서 정책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 및 낮은 격리보호율로 인해 실제로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각각의 법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요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부문의 집행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5억 2,500만원(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에서 356억 2,400만원(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으로 나타남.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사이에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들 중에는 기금 예산을 매칭하여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예산 책정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는 사료되나 이로 인해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표 7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예산 비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446	1,446	100	1,446	1.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33,598	33,598	100	35,624	45.7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10,420	10,180	97.7	12,560	16.1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24,561	23,139	94.2	23,990	30.8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2,590	2,074	80.1	2,450	3.1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461	394	85.5	525	0.7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444	444	100	451	0.6
실종아동보호및지원	893	893	100	854	1.1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의 이용자수는 최근 3년간 연간 6,000~8,0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수 증가 추세는 해당 사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앞에서 예산 및 지원 인력 증가 추세를 설명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는 연도에 따라서 증감이 있으나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음.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 역시 증가추세라는 것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1인당 현금지원 및 시설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은 인프라 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등은 현금성 지원으로 정책 성격에 맞추어 비교적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지역별 서비스 공급률)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장애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 지역가정위탁센터운영현황에서 17개 시도별로 이용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요보호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추진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대체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별도의 중앙지원 기관이 존재하여 사업별 지역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임.
 - 단,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가 사업별 지역센터에서 이뤄지는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아동중심이 아닌 기관중심형 또는 보호자중심형 전달체계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음.

- 아동은 시군구 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뿐 재고를 요청할 통로가 없으며, 시군구에 따라 가용한 자원의 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거주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원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음.
- 모니터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모니터링 형태 및 운영 횟수(주기)는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현장점검(수시), 결산보고서평가(매년)으로 구성되고,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3년 주기 사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은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연 4회),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 중간정산 및 결산보고서(연 1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및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사업평가(3년주기) 및 결산보고서(연 1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 비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신청건수 대 지원수인 수혜율이 23.6~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즉,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Ⅱ 표 8 Ⅱ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수(서비스 이용자 현황)

사업명	신청자 및 수혜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신청 건수(A)	19,214	25,878	34,185
	지원 수(B)	19,214	25,878	34,185
	수혜(충족)율(B/A*100)	100	100	100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	신청 건수(A)	3,110	4,095	4,231
	지원 수(B)	830	1,030	999
	수혜(충족)율(B/A*100)	26.7	25.2	23.6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지원 수(B)	12,814	13,188	13,764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원 수(B)	315	295	294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신청 건수(A)	330	370	450
	지원 수(B)	297	351	384

사업명	신청자 및 수혜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수혜(총족)율 (B/A*100)	90.0	94.9	85.3
	대기자 수	33	19	66
	신청 건수(A)	14,385	13,728	12,896
	지원 수(B)	14,385	13,728	12,896
	수혜(총족)율 (B/A*100)	100	100	10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 사업별로 78%~111.7%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은 성과지표를 입소아동의 심리 치료 효과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쉼터 입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는 주로 간담회 및 만족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성과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 평가결과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은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사업 9개를 평가함.

- 9개 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임.

□ 설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주관부처와 관련 법이 상이함에 따라 취약계층 사업의 대상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취약계층 사업은 연령과 소득의 기본 기준 하에, 장애,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 등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함께 고려되어 설계되는 구조임.

-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의 생애주기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드림스타트 이후 18세 이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해 행복e음, 통계청자료, 조사자료 등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업지원 신청자가 대상자이자 이용자가 되는 구조가 일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 취약계층 사업들은 수혜대상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득+장애, 소득+한부모/미혼모·부 등 가족구조 등과 결합하여 대상자 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불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집행 관련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산투입은 한부모가정 관련 4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7년 1,300억원 규모로 가장 크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약 700억원 규모, 장애아동수당이 320억원 규모,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이 약 350억원 규모로 나타남. 이외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수행되고 있음.

Ⅱ 표 9 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	예산	예산 비중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69,334	69,333	100.0	69,355	25.0
청소년특별지원	1,409	1,409	100.0	1,409	0.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24,940	24,940	100.0	28,240	10.2
장애아동수당(A)	33,721	31,613	93.7	32,428	11.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B)	13,830	13,830	100.0	17,236	6.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C)	123,504	123,504	100.0	122,181	44.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D)	2,935	2,935	100.0	3,652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E)	3,094	3,080	99.5	2,391	0.9
미혼모·부 초기지원(F)	846	846	100.0	846	0.3

주: 청소년특별지원 결산액은 실적행액 기준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취약계층 부문의 재원구조는 국비비율이 60% 초반대이고, 예산대비 결산비율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 타 사업보다 약간 낮은 예산대비 결산비를 보임.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특히 재원의 안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기금예산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인력 시설 공급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지원단이 있거나 서비스 전담 인력이 별도로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서비스 공급확대 계획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장애가족양육지원, 미혼모·부초기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 3년간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 6개 사업의 경우 별도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이 없음.
 - 이들 사업은 인력이나 시설공급의 공급확대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서비스접근성과 수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급-수요간 편차를 고려하여 인력이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임.
-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급여와 서비스지원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기본으로 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자원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현금급여 중심 사업보다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예산 분배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별 전달체계, 모니터링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사업담당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도 여러 담당부서로 사업이 흩어져 있어, 유기적 협력·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사업수행기관)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간 대상자 및 정보에 대한 연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급자가 원하는 대상자를 각자 발

굴하여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주를 이룸.

-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의 특성상 일부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지원자가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부문 사업은 지원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고, 가구소득, 장애, 한부모가족 여부, 중복수혜여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대부분의 사업이 지원대상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수혜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별 신청자 및 수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Ⅱ 표 10 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신청자 및 수혜자 수

단위: 건, 명,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125,562	134,853	144,289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6,456	7,497	8,437	
	(건)	1,415	1,580	1,74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 (명)	61,000	70,417	71,457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아동수
장애아동수당	지원	20,464	19,934	19,3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신청	3,613	3,649	3,802	
	지원	3,331	3,318	3,349	
	수혜율	92.2	90.9	88.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지원	171,340	98,294	101,21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지원	2,279	2,419	3,0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지원	3,469	3,023	2,579	입소자수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지원	1,164	1,137	1,198	

주: 1)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의 수혜자 지원 실적은 초기상담 대상아동수임.

2)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지원 건수임.

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의 실적은 실인원, 의무지출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들은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 설정시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치 설정은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는 각종 보고서와 결과물, 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임.

마.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 평가결과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은 학교밖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성폭력피해, 성매매, 가출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10개 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WEE프로젝트상담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학교밖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임.
- 설계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각 사업들이 관련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정책대상은 24세 이하로 포괄적인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매우 낮아 연령집단별로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9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정책 대상 중 특정 연령인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상담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집단별로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고교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등이 해당 연령에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밖에 있으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들이 존재함.
 - 이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을 중퇴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결과적으로 현재 고교 졸업자 중 미상을 포함하여 무직자는 연령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밖 청소년이지만,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밖 청소년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청 승인통계로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연령대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주체 간, 사업들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정책 대상으로 학생(교육부), 아동(보건복지부)과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구분되고 정책추진주체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유사한 연령대의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나 WEE프로젝트 상담지원도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으로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가출, 성폭력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연계와 사업추진 주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집행 관련 지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투입 예산 대비 결산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7년 사이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은 2016~2018년 동안 예산증가율이 9.4%~16.7%

로 나타났고,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도 7.0%~26.6%로 나타나 빠른 증가율을 보임.

- WEE프로젝트상담지원 및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는 예산이 증가한 다음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 수준이 안정화된 단계로도 볼 수 있음.

표 11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예산 비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2,568	12,539	99.8	12,946	17.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1,971	1,971	100.0	2,060	2.8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8,146	8,146	100.0	9,503	12.9
WEE프로젝트상담지원	1,562	1,562	100.0	1,669	2.3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5,690	5,690	100.0	5,331	7.2
학교밖청소년지원	23,483	23,483	100.0	24,640	33.4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13,565	13,565	100.0	15,570	21.1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운영지원	979	-	-	979	1.3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1,067	1,057	99.1	1,036	1.4

주: 1) '성폭력피해지원시설(30개소) 운영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특별지원 보호시설 4개소)만의 자료 없음.

2)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청소년예산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독일의 1인당 청소년 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독일의 1/4, 일본의 1/2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의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는 청소년 예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서비스 이용자수는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도 실인원 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 실적 관리가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한 경우에도 모두 이용현황으로 보고 있어 수혜율이 과대하게 잡히는 문제가 있음. 동일한 아동, 청소년에게 정확히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실적이 관리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사업 부문의 모든 사업들이 2019~2021년 동안 사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는 해당 부문 사업들에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학교밖 위기 아동·청소년 사업의 비용 구조는 이용 청소년 본인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지원 또는 시설 지원 형태임.
 - 결과적으로 일단 지원 대상이 되면 모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임. 다만, 지원 대상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들의 추진방식은 적절하며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달체계는 대체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모니터링 형태 및 운영 횟수(주기)는 현장점검(연 1회, 연 4~5회, 수시), 사업평가(3년, 매년, 분기별), 결산보고서 평가(연 1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 충족률은 이 평가군의 사업들이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발굴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충족률을 계산하기 어려움.
- 신청 대비 지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혜율이 경우에도 일부 사업에 한해서 산출됨.

표 12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지원 대상 충족률

단위: 명, %

사업명	2017년		
	신청	지원	수혜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178,128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434,574	434,574	10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38,456	-
WEE프로젝트상담지원	-	12,925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02,426	43,006	21.2
학교밖청소년지원	68,459	65,685	95.9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	31,197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	61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1,067	1,471	138.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사업별 지원 대상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전체 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 비율을 각 사업별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 비율을 알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과 매체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증진사업 정도임. 그리고 요구 충족률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업 만족도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 관련 지표로 각 사업 담당 주체들은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여 성과 달성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성과 달성률을 전년 대비 변화율로 바꾸어 평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총괄평가 및 정책 제언

가.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1)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필요

□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의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영유아기 부모에게 지원되

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당수의 영유아가 지원 수준이 높은 기관 보육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관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의 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함.
- 기관 보육으로의 과밀집과 급속한 공급 확대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

□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지원시간(표준보육시간)을 새롭게 정립하여, 장시간 기관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 시간 내에서만 기관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견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국공립 기관의 확충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임.

- 단기간 내에 국공립 기관 확충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공공청사·학교 내 유휴공간 등의 적극적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 단, 개인 위탁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위탁제 선정시 공공기관 우선 고려, 연간 국공립 확충 개소 중 개인 위탁 비율 상한 규제 등의 제도적 보완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육서비스 질 관리 모니터링의 강화와 적절한 지표 설정 필요.

- OECD 국가의 ECEC 분야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모니터링이 가장 일반적이며, 교직원 질, 아동발달 및 성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모니터링을 연계한 예로 한국의 경우 평가 인증 제도 의무화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장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단, 평가 인증 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에 해당하는 ‘통합 평가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는 방안 등에 관한 검토를 요함.

□ 사립 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 적용 및 공공성 강화

- 최근 최소한 누리과정 지원금 및 기관 지원금에 대한 회계 감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과 현행 재무 회계 규칙이 사립 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민간 어린이집 및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식 회계에 근거한 재무회계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이 필요한 상황임.

2)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의 강화

□ 기관 보육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육아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음.

- 가정 양육 지원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의 급여액이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에 비해 적은 점,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수요자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 하지만,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바, 부모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의 확장이 요구됨.
-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업은 지역별로 크게 편차가 존재하고, 기관 접근성이 낮은 등의 문제로 영유아기 부모들의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영아기 자녀의 가정 양육 지원은 작은 단위로 세분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의 가정 양육서비스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확장과 공급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보임.

□ 육아 서포터즈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작은 단위로 세분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단,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장의 관심

도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맡겨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정부가 제공하거나 놓어준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유관 중앙 부처의 지원을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시간제 가정 양육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방과 후) 시간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가정 양육서비스의 지원이 확장되어야 함.
- 전체적인 공급량의 확대와 함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유인책,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지원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볼 것이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분소 등을 다수 설치하는 형태로 확장이 필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확대가 단기간에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과 유사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의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3)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육아지원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

□ 영유아기에 집중된 현금성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

- 현금성 지원 사업의 후퇴에 대한 부모들의 반감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지원 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될 필요성이 높음.
- 다만, 향후 추가적인 재원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 아닌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더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제도 개선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의 완화를 통한 설치 확대, 의무 사업장의 설치를 제고를 위한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점진적 폐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강화 및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인프라 지원의 확대는 보육 및 교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을 넘어선 지역 사회 전반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으로, 지역 내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도서관, 체험 학습관, 아동 전용 체육시설, 어린이 전용 병원 등이 모두 지역 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에 포함됨.
- 지역 내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은 육아 가정의 가정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부모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정책이기도 함.

4) 초등 돌봄 지원의 강화

□ 영유아, 아동 돌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영유아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띠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초등학령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적었음.

- 초등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교 하교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집단(예: 맞벌이 가구) 등의 경우에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부모들의 접근성이나 아이들의 방과후 안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편의성이 높긴 하나, 학교 내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돌봄의 기능을 병행하기에는 인력 및 관리의 문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정착

-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확정하는 등 초등 돌봄 정책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

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2017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음.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1,817개소 설치(9만명 돌봄제공)를 목표하고 있음.

- 교육부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전국 총 9개 지역을 선정하였음.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임.
- 초등 돌봄 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책 변화인 ‘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율해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됨.

5) 전달체계 정비 및 정책 홍보 강화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경우에도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이 다수의 부처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오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범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개별적 성격이 다른 만큼 부처가 나뉘어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다만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사업은 여러 부처에 산재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정책을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취약 계층의 정보 사각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안내

- 기본적인 생애 주기의 변화 시기에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활용 가능한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정책으로부터의 사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도 육아관련 기관이 아닌 주민 센터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통해 정책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예로는 행정자치부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등이 좋은 예임.

나.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1)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경우 전문가의 대다수가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서비스의 사각은 해당 대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경우와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대상자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발견 자체가 힘들어서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보호 사업군의 경우 주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경우보다는 후자의 두 경우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 보호 사업군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원 대상 기준이 현실적 보호 필요대상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매우 까다롭거나 협소하게 설정된 경우임.
 - 현장 실무자 및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 자체를 완화하거나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요구됨.
 - 다만, 이러한 과정은 개별 사업별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하고 확장할 것인가는 사업별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 전달자 교육 강화
 - 지원 대상(아동, 청소년)의 특성상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 과정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지원 대상 선별 과정 등에서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임.
- 보호 필요 아동·청소년 발견을 제고 노력
 - 학대, 성폭력 피해 등 요보호 아동 및 위기 청소년의 발견 자체가 늦어져,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유관 기관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의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서도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학대 등이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 이는 발견 당시부터 요보호 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사 단계에 적절히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 대상자 포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필요

- 실제적으로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혹은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 등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손 가정까지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손 가정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함께 보호대상으로 포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되며,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드림스타트 이후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단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또한, 학교밖 및 위기 청소년 부문에서도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이 지원 대상 연령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사각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속하는 대상인만큼 이에 걸맞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2) 종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 DB 구축

- 현행 보호 사업군의 다수 사업은 자료의 취합 관리가 아동·청소년 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건수로 관리되는 한계가 있음.
 -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 건 수로 관리하면서 어떤 지원 대상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될 뿐 아니라, 지원 실적이 과다하게 잡히는 문제를 유발함.

-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의 경우 분절적 사업 지원이 아닌 지원 대상(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 발견 당시부터 완전한 사회화까지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 현재는 사업간 연계도 미흡한데다 대상자 관리도 각 부처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며, 실적 관리도 개인 단위가 아닌 건당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통합 DB 구축 사업

- 우선적으로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부터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떤 경로이든 지원 대상으로 들어온 아동에 대해 개인 이력 관리를 통해 하나의 지원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 DB 구축 및 관리를 필요로 함.

3) 지역별 공공 컨트롤 타워(사례 관리 기관)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의 경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가 산재하는 반면, 실제 실행 단계인 지역에서는 하나의 부서로 모여서 수행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오히려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사업간 중복 혹은 분절성으로 인해 조직적 관리가 어렵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한편, 정부 부처 간 전달 체계 개선 뿐 아니라, 지원 대상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전달 체계(추진 방식) 개선도 요구됨.

-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의 운영과 사례 관리까지 모두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개별화되고 분절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각각의 사업별로 위탁을 받은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해당 지원만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임.

□ 개별적 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조정보다는 이들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간 유기적으로 연계와 조율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히 조사와 진단,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학교밖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 학대 등 요보호 아동의 경우나 취약 아동의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하지만, 요보호 아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과 예방적 조치 등은 학교 밖(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보다는 교육부(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임.

□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별 컨트롤 타워 구축

- 어떤 경로로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든 간에 아동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에게 해당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안내하며, 하나의 지원 사업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하 컨트롤타워)이 필요.
- 이러한 컨트롤타워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최소한 지역구(가능하면 동단위)로 구축하되, 컨트롤타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 혹은 사업별로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

Ⅱ 그림 1 통합사례관리 절차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양성 필요

-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원활한 사업 연계,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등에는 지역 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선결 과제임.

4)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정책 지원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를 상대로 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발견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별 사업별로 신고 등의 경로가 상이하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로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음.

다. 재정 구조와 관련된 개선점

□ 현행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거나 재정 조달 과정에서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영유아의 경우 현금성 지원 사업에 예산이 몰리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 지원 및 기타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로 서비스 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함.

□ 한편, 영유아 보육 등에 집중된 현금성 사업의 예산에 비해 보호 사업군은 대상자가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많지 않으며, 총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임.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총량적 측면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예산의 확대 및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됨.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 기금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과 상관성이 낮은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및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기준보조율 차등적 적용 방안 검토

- 개별 사업별로 기준보조율(국비부담율) 적용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속한 세부 사업별 기준보조율이 파악되지 못함.
- 영유아 및 아동 돌봄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개별 사업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수준을 파악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⁴⁾를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구조 개선

-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 중 대상 및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동일한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성 사업이 아닌 현금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예산 비중 확대 필요

-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가장 취약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보장인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OECD국가 및 다른 사회보장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라.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강사와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각 부처별 아동돌봄서비스의 기초적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각 부처의 돌봄 사업이 일정 질적 수준 이상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표준

4)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지방재정영향평가)' 중앙정부가 지방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화가 이루어져야 필요성이 있음.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경우에도 종사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아동, 청소년 돌봄 서비스 인력 표준화
 - 아동 돌봄 사업별로 인력 배치의 호환이 가능하여 관련 자격 및 경력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일정 부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 및 후생 복지 증진 필요
 - 종사자의 경력 증가를 고려한 인건비 산출,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확보, 유사 직종의 표준화된 임금지원 체계, 초과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이 필요함.
- 영유아, 아동 돌봄 종사자 공통 교육·연수
 - 방과후 돌봄 종사자의 교육·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연수는 운영 책임자와 실무지도자 과정을 구분하고, 다시 기본공통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지역 사회 내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이며, 담당자 교육 등을 담당할 양성 교육 기관 및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 범위
4. 평가 지표 개관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공,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2013년부터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14: 8).
 -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관계부처합동, 2017: 1).
 - 또한, 제도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회보장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원 정책은 총 177개 과제, 총 예산 64조 4,698억원이 소요되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도임.
 - 사회보장지원 정책과 관련된 유관 부처도 복지부(86), 고용부(25), 교육부(23), 여가부(16), 농식품부(12), 국토부(8), 행안부(2), 기재부(2), 금융위원회(2), 산업부(1) 개 등 총 20개 부처에 걸쳐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관계부처합동, 2017: 1).
-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사업의 목적 등이 상이한 다수의 정책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다수의 사업을 개별 사업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인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들을 사업군으로 묶어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종합

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 평가는 2016년도 고용복지·건강의료(노인건강) 사업군, 2017년 생활·생계지원 사업군에 대한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고, 2018년도에는 돌봄 분야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사회보장제도 중 돌봄 분야 사업은 크게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와 성인 돌봄 분야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전자에 해당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에 대한 평가 연구에 해당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14세 1.2%와 15~19세 6.5%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연간(2015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16,651건에 이르는 등(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6: 92, 98) 여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기준 3,283건에 이르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도 8.5%에 달함(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6: 102, 103).

- 단, 아동학대 발견 확률은 매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일부 정책적 성과도 발견되었음.

- 한편,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육아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생애출발선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음.

-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증가 등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거세게 일고 있음.

□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은 1.4%인데 비해, 한국은 0.2%에 불과함.

- 한국의 경우 아동·가족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은 보육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한국의 경우 여전히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 지출 중 부모 지원(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을 제외한다면, 아동·가족 복

지를 위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그러므로, 전반적인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및 특히 사각지대 영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임.
 - 사회보장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함께 기존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사회보장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원 정책 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군’에 대한 기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는 지원 대상(생애주기 혹은 취약계층 여부 등)과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아동, 청소년 보호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지원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점 등을 도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정책 수혜집단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와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반한 사회보장사업 중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관련 사업군의 범위와 사업을 확정함.
 - 현재 사회보장사업 중 생애주기와 정책의 기능에 따라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3개 사업군(강신욱 외, 2015 : 59~65)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함.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사업군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을 고찰함.

- 사업별로 정리된 현황 자료를 정책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준으로 재 정리하여, 평가 사업군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함.
- 선행 연구 및 부처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함.

□ 통계 자료 및 선행 연구 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군별 기본 평가를 실시함.

- 보육통계, 교육통계 등 행정통계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큰 틀에서의 정책 수요 및 사업군별 평가를 실시.
- 평가 지표는 사회보장사업 중 다른 분야 사업군과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진간 협력을 통해 수행.
- 동시에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 하여, 성과 지표의 일부는 차별적으로 구성.

□ 연구 결과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함.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에 속한 보육 및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선행연구를 개관.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

□ 통계자료 분석

- 총괄적인 사업 현황 자료 및 행정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보육실태 조사,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조사 실시

- 사업군 평가의 특성 상 개별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만으로 제도 개선 방안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주로 사업군별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 30명 내외의 전문가에 대해 총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

표 I-2-1 전문가 조사 목표 표본

사업군	부문명	1차 조사	2차 조사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영유아 보육	8	8
아동 돌봄 사업군	아동 돌봄	7	4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요보호 아동·청소년	14	1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학교밖 위기 아동·청소년		

표 I-2-2 전문가 응답자 특성

사업군	부문명	전문가 특성(1,2차)	1차	2차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과 교수 1명	8명	8명
		보육과 교수 1명		
		아동복지학 교수 1명		
		가족정책 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아동심리학과 교수 1명		
		가정교육과 교수 1명		
아동 돌봄 사업군	아동 돌봄	사회복지학과 교수 7명	7명	4명
		아동돌봄 및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1명		
		가족정책 분야 연구위원 1명		
		취약계층 청소년 분야 전문가 1명		
		초등교육 분야 전문가 1명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요보호 아동·청소년	아동빈곤, 아동복지 전문가 1명	4명	5명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2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3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복지분야 전문가 1명	5명	5명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2명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명		
	학교밖 위기 아동·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1명	5명	5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 1명		
		청소년지원센터 전문가 1명		
		청소년학과 교수 1명		
		청소년발달지원 분야 현장전문가 1명		

주: 전문가 중 일부는 1,2차 중 한 개 차수 조사에만 참여함.

□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수행 전반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함.
- 지자체 실태조사 및 현황 자료 수집, 유관부처 통계자료 협조 요청,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함.
- 사업 추진 실적 취합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반영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 및 사업 추진 기관 등과의 정책연구 실무 협의회를 개최.

□ 평가단 운영

- 설계-집행-성과-영향 등 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친 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표 I-2-3 ■ 평가단 회의 및 정책연구 실무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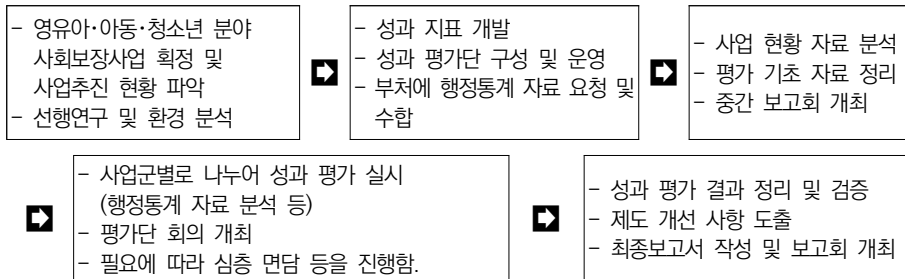
일 시	주요 회의 안건	외부 전문가
2018. 5. 31. 목	돌봄 분야 사업군 확정 및 평가지표 검토	4명(서면 1명)
2018. 6. 8. 금	1차 부처설명회 (서울지역)	해당분야 사업 담당자 20명
2018. 6. 12. 화	1차 부처설명회 (세종지역)	해당분야 사업 담당자 20명
2018. 7. 19. 목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사업군 주요 쟁점과 평가 방향	전문가 7명
2018. 7. 20. 금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주요 쟁점과 평가 방향	전문가 4명
2018. 10. 22. 월	사업군별 총괄 평가(보육사업군)	전문가 4명
2018. 10. 30. 화	사업군별 총괄 평가(보호사업군)	전문가 3명
2018. 11.5-8	사업군별 총괄 평가(돌봄사업군, 서면평가)	전문가 6명
2018. 11.12	정책실무협의회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 4명
2018. 11. 22. 목	영유아 보육사업군 정책 제언 검토	전문가 7명
2018. 11. 28. 수	2차 부처설명회 (서울지역)	해당분야 사업 담당자 20명
2018. 11. 29 목	2차 부처설명회 (세종지역)	해당분야 사업 담당자 20명

주 : 주요 회의 개최 건만 제시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는 제외.

다. 연구수행 절차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그림 I-2-1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사업 기본 평가 수행 절차



3 연구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사회보장기본법(이하 동법) 제 3조).
-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는 사업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강신욱 외(2015)는 평가의 종합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몇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한 후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마다 각기 다른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 고용복지·건강의료(노인건강) 사업군, 2017년 생활·생계지원 사업군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 바 있음.

표 I-3-1 사회보장 기본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군 구분(강신욱 외, 2015)

분야	사업군 및 사업 구분	사업 갯수	주요 사업명 예시
교육	초중고생 교육지원	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청소년국제교류 등
	대학생 학비지원	9	든든학자금 대출,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등
	성인평생학습지원	11	고령층정보화교육,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등
돌봄	영유아 보육 지원	14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아동돌봄	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 및 청소년 보호	30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등
	성인돌봄	8	기타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성인(안전)보호	14	사회심리재활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등
의료 지원	아동건강의료지원	14	취학전아동실명예방, 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 등
	노인건강의료지원	5	노인의지보철(보건소의치(틀니)사업),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등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27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25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등
고용	고용장려금	12	고령자다수 고용지원,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장애인사업장 등
	직접일자리제공	14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등
	고용서비스	15	일일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등
	직업훈련	10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
	창업지원	12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여성기업 판로지원 등
주거	주거비지원	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 등
	주택개량지원	16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 효율기기교체지원),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등
	공공임대주택공급	10	준주택지원(융자), 저소득전세가구 전세자금 등
생활 지원	자립생활지원	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등
	가족 및 지역복지서비스 지원	11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문화여가생활지원	14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문화통합이용권 등
	재해 및 기타피해 보호	5	진폐근로자 보호,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생계	기초생활보장	9	(긴급복지)장제비지원,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등
	노인·장애인 생활보장	7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
	기타 생계지원	15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주 :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연구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이하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로, 해당 분야는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지원 등 총 3개 사업군을 의미함.
- 위의 표 I-3-1의 돌봄 분야 사업군 중 영유아 보육지원, 아동돌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 3개 사업군이 주요 논의 대상 사업임.
 - 3개 사업군에 속하는 개별 사업은 우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업 중 영유아, 아동 지원 범주에 속하는 사업 중 돌봄 혹은 보호에 속한 사업과 강신욱 외(2015)에 해당 분야 지원에 속한 사업을 모두 합쳐서 작성.
 - 홈페이지에 등재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보호 부문 사업 42개 사업과 강신욱 외(2015) 54개 사업 중 중복 사업을 제외하고 총 72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함.
 -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돌봄 분야 사업이 아닌 고용 분야 등 다른 사업군으로 분류된 경우도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함.
 - 단,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해당 분야 돌봄 혹은 보호 사업으로 분류되었더라도 강신욱 외(2015)에서 다른 사업군으로 분류된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를 들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홈페이지상에서는 해당 분야 보호(돌봄/안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성인보호 사업군으로 분류함에 따라, 본 연구의 사업군에서 제외함.
 - 총 15개 사업이 교육, 성인 돌봄, 성인 보호 등으로 분류되어 제외됨.
 -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현재 해당 사업명으로 사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지자체 사업 등)로, 4개 사업(학교안전강화학교지원 등)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 중 교육기능만 있는 2개 사업(지역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과 신체건강 기능만 있는 1개 사업(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돌봄 분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
 - 반대로, 홈페이지 상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혹은 보호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으로 분류되었으나, 강신욱 외(2015)에서 해당 분야로 분류한

경우는 포함.

- 홈페이지 상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건강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이 총 20개 사업임.
 -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강신욱 외(2015)가 해당 분야로 분류한 7개 사업도 본 연구의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
 - 이때,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사업 수가 많고 기능이 다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요보호, 취약계층,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총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함.
 - 강신욱 외(2015) 이후 해당 분야에 추가된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시간제 보육’ 사업, 아동 돌봄 사업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지원 사업 등임.
- 한편, 검토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기능이나 목적이 해당 부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사업군에 대한 일관된 기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서는 5개 사업을 제외하고 총 10개 사업과 아동돌봄 사업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영유아 보육사업에 더 가깝다고 사료되는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실시.
 - 아동 돌봄 사업군은 검토 대상 사업 전체 10개 사업 중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재분류된 2개 사업과 청소년 보호 사업군으로 재분류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 사업으로 함.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3개 부문 총 26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사업 목록, 평가 대상 사업 여부 등은 각 사업군별 해당 장의 1절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표 I-3-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사업군	부문명	검토 대상 사업 수	평가 대상 사업 수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영유아 보육	15	12
아동 돌봄 사업군	아동 돌봄	10	6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요보호 아동·청소년	25	2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학교밖 위기 아동·청소년		

주: 아동 돌봄 사업군의 장애 관련 사업 2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가정양육지원 사업 2개는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재분류함.

□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을 기능과 생애 주기 등에 따라 분류해보면, 표 I-3-3과 같음.

표 I-3-3 생애주기 및 지원 범위, 기능별 사업 분류

	영유아(만0-6세)	아동(만7-12세)	청소년(만13-24세)
대상 혹은 가구 직접 지원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만3-5세누리과정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돌봄	공통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장애아동임양 양육보조금,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보호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청소년 한부모 지원 지원
	돌봄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	초등돌봄교실 가출청소년보호지원센터운영지원,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원쉼터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보호	중양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주: 1)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연구진이 임의로 학령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지원 대상의 범위는 최대한령 범위로 하여 분류하되,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주의를 요함.

4 평가 지표 개관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평가를 위한 지표는 기존에 수행된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강신욱 외(2015)의 평가 지표를 기본 틀로 활용하되,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함.
 - 공통 지표는 강신욱 외(2015)에 제시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 총 5개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각 단계별 고려해야 공통 지표의 내용은 표 I-4-1과 같음.
- 모든 사업군 평가에 공통 지표 모두를 일괄 적용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군별로 제외되거나 수정되는 평가 지표가 있음.
 - 단, 평가 지표는 사업군별 평가에 있어 단계별로 이러한 지표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지표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사업군 평가는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 혹은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업 혹은 사업군별로 평가 점수를 채점하거나 사업 간의 상대적 서열을 가리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음.
- 보다 구체적인 각 사업군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평가 지표와 측정 방법 등은 해당 장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표 I-4-1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

단 계	지표명	지표에 대한 설명	지표 미적용 사업군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지원(보호)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도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된 집단에 사업군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영유아 보육 사업군,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및 개별사업의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이 존재하는지 유무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대상자 설정에 있어 대상자층의 중첩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중첩이 존재할 때 보장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악	

단 계	지표명	지표에 대한 설명	지표 미적용 사업군
집 행	투입의 충분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규모와 보호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지원 방식의 적절성	급여 및 서비스 유형, 지원 단위의 사업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욕구에 비례하여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	
	추진 방식의 적절성	지원을 위한 적절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사업별 설계 단계에서 모니터링 방법(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는가를 평가	
산 출	수급자 비율	대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 대비 실제 급여를 받는 자의 비율	
	요구 충족률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실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수급한 자의 급여액(수급액) 혹은 서비스 등이 사업군이 보호하고자 하는 위험(요구)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평가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영 향	간접적 파급 효과	정책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자료: 1)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연구 배경

1. 선행연구 개관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환경 변화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재정 분석



II. 연구 배경

1 선행연구 개관

가. 사회보장지원 사업 성과 평가 관련 선행 연구

- 사회보장사업의 범주는 매우 넓으나, 강신욱 외(2015: 56)는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을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리 대상인 360개 중앙정부 사업,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등으로 정의함.
 - 그 중에서 기본평가가 필요한 사업군의 분류를 위해 사회보험급여 사업 중 급여 사업, 지자체 시행 사업 등을 제외함(강신욱 외, 2015: 62).
 - 결과적으로 생애주기 6개, 기능 8개 구분을 적용하여 총 48개 사업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때 실제 해당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군 14개를 제외하고 34개 사업군으로 분류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군은 생애주기 상 영유아, 아동, 청소년 3개 영역과 보육, 돌봄,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군을 포괄함.
 - 강신욱 외(2015: 160)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로 영유아 보육 14개 사업, 아동·청소년 돌봄 10개 사업,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업 30개로, 총 54개 사업이 이 분야에 속한다고 정의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34개에 달하는 사업군을 5년에 걸쳐 대상과 기능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기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총 3개 사업군)와 노인 및 성인 돌봄 분야(총 2개

사업군) 기본 평가를 실시함.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는 영유아 보육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보호 3개 사업군이 속하며, 노인 및 성인 돌봄 분야는 성인돌봄과 성인안전보호 2개 사업군을 포괄.
- 2016년도에는 고용복지·건강의료(노인건강)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생활지원·생계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나. 영유아, 아동 지원 사업 성과 평가 관련 선행 연구

□ 영유아·아동 사업 성과 관련 연구

- 김미숙 외(2010)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규모를 추정하고, 효과성 검증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선별하였음.
- 이정림 외(2013)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 중복 여부를 평가하고, 대상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였음. 이를 통해 부처 간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를 제안하였음.
- 유해미 외(2017) 연구에서는 정부의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 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요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반영되지 못한 돌봄지원 요구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이재희 외(2017)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계획·추진되는 초등학생 대상 사업과 제도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개선점과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였음.

□ 청소년 사업 성과 관련 연구

- 이창호 외(2016)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중앙과 지자체를 구분하여 평가도구 및 기준을 도출하였음. 또한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 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의 구체적인 논의방안도 모색하였음.
- 김지연 외(2017)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음.

□ 취약 아동 대상 사업 성과 관련 연구

- 김미숙 외(2013)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체계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아동보호체계 서비스 연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음.
- 권미경 외(2016) 연구에서는 장애 영유아 대상의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 영유아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음.
- 배윤진 외(2017)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와 사업을 분석하고, 한부모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 권미경 외(2017) 연구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과 요구를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음.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정책 환경 변화

가. 사회보장기본 계획

-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013.1) 하면서 동법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관계부처 합동, 2014: 8).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제1차 기본 계획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원 제도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목표 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정망 구축에는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며, 본 연구 범위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의 경우 주로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과 연관이 깊음.

□ 2014-2018 제 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관계부처 합동, 2014)에 나타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산모 통합지원센터 확대 및 의료비 추가 지원('15), 새아기 장려금(CTC)제도 도입('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 폐지('14) 등 건강 및 의료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소),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후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등 보육 및 돌봄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14), 전국 11,000여개 초중고교 예술강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확대(~'16), 드림스타트 기능 강화 등 상담 및 심리 지원.

□ 본 연구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업 중에서도 생애주기 상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그 중에서도 돌봄 및 보호 기능을 가진 사업에 초점을 맞춤.

-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영역은 크게 영유아 보육 지원과 아동 돌봄 지원으로 구분되며,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무상 보육 지원 체계 정착, 공보육 서비스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음.
- 청소년 관련 사업은 보육이나 돌봄보다는 보호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과 취약 계층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및 보호 지원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함.

나. 유관 분야 지원 정책의 변화

- 2001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왔음.
 -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에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조명되며, 특히 자녀양육(교육) 비용 부담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됨.
 - 2012년 만0-2세와 만5세에 대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전면적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시작된 이후, 2013년에는 만3-4세까지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되고,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도 시행되면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 지원 체계가 완성됨.
-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상에서의 지원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등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서부터 중점과제로 제시됨(대한민국정부, 2011; 대한민국 정부, 2016).
- 본 연구 대상인 영유아 보육 및 아동 돌봄 사업군의 사회보장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보건복지부)에 제시된 사업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음.
 - 사회보장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직접적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이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에 보다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나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과는 차이를 보임.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 사업들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중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중첩을 이루며,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포함된 보육사업 중에서는 가구 대상 지원 사업이 중첩을 이루는 지점임.

1) 영유아 감소에 따른 돌봄 수급 불균형

□ 영·유아 돌봄은 과거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 보육료 전액 지원은 법정저소득층에서 2006년에 최저생계비 120%까지, 2009년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2011년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까지, 2012년부터 만0~2세아 전체, 2013년부터 만3~5세아 전체 등으로 확대.
-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은 1999년부터 농어촌지역 만5세아 저소득층, 2000년부터 전국 만5세아 저소득층, 2002년부터 만5세아 전 계층, 2006년부터 전 연령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 2007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2009년부터 소득하위 70%이하, 20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총 돌봄시설 이용 아동수는 2002년 801천명에서 2015년 1,453천명까지 증가.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8년 18.8%에서 2017년 39.3%로 증가하고, 유아교육 취학률이 2008년 83.4%에서 2016년 92.7%로 상승.
- 관련 인프라로써 어린이집이 2002년 22,147개소에서 2013년 43,770개소까지 증가.

표 II-2-1 영·유아 돌봄 현황

단위: 천 명, 개소, 2012=100

	2002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수 (0~5세)		2,783	2,735	2,777	2,816	2,769	2,742	2,740	2,680	2,569
이용 아동수	801	1,136	1,280	1,349	1,487	1,487	1,497	1,453	1,451	1,450
어린이집 수	22,147	33,499	38,021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1)	4.1	18.8	26.1	29	35.5	34.3	35.7	34.2	36	39.3

	2002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아교육 취학률2)	-	83.4	84.7	85.2	88.1	91.9	91.4	92.1	92.7	-
어린이집 현원율	86.2	79.5	82.2	83.2	86.4	83.4	83.1	81.1	82.1	82.6

주: 1) 영아 어린이집이용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 수 ÷ 만 0~2세 주민등록인구) × 100.
 2) 유아교육 취학률 = [(어린이집 보육아동수(만3세이상)+유치원 재원 학생수) / 취학적령 인구(만3~5세 추계인구)] × 100
 자료: 1) 이용아동 수,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현원율은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2) 영아어린이집 이용률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로 산출된 것으로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8.08.10. 인출).

□ 그러나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과거 수요초과에서 공급초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음.

- 대상 아동(0~5세아)은 2008년 2,783천 명에서 2017년 2,569천 명으로 감소.
 - 전체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총 돌봄시설 이용 아동 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 어린이집도 2013년(43,770개소)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7년 40,238개소로 약 3,500개소가 줄어듦.
 -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최근까지 80%대 초에서 지속되고 있음.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의 대체성

□ 지금까지 정부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옴.

- 국공립어린이집은 2002년 1,330개소에서 2017년 3,157개소로 지속 증가함.
 -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을 제외하면 2014년까지 6%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7.8%까지 상승.
- 직장어린이집은 2002년 199개소에서 2017년 1,053개소로 지속 증가함
 -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까지 7%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10.5%까지 상승.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도 빠르게 증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2년 103천 명에서 2017년 187천 명으로 지속 증가함.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중은 2007~2014년 동안 11% 미만에서 2017년 12.9%로 높아짐.

-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2년 9천 명에서 2017년 58천 명으로 지속 증가함.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중은 2012년 12.1%에서 2017년에 16.9%까지 상승.

□ 문제는 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공급된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확충에 따라 운영 상 큰 어려움에 직면.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이외 민간어린이집은 2002년 20,618개소에서 2013년 40,819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7년에는 36,028개소로 줄어듦.

• 2013~2017년 동안 순수하게 4,79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영세해지거나 도산되어 다른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신규 추가 공급 국공립·직장어린이집 간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합리적인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표 II-2-2 ■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및 아동 현황

단위: 개소, 천명, %

	2002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집 개소수								
전체	22,147	30,856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국·공립어린이집	1,330	1,748	2,203	2,332	2,489	2,629	2,859	3,157
직장어린이집	199	320	523	619	692	785	948	1,053

	2002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공립 비율	6.0	5.7	5.2	5.3	5.7	6.2	7.0	7.8
국공립+직장 비율	6.9	6.7	6.4	6.7	7.3	8.0	9.3	10.5
국공립·직장 이외	20,618	28,788	39,801	40,819	40,561	39,103	37,277	36,028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801	1,100	1,487	1,487	1,497	1,453	1,451	1,450
국·공립어린이집	103	119	150	154	159	166	176	187
직장어린이집	9	15	30	34	39	45	52	58
국공립 비율	12.9	10.8	10.1	10.4	10.6	11.4	12.1	12.9
국공립+직장 비율	14.0	12.2	12.1	12.7	13.3	14.5	15.7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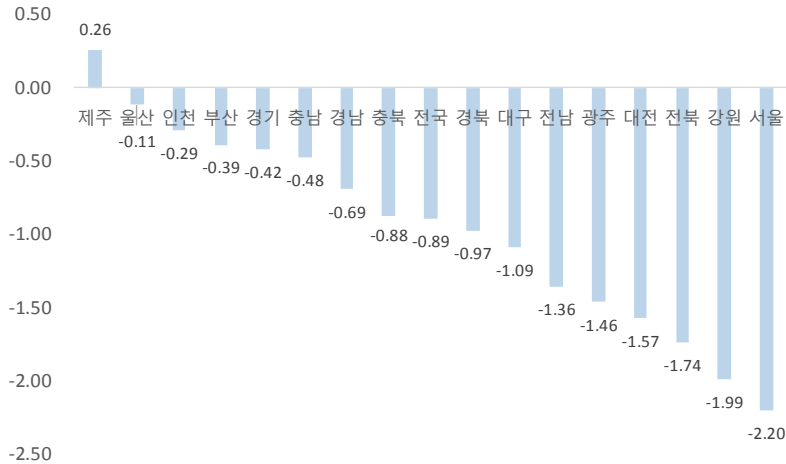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3) 아동 희소 지역 증가에 따른 돌봄서비스 접근성 악화

□ 아동 수의 감소는 지역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돌봄 수요도 지역 간 균형적으로 분포되지 않게 됨.

- 주민등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08~2017년 동안 0~5세 아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시도 간 큰 편차(+0.26%~-2.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편차는 시군구 및 읍면동 간에 더욱 클 것이며, 대체적으로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그리고 동부보다는 읍·면부에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실제 어린이집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수는 전국적으로 2017년에 466개소로 나타남.
 -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수는 2009년 491지역에서 2013년 441지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함.

Ⅱ 그림 II-2-1 Ⅱ 0-5세 아동 수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18.08.10. 인출).

-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아동희소지역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아동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장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 아동희소지역을 분류·전망하고, 지역특화적인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

-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만혼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20대와 30대 인구 감소와 미혼·부모 등의 자녀 직접 양육 경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입양 및 위탁아동의 감소와 함께, 반대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입양가정과 가정 위탁 가정 등의 급격한 감소가 포착됨.
 - 입양아동(국내외 포함)은 2010년 2,475명에서 2017년 863명으로 급격 감소.
 - 가정위탁아동은 2010년 16,359명에서 2017년 11,983명으로 감소.

표 II-2-3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추이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입양아동								
전체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국내	1,462	1,548	1,125	686	637	683	546	465
국외	1,013	916	755	236	535	374	334	398
가정위탁아동								
전체	16,359	15,486	14,502	14,596	14,385	13,728	12,896	11,983
대리양육가정	10,865	10,205	9,732	9,776	9,550	9,127	8,578	7,950
친인척위탁가정	4,371	4,260	3,831	3,843	3,816	3,556	3,348	3,100
일반위탁가정	1,123	1,021	939	977	1,019	1,045	970	933

자료: 1) 입양아동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로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2018.08.10. 인출.

2)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18.08.10. 인출).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 심리적 치료, 입양휴가 등 지원
- 가정위탁의 경우 생계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지원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전세자금 등 지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18만 원), 아동교육지원비(자녀 1인당 연 5.41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생활보조금(가구당 월 5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검정고시학습비(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 등이 매우 중요.

- 그러나 제도 상 미흡이나 획일적인 접근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의 특성에 부합한 돌봄서비스 등이 현실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
- 이와 관련, 미혼부·모의 경제활동 및 교육과 돌봄 간의 병행, 입양가정의 부

적응 상황, 위탁가정의 긴급 상황 등의 특수성에 적합한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 학교 정규수업이 아주 일찍 끝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 비추어보아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돌봄 욕구(맞벌이 증가 등)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돌봄 지원은 우선순위, 재원 부족, 관련 부처 분리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에 집중되어 왔음.

- 그 결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나 홀로' 방치되거나 여러 학원들을 다녀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더불어 사교육비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

표 II-2-4 초등학교 취학 자녀의 주간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초등 방과후	학원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	부모	친인척	본인/ 남편	아이혼자/ 형제자매	계
1~3학년 전체	31.2	46.4	3.1	0.6	5.0	0.2	12.9	0.6	100.0
맞벌이	28.8	48.4	4.0	0.7	5.5	0.1	11.8	0.6	100.0
비맞벌이	33.5	44.5	2.3	0.5	4.5	0.3	13.9	0.5	100.0
4~6학년 전체	21.5	68.4	1.7	-	0.6	0.1	5.4	2.3	100.0
맞벌이	22.4	69.8	1.1	-	0.9	-	2.3	3.5	100.0
비맞벌이	20.4	66.7	2.4	-	0.2	0.2	9.5	0.6	100.0

자료: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52-253에서 재구성.

□ 이와 관련,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2004년 방과후교실 사업을 시작하고,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4년에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하는 모든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2015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학생 대상으로 전환.

- 1~2학년은 전용 및 겸용 돌봄교실에서 초등돌봄전담사를 배치하여 돌보고, 3~6학년 학생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 2016년 초등학교 5,998교, 11,920실, 238,480명(오후 돌봄) 참여(방과후학교연계형 932교, 1,151실, 14,704명 참여)(교육부, 2017).
-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약 88만명 중 약 21만명(23.3%) 학생이 초등돌봄교실 참여(교육부, 2017).
-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2015년 94.8%에서 2016년 95.7%로 전년 대비 0.9%p 증가(2016년 10월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 20만 명 대상)(교육부, 2017).

표 II-2-5 초등학생 오후 돌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참여학생수 (방과후학교연계형)	115,347 (1,353)	91,470 (1,603)	19,060 (5,845)	6,976 (3,189)	3,112 (1,484)	2,515 (1,230)	238,480 (14,704)
참여비율	48.4%	38.4%	8.0%	2.9%	1.3%	1.1%	100.0%

자료 : 교육부(2017).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68.3%, 저소득층 20.3%, 한부모 3.5%, 기타 7.8% 등(교육부, 2017).

표 II-2-6 가구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명, %

가구유형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기타
대상학생수	48,511명(20.3%)	8,326명(3.5%)	162,939명(68.3%)	18,704명(7.8%)

자료 : 교육부(2017).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2016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은 약 56백 개교, 8천9백실, 16만 명 학생 이용(교육부, 2017).

-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되는 지역돌봄서비스 기관(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학부모 등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에 대한 전 학년, 전 계층, 전 시기 등으로의 확대가 곤란한 실정.
 - 전용교실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초등돌봄전담사 배치, 인건비 등의 문제로 초등돌봄교실 확충 곤란하기 때문./
 -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나 규정을 갖고, 각기 다른 부처나 조직(교육청, 지자체)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학생이나 운영시간의 변화, 예산이나 인력의 통합적 운영 등에서 연계가 다소 부족.
 - 방학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기에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 이와 관련,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6) 아동 인권 침해 증가

- 정부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왔음.
 - 아동학대 등 권리침해 사례 발견이 용이한 어린이집교사, 시설종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실시.
 - 아동인권 관련 캠페인 실시,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 지정,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홍보·교육 실시, 아동권리포럼 개최 등.
-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2006년 5,202명에서 2016년 18,700명으로 260% 증가.
 - 15~17세를 제외하면,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아동 학대 등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강

구 필요가 있음.

-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 방지시스템 구축 필요.

■ 표 II-2-7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추이

단위: 명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가율 (‘06~’16)
계	5,202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59.5
0~2세	329	530	708	813	870	979	1,113	1,603	387.2
3~5세	625	643	742	841	931	1,331	1,598	2,413	286.1
6~8세	1,037	972	977	998	1,143	1,744	2,024	3,394	227.3
9~11세	1,386	1,339	1,323	1,293	1,256	1,974	2,303	3,668	164.6
12~14세	1,150	1,427	1,438	1,564	1,583	2,393	2,460	4,188	264.2
15~17세	6,751	746	870	894	1,013	1,606	2,217	3,434	445.9

주: 1) 18세 이상 46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18.08.10.일 인출.

7)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요인 증가

□ 사회현상의 복잡다양화, 가족관계 약화, 지역연대 쇠퇴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많은 사회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등장.

- 과도 경쟁사회에서 지나친 성적 중심의 수업방식, 왕따 문화, 게임 등 인터넷 중독, 가족 해체 증가, 가족 내 대화 부족 등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음.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1388 청소년 상담 채널(청소년 전화, 문자, 채팅 상담 등) 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일시보호소 운영,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우울, 불안, 비행,品行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장애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상적 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상담·치료, 보호, 교육(대안), 자립지도(직업교육,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중위소득 72% 이하)에게 생활(의식주), 건강 검진 및 치료, 학업, 자립(지식, 기술, 기능 등),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상담 등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지정 및 관리,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등.
 - 가출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비행 및 범죄 유입 예방.
 - 가출 청소년 생활보장(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자문, 검정고시 등 학업,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취업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 정책적 노력 등의 결과로써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시도율 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나타남.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46.5%에서 2015년 35.4%로 낮아졌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37%대로 높아짐.
 -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41.3%에서 2015년 23.6%로 낮아졌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25%대로 높아짐.
 -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2010년 5.0%에서 2015년 2.4%로 낮아졌으나 2017년에는 2.6%로 높아짐.

표 II-2-8 청소년 스트레스, 우울감 및 자살 시도

단위: %

	2007	2010	2012	2015	2016	2017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전체	46.5	43.8	41.9	35.4	37.4	37.2
중학교	43.4	40.8	38.9	31.6	33.6	34.1
고등학교	49.9	46.9	44.7	38.7	40.5	39.8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전체	41.3	37.4	30.5	23.6	25.5	25.1
중학교	38.3	34.4	28.2	21.2	22.7	23.5
고등학교	44.6	40.3	32.6	25.6	27.7	26.4
청소년 자살 시도율						
전체	5.8	5.0	4.1	2.4	2.4	2.6
중학교	6.2	5.6	4.6	2.8	2.6	3.0
고등학교	5.3	4.4	3.5	2.1	2.2	2.2

자료: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18.08.10.일 인출.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2017년 3.7%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출 사유로는 부모와의 문제가 60.9%로 높고, 다음으로는 학업 부담(14.3%),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2-9 청소년 가출 경험 및 사유, 2017

단위: 명

	가출 경험률	가출 이유					
		학업 부담 때문에	부모님과 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	3.7	14.3	60.9	5.1	1.7	10.6	7.4
학교급							
초등학교	2.6	17.7	45.3	8.6	1.8	13.3	13.3
중학교	4.2	17.6	57.1	2.9	3.3	11.9	7.3
고등학교	4.2	9.9	71.0	5.4	0.4	8.4	4.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3.4	15.2	61.4	4.6	1.5	10.1	7.3
한부모가정	6.8	11.0	67.9	4.4	3.8	7.5	5.4
조손가정	6.4	12.5	52.4	19.6	0.0	15.5	0.0
기타	5.0	0.0	0.0	25.2	0.0	61.6	13.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18.08.10.일 인출.

□ 향후에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가 청소년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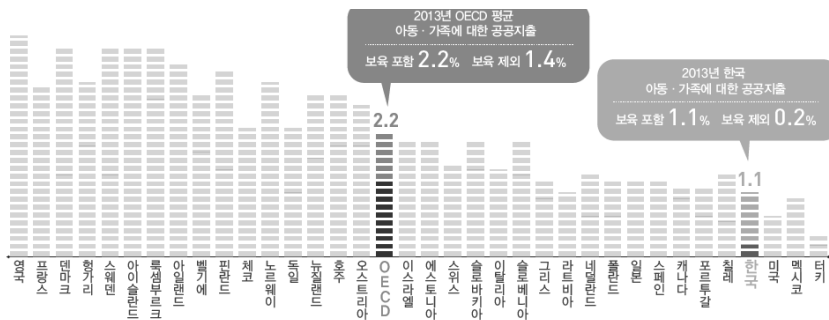
- 이와 관련, 현재 분절적이면서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을 심층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회 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의 각종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회보장 지원재정 분석

□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은 1.4%인데 비해, 한국은 0.2%에 불과함.

- 보육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보육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복지 지출이 적은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사각지대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출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 그림 II-3-1 ■ OECD 국가의 아동·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 2013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p.18.

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 예산 분석 구조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분야 사회보장지원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 현황 및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예산 현황, 그리고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분야의 예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사회보장 예산 속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예산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사회보장 관련 예산 분류체계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은 세출예산은 소관-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 구분함.
 -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세출예산 분류는 다음 표 II-3-1과 같음.
 -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아동·청소년 정책’과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의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보육지원강화’,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 ‘요보호아동보호육성’프로그램이 해당됨.
 -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의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으로 ‘가족기능강화’,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됨.
 - 교육부 소관 예산 중 교육분야의 유아·초중등교육부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이 해당.

■ 표 II-3-1 ■ 영유아, 아동, 청소년돌봄 관련 세출예산 구조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청소년	아동·청소년정책
			노인생활안정
			노인의료보장 등 기타
		보육·가족및여성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보육지원강화
		보훈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사회복지일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택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복지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등 기타
	보건	건강보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여성가족부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가족기능강화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여성가족부행정지원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교육부	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	
		유아및초중등교육	학교교육내실화
			교육복지증진
			학교교육활성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평생직업교육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주: 1) 세출예산 분류체계는 기획재정부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것임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해당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 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세출 구조 분류체계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분야의 예산현황과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예산현황, 그리고 부처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부문의 프로그램의 예산현황을 분석함.

- 이와 같은 예산현황을 분석한 이유는 전체 사회보장 예산 변화 추이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예산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와 사업별 재원(회계별)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여 재원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분야 예산 현황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 현황을 파악함.
-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3년 88.7조원에서 2017년 119.1조원으로 약 30조원이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정부 총지출 중 29.7%에 달함.
- 동기간 교육분야 예산은 49.8조원에서 57.4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정부 총지출 중 비율은 14.6%에서 14.3%로 감소함.

■ 표 II-3-2 ■ 영유아, 아동, 청소년돌봄 관련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복지	금액	88.7	97.2	105.3	112.9	119.1
	비율	25.9	27.3	28	29.2	29.7
교육	금액	49.8	50.7	52.9	53.2	57.4
	비율	14.6	14.2	14.1	13.8	14.3

자료: 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mainFinanceStat1Page.do> (2018.7.27. 인출).

-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사업 예산이 부처별, 재원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총지출 예산을 회계별로 파악함.
- 보건복지부의 총지출 예산은 2013년 41조원에서 2017년 57.7조원으로 16조원이 증가함. 회계별로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타 보건관련 등 다수 회계가 있음.

- 일반회계 비중이 약 47.2%로 가장 많고,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생겼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으로 활용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에 따라 세부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관련사업으로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가족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음.

표 II-3-3 보건복지부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총지출	41,067,304	46,899,497	53,472,549	55,843,619	57,662,773
일반회계	18,961,916	22,686,160	25,853,466	26,141,584	27,195,552
국민연금기금	13,533,413	15,218,735	17,277,492	19,250,736	20,197,680
지역발전특별회계	3,044	0	213,564	223,730	221,313
기타	8,500,969	8,994,602	10,128,027	10,227,570	10,048,227

자료: 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교육부의 총지출 예산은 2013년 57.8조원에서 2017년 61.6조원으로 약 3.82조원이 증가함.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2.5%로 가장 많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타회계로 구성됨.

표 II-3-4 교육부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총지출	57,836,824	54,248,094	54,899,757	55,745,917	61,631,650
일반회계	48,749,268	49,344,552	49,667,578	50,285,557	52,109,518
지역발전특별회계	753,615	834,774	866,720	857,324	887,392
기타	8,333,941	4,068,768	4,365,459	4,603,036	8,634,740

자료: 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여성가족부의 총지출 예산은 2013년 0.49조 원에서 0.6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편임. 2017년 기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5.2%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등

로 구성됨.

■ 표 II-3-5 ■ 여성가족부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총지출	494,176	548,134	619,330	611,558	683,263
일반회계	252,020	282,720	284,215	284,913	308,755
양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123,934	150,615	176,022	183,377	206,186
청소년육성기금	67,672	69,808	86,481	95,151	100,831
지역발전특별회계	50,550	44,991	72,612	48,117	67,491

자료: 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유아, 아동, 청소년돌봄 관련 세출예산 구조에 따라 부처별 관련 부문 및 프로그램의 예산 현황을 파악함.

- 보건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취약계층지원 부문,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예산은 2013년 4.6조원에서 2017년 5.9조원으로 1.3조원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비율이 11%에서 10%로 감소하였음. 이는 다른 사업의 예산 증가에 비해 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예산 증가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원강화 예산이 5.4조원으로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지출되고 있음.

■ 표 II-3-6 ■ 보건복지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분야-부문-프로그램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 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보육지원 강화	4,146,625	5,273,819	5,186,136	5,340,319	5,406,655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9,751	12,883	15,894	35,315	34,468

보건복지부-분야-부문-프로그램			2013	2014	2015	2016	2017
	노인·청소년	아동청소년 정책	891	849	919	1,001	5,218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 지원	186,195	195,160	203,500	209,598	213,993
		요보호 아동지원	59,575	17,502	18,382	19,232	25,967
	사회복지 일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4,781	200,201	223,964	227,795	225,113
합계			4,617,818	5,700,414	5,648,795	5,833,260	5,911,414
보건복지부 예산 중 비율			11%	12%	11%	10%	10%

자료: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총지출-부처별-분야-부문별,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교육부 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이 이에 해당됨.

표 II-3-7 교육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부-분야-부문-프로그램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 정책지원	-	-	39,405,566	43,161,502	48,659,378
		합계			39,405,566	43,161,502	48,659,378
	교육부 예산 중 비율				72%	77%	79%

자료: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총지출-부처별-분야-부문별,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none> (2018.7.27. 인출).

- 여성가족부 사업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의 예산은 2013년 2,234억 원에서 2017년 2,801억원으로 576억원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중 비율은 45%에서 41%로 감소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관련 예산 비율이 41%로 복지부의 11%에 비해 높지만, 예산액 규모 자체가 매우 적고,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표 II-3-8 여성가족부 관련 부문별 및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분야-부문-프로그램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 복지	보육·가족및 여성	가족기능 강화	92,952	95,967	116,777	105,085	115,539
		여성아동 폭력예방 및 보호	21,521	26,867	15,396	17,815	14,658
	노인·청소년	청소년사회 안전망 강화	4,700	4,703	4,972	5,106	5,861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04,277	107,982	128,303	111,702	144,099
	합계		223,450	235,519	265,448	239,708	280,157
	여성가족부 예산 중 비율		45%	43%	43%	39%	41%

자료: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총지출-부처별-분야-부문별,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none> (2018.7.27. 인출).

III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3. 종합 및 시사점



Ⅲ.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가.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는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15개 개별사업이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됨.
 - 보육 사업은 본 연구에 포함된 사업보다 훨씬 많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지원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으로 국한하여 분석함.
 - 이는 본 연구가 사업군에 대한 평가로 제외된 사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사업군에 포함된 사업과 유사 범주로 분석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개별 사업 자체가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사업으로 사업군으로 묶어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한 15개 개별 사업 중에서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은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 수당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등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에 대한 지원에 해당됨.
 - 해당 사업은 중요한 보육 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영유아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 등에 미친 효과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평가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함.

- 보육돌봄서비스(어린이집 지원)는 2018년 기준 어떠한 사업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 및 보조 교사를 투입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은 앞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종적 지원 대상이 영유아라 보기에는 애매하고 다른 사업과의 통합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한 다른 사업과 달리 유일하게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에 속하여 다른 사업과 통합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긴 하나, 지원 대상이 미혼모부로 국한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지원과 부모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 자체의 특수성이 커서 다른 사업과 통합하여 평가가 어려우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반면,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강신욱 외(2015)에서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 집단이 영유아 자녀에 초점이 있으며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포괄하여 평가를 진행함.
- 최종적으로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총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보육료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보육 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이 포함됨.
 - 반면, 가정양육 지원 사업에는 가정 양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 제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와 비용 지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사업이 많음.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은 해당 명칭이 사업을 지칭하지 않고 포괄범위가 모호하므로, 이하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명료화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평가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리스트는 표 III-1-1을 참조하기 바람.

표 III-1-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개요

사업군	지원 대상	기관이용 여부	지원 방식	평가대상 여부	비고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영아 가구	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원	바우처	○	기존 만0-5세 보육료 지원은 제도가 변경됨
만3-5세누리과정 지원 사업	유아 가구			○	-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영유아(0-5세)			○	별도의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등			○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자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가구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	현금	○	-
시간제 보육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		바우처, (기관 지원 별도)	○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명칭 명료화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2세미만 영아	이용여부 무관	바우처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	이용여부 무관	서비스	○	아동돌봄 사업 군에서 재분류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자녀	기관 미이용자 우선	서비스 및 바우처	○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	-	×	사업 성격이 모호하고 복합적 지원으로 평가에서 제외

사업군	지원 대상	기관이용 여부	지원 방식	평가대상 여부	비고
농촌보육교사특별 근무수당지원	농어촌 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현금	×	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
어린이집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교사 및 가정어린이집원장		현금	×	
입양숙려기간모자 지원사업	출산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	이용여부 무관	현금	×	타 사업과는 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한 지원으로 평가에서 제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 가정	이용여부 무관	서비스 지원	×	

- 주: 1)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의미함.
 2) 시간제 보육의 경우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시간당 4,000원) 이 외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지원임.
 3) 사업 리스트는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도 포함하여 제시함.
- 자료: 1)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 안내.
 2) 보건복지부 복지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50>, (2018. 5. 3 인출).
 3) 보건복지부 복지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46> (2018. 5. 3 인출).
 4) 보건복지부 복지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iframe_url=, (2018. 5. 3 인출).

□ 본 연구의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평가 대상 사업(총 12개)을 기준으로 지원 목적과 지원 방식 등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표 III-1-2와 같음.

-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한편, 가정 양육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가정 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를 포괄하지만 주로 영아 자녀가 정책 대상인 사업임.
 - 단, 시간제 보육 사업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이 기관 보육보다는 가정 양육을 독려하는데 무게가 있다고 보고 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 분류함.
 - 육아종합지원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난감 도서관, 부모 교육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교사 교육 등)은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외로 함.

-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중에서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사업으로⁵⁾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들 사업의 주 이용 대상 연령도 영유아 자녀임.
- 공동육아 나눔터는 장소 및 서비스를 지원 하는 형태인 반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비스(인력) 지원 사업이지만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음.
-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프라 혹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이 있음.

■ 표 III-1-2 ■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의 지원 방식 및 목적별 구분

지원 목적	비용 지원	비용 및 서비스 병행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기관 보육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가정 양육	가정양육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공동육아 나눔터

주: 1) 육아종합지원서비스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나, 본 연구는 가정에 대한 지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지원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의 하나의 목적 뿐 아니라 중복적 목적을 가지거나 일부 중첩적 지원 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주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함.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12개 사업은 지원 방식과 지원 목적 등이 약간씩 상이 하기는 하나, 큰 틀에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비용 부담 뿐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 등의 부담을 포함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함.

5) 지원 대상이 아동(초등학생 자녀)이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신옥 외(2015)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 두가지 사업을 분류하였으나, 주 이용 대상이 영아라는 점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 사업군 -가정 양육 지원으로 재분류함.

-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하나로 논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일부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나.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지표

-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는 설계, 집행, 산출, 성과, 영향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개별 지표별로 분할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각 단계별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함.
- 먼저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설계 단계 평가 지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유무, 사업간 상충 보완관계임.
 - 설계 단계의 지표들은 주로 개별 사업별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측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영유아 수를 측정.
- 집행 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을 평가.
 - 투입의 충분성과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기관 공급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함.
 - 투입된 사업 예산 및 결산 현황은 개별 사업별 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지원 수준(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수혜자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등을 통해 평가하며,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보육통계, 교육통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등과 공식적으로 수급자 현황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분석 등을 병행하여 분석함.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대비 급여 지원액, 영유아 가구 보육비 지출 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함.
- 성과 단계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2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확인.

- 영유아 보육 사업군 효과성은 주로 산출 단계 지표로 측정되며, 성과 단계 지표는 보조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 지표가 적정한지,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

□ 정책의 간접적 파급 효과에 해당하는 영향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영유아 보육 사업군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인 양육부담 완화,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을 제고 등에 정책 지원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선행연구 등을 통해 고찰함.

-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 혹은 영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이들 지표는 영유아 보육 지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이므로, 영유아 보육 지원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해당 평가가 반드시 본 연구의 사업에 국한된 효과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표 III-1-3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단 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영유아 보육 서비스(기관 보육 및 가정 양육)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설정이 적절히 되었는가?	사업별 지원 대상 확인 영유아 수	사업 시행 계획 주민등록인구통계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개별 사업별로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가 존재하는지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자료 유무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사업군 내 사업 간의 상충/보완 관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경우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인지 확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집 행	투입의 충분성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사업 예·결산	사업 추진 실적
			기관 공급률 혹은 서비스 공급률	보육통계 교육(유치원)통계 사업 추진 실적
				사업 추진 실적
	지원 방식의 적절성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 검토	지역별 공급률	보육통계 교육(유치원)통계 사업 추진 실적

단 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추진 방식의 적절성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추진 체계인지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의 체계성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방식 등을 확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산 출	수급자 비율	보육료 수급자,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서비스 신청자 대비 이용자 현황 등을 파악	사업별 수혜자 혹은 서비스 이용률	보육통계 교육(유치원)통계 사업 추진 실적
	지원 수준의 충분성	지원 수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은 없는 지를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와 관련된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영 향	간접적 파급 효과	보육료 지원의 경우 양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율제고, 교육 형평성 제고 등이 정책 목표로 제시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

주: 각 개별 사업별 '사업 추진 실적' 자료는 개별 사업별 소관 부처를 통해 수집하였음(각 부처 내부자료에 속함).
자료: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가. 설계 단계 평가

□ 2013년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해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현행과 같은 무상 보육지원 체계가 정립되었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한 사업들은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지원 사업으로 크게 구분됨.
-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 양육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등은 현금성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등도 서비스 지원과 함께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대체

로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및 모수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사업들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유아기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기관보육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형태로 설계됨.
 - 영유아 사업군의 대부분의 사업은 영유아기 자녀 전체를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모수를 연령별 영유아 자녀수로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임.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대부분은 연령별 영유아 수를 모수로 보고 있으며, 각 년도별 연령별 영유아 수는 아래와 같음.
 - 취학 전(만 0~6세)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 추세로 2015년 318만 7,718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04만 4,577명으로 감소함.
 - 연령별로 2015년 기준 3세(2012년생)의 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다소 많으며,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띠.
 - 특히 2017년생의 경우에는 345,786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 영유아 대상 정책의 대상자가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III-2-1 연도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단위 : 명

연령 \ 연도	2015	2016	2017
0세	424,563	393,674	345,786
1세	437,994	441,720	409,814
2세	439,989	439,207	442,943
3세	488,716	440,530	439,700
4세	475,519	489,140	440,872
5세	473,120	475,817	489,401
6세	447,817	473,401	476,061
계	3,187,718	3,153,489	3,044,57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2018. 9. 5 인출).

-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지역별로도 집계 가능하여, 지역별 기관 공급률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 자료가 활용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역별 영유아 수 및 영유아 비중은 부록 표 III-2-2를 참조.
- 한편,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의 포괄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구분해 보면, 주로 취학 전인 6세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 초등학생을 포괄하는 사업도 있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한 사업 중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과 같이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영아 혹은 미취학 자녀로 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미취학 자녀가 주된 지원 대상임.
 - 장애아 보육료, 시간 연장형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만 7~12세(초등자녀)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취학 이후에도 보육서비스의 필요가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위해 연령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18세까지로 매우 넓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된 이용 대상은 돌봄 필요가 높은 영유아기 혹은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국한되는 경향이 큼.

■ 표 III-2-2 ■ 영유아 보육 사업군 지원 대상자 연령 구분

사업명	대상자 연령 (상한)				
	만0~2세 (24개월이하)	만2~3세 (36개월미만)	만4~6세 (84개월미만)	만7세~ 만12세	만13세~ 만18세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	○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가정양육수당	○	○	○		
시간제 보육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	○	○	○	○

사업명	대상자 연령 (상한)				
	만0~2세 (24개월이하)	만2~3세 (36개월미만)	만4~6세 (84개월미만)	만7세~ 만12세	만13세~ 만18세
아이돌봄서비스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주: 1) 사전 처리된 사업은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연령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 안내.
 2) 보건복지부 복지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50>, (2018. 5. 3 인출).

□ 기관 이용 여부 및 기관 종류 등에 따라서는 5개의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가정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은 기관을 이용하면 이용이 불가능한 가정 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이 있는가 하면 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섞여 있음.

표 III-2-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이용 기관 및 취약여부 등에 따른 지원 대상 분류

사업명	기관이용여부 및 이용 기관	취약계층 여부 및 주요 지원 대상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무관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무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기 무관, (단, 취약아동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무관
시간제 보육	기관 미이용	무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무관	무관
공동육아 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무관
아이돌봄서비스	무관	비용 지원은 소득수준 고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무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 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의 경우 장소 및 비용 지원 기관이 건강가족지원센터임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 안내.
 2) 보건복지부 복지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50>, (2018. 5. 3 인출).

- 취약계층 유무에 따라서는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과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가정 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은 가구 소득 등과 무관하게 영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반면, 보육료 지원 사업 중에서 다문화 아동과 장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과 구분하여 실시되는 별도 사업임.
 - 이는 보육료 지원은 보편적 지원의 형태를 갖지만, 특수한 교육과정의 지원 및 인력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됨.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 필요성에 기인해서 정책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학 이후에는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의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함.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무관하게 모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나, 이용비용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음.
- 즉,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상자 포괄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다문화 등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 지원,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보편적 지원 체계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집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함.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상자 포괄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한편, 모든 사업이 모수를 영유아 혹은 아동 수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공급 예측 등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책 대상 그룹에 대한 모수 추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장애, 다문화, 한부모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수가 부재한 상황으로, 발견율과 실제 발생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 DB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근거한 정

책 설계가 필요함.

2) 사업군 내 사업 간의 상충/보완 관계

-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사업이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중첩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 수급도 양자택일 방식으로 이들 사업 간 중복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기관 이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가정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거나 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간 중복 수혜로 보기는 어려움.
- 취약 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의 육아 생필품에 해당하는 기저귀와 분유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대표적임.
 -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 특히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의 경우 주로 보육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 영유아기 지원 사업 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생필품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과의 중복수혜가 발생하는 사업이라 보기는 어려움⁶⁾.

6) 또한 본 연구의 평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자관리 사업 등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중복성이 크지 않음(보건복지부, 2018. 1 : 435).

3) OECD 국가의 ECEC 부모 지원 비용 지원 방식

□ 한국의 경우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지원이 현금성 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세계 각 국의 ECEC 비용 지원 설계는 세금감면, 가족수당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체로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지원정책 및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과 연계되어 운영 중임(최효미 외, 2016: 55-61).
- OECD 다수의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 일반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자체 간 ECEC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의 개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지원 정책을 시행(최윤경 외, 2017: 207)).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은 부모 부담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여, 이탈리아 초등학교, 슬로바키아 유치원, 스웨덴 유아학교 등 특정 기관유형의 부모 부담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대체로 기관보육에 비해 가정보육이, 유아교육에 비해 영아보육의 비용이 높음(OECD Starting Strong IV, 2015; 최윤경 외, 2017: 22 재인용).
- OECD 회원국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중 정부의 부담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으로, 전체 영유아 서비스 평균 약 69%(유아학교는 약 83%)임. 이는 중앙정부 평균 41%, 지방정부 45%, 기타 부담으로 나뉨(최윤경 외, 2017 : 22 재인용).
 - 부모부담이 전체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비용의 10% 미만으로 적은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취학전학교, 독일,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유치원 등임(최윤경 외, 2017 : 23 재인용).

7) 2018년 11월 30일 기준 미발간 자료로, 자료 인용에 주의를 요함.

표 III-2-4 OECD 회원국의 ECEC 재정 체계

국가	기관유형	비용분담률(%)		공적지원 주체			ECEC 세수권			정책보조금(예산) 지급 경로		
		정부	부모	중앙 정부	지방/ 주 정부	기초 지자체	중앙 정부	지방/ 주 정부	기초 지자체	중앙→ 지방/ 기초 지자체	중앙 →지방	지방/ 주정부 →기초 지자체
프 랑 스	탁아소	66	33	✓	✓	✓	✓		✓	✓	✓	
	취학전학교	94.2	5.8	✓	✓	✓	✓		✓			
독일	기관보육	63-91	27-9		✓	✓	✓	✓	✓	✓		✓
일본	유치원	50	50	✓	✓	✓	✓	✓	✓	✓	✓	
	어린이집	60	40	✓	✓	✓	✓	✓	✓	✓	✓	✓
한국	어린이집	100		✓			✓	✓		✓		
	유치원	100		✓			✓	✓		✓		
뉴 질 랜 드	교육/보육	76	22	✓			✓					
	유치원	90	4	✓			✓					
	가정시설	58	42	✓			✓					
	놀이시설	77	6	✓			✓					
노 르 웨 이	유치원/ 가정유치원	85	15	✓		✓	✓				✓	
	개방형 유치원	100	0			✓	✓				✓	
스 웨 덴	어린이집	93	7			✓	✓		✓		✓	
	유아학급	100	0			✓	✓		✓		✓	
룩 셈 부 르 크	가정보육	75	25	✓			✓				✓	
	시설보육	75	25	✓		✓	✓				✓	
	ECE Program	100		✓		✓	✓				✓	
	Compulsory Preschool	100		✓		✓	✓				✓	

주: 정부(중앙/지방/기초지자체)는 State(national, regional, local)을 의미함.

자료: 최윤경 외(2017), 표 II-2-1 재인용. (OECD(2015). Starting Strong (IV) 44p. A1.3. Characteristics of ECEC funding system을 번역한 자료임)

나. 집행 단계 평가

1) 투입의 충분성 및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집행 단계의 평가 지표로 투입과 관련된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과 투입 배분의 적절성이며, 두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함께 제시함.

- 투입은 크게 재정 투입과 관련된 예·결산 부분과 서비스 혹은 기관의 공급

현황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가) 사업별 예·결산 투입의 충분성 및 투입 배분의 적절성

□ 만0-2세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보육료 지원 사업과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 가정 양육 수당 등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신청을 하는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결산의 구분이 무의미함(표 III-2-5 참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에는 어린이집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산정하였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가정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체험실 운영, 행사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이 있음.

□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의 경우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015년~2017년에 조금씩 감소하는데 반해, 보육료 지원 사업은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예결산액은 2016년에 가장 많음.

- 이는 출산율에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던 2012년생이 유아기에 진입하면서 기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됨.

-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기 아동의 기관 이용률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해마다 증감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과 진행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예산

확대를 통한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 대비 결산액이 적은 경우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으로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즉, 예산 대비 결산비가 적은 것은 그만큼 수급률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산출 단계 평가에서 좀 더 살펴봄.

□ 특기할 만한 점은 2017년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중 가정양육지원 예산 대비 결산액이 매우 크게 잡힌 부분으로, 부모 교육 사업 시행 등의 확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가정 양육 지원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요컨대,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영유아 전체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신청 시 모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예산 투입의 충분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마찰이 발생한다는 점임.

- 2013년 무상 보육의 실시로 영유아 보육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재원 출처 및 매칭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일반회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운영되고 있음(표 III-2-6 참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의 경우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성평등발전 기금과 지방비가 매칭된 형태를 띰.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가정 양육 지원 사업별로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지역(센터)별로 수행 사업의 종류와 비중이 각기 달라 국비와 지방비를 분할하여 조사할 수 없음.

• 즉, 센터별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칭 비율을 산출할 수 없어, 총액으로

자료를 제시함.

□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표 III-2-6 참조).

- 특히 현금성 지원 사업인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은 예산금액 자체가 커서, 이의 재정 조달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반발이 격화되기도 함.
- 다행히 만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은 2017~2019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 특별회계(국비)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2016년 이전까지는 지방비(지방교육교부금)로 전액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은 크게 유치원(교육부 소관)에 다니는 경우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에 다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었음.
 - 한시적으로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잠시 소강 상태이나, 또 다시 재원 마련을 위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이후 만3-5세 누리과정지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금성 사업에 지방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보육지원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역들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
 - 영유아 및 아동이 적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 사업의 매칭만을 수행하고, 이외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
 - 일례로,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113-137)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⁸⁾ 공통사업 예산과 자체 예산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특히 공통사업에 매칭된 지방비 예산 총액에 비해 자체 사업 예산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8) 단,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의 사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재분석한 자료로, 사업의 구성이 본 연구의 영유아 보육 사업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표 III-2-5 영유아 보육 사업군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예산
보육료 지원 사업 소개*	4,669,560	4,655,025	100.0	4,625,245	4,720,496	100.0	4,658,575	4,764,175	100.0	4,740,547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	4,533,010	-	-	4,535,579	-	-	4,535,579	-	-	4,615,386
다문화보육료 지원	68,9470	-	-	60,028	-	-	62,632	-	-	63,174
장애아 보육료 지원	67,610	-	-	57,234	-	-	60,364	-	-	61,89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3,945,511	3,945,511	100.0	4,042,010	4,042,010	100.0	3,940,881	3,940,881	100.0	3,892,717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92,388	92,379	100.0	105,885	103,609	97.9	121,769	112,873	92.7	145,125
가정양육수당	1,884,152	1,890,537	100.3	1,855,708	1,796,464	96.8	1,835,358	1,614,979	88.0	1,645,222
시간제 보육	14,914	14,914	100.0	23,818	21,096	88.6	17,442	17,696	101.5	19,34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5,331	21,201	83.7	29,121	27,635	94.9	31,945	54,819	171.6	40,319
공동육아 나눔터	1,040	1,040	100.0	2,080	2,040	98.1	1,688	1,674	100.0	4,520
아이돌봄서비스	122,803	119,404	97.2	129,603	129,603	100.0	136,622	136,622	100.0	172,14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7,858	292	3.7	39,540	10,464	26.5	42,560	23,491	55.2	38,050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추경 및 전용 예산 포함 금액임.
 2)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액은 가정 양육 지원 사업 부분(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행사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만 합산한 금액임. 이 외에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기타(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등) 비용이 있음.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결산액은 실행액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III-2-6 영유아 보육 사업군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자원 출처 및 매칭 방식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보육료 지원 사업*	일반회계 + 지방비	3,114,212	1,540,813	66.9	3,205,217	1,515,279	67.9	3,234,875	1,529,300	67.9
민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	2017이후: (유아교육)특별회계 2015~2016년: 지방비	-	3,945,511	0.0	-	4,042,010	0.0	3,940,881	-	100.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기금 (고용보험)	92,379	-	100.0	103,609	-	100.0	112,873	-	100.0
가정양육수당	일반회계 + 지방비	1,215,615	674,922	64.3	1,180,277	616,187	65.7	1,077,191	537,788	66.7
시간제 보육	일반회계 + 지방비	7,507	7,407	50.3	9,237	11,859	43.8	9,025	8,671	51.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일반회계 + 지방비	21,201		-	27,635		-	54,819		-
공동육아 나눔터	기금(양성평등발전) + 지방비	648	392	62.3	1,284	756	62.9	1,688	952	63.9
아이돌봄서비스	일반회계 + 지방비	76,544	42,860	64.1	82,816	46,787	63.9	87,899	48,723	64.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일반회계 + 지방비	196	96	67.1	5,004	5,460	47.8	11,047	12,444	47.0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추정 및 전용 예산 포함 금액임.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국비에 해당하며, 각 사업별 국비의 내용은 재원 출처를 참조. 매칭 비율은 {국비/(국비+지방비)}*100으로 산출함.

3) 유아교육특별회계는 2017년~2019년까지 한시 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액은 가정 양육 지원 사업 부분(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행사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만 합산한 금액임. 이 외에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기타(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등) 비용이 있음.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나) 공급의 충분성 및 지역별 균형

- 보육료 지원 및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사업군 내 상당수 사업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공급률이 투입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음.
-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42,517개소에서 점차 개소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40,238개소였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매 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개소 수 기준)은 7.8%임.
 -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개소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 외의 설립 유형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개소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는 상반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립 유치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III-2-7 연도별 및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2015년	2016년	2017년
어린이집	전 체	42,517	41,084	40,238
	국·공립 어린이집	2,629	2,859	3,15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14	1,402	1,392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834	804	771
	민간 어린이집	14,626	14,316	14,045
	가정 어린이집	22,074	20,598	19,656
	협동 어린이집	155	157	164
	직장 어린이집	785	948	1,053

		2015년	2016년	2017년
유치원	전 체	8,930	8,987	9,029
	국립 유치원	3	3	3
	공립 유치원	4,675	4,693	4,744
	사립 유치원	4,252	4,291	4,282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2)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

□ 지역별로는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 수도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이었음(부록 표 III-2-2 참조).

- 최근 유일하게 영유아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의 경우에는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역의 보육수요에 맞춰 공급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은 감소세, 유치원은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률은 총 정원 수를 0~6세 전체 아동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며, 2017년 기준 지역별로 부산이 어린이집 공급률(49.4%)이 가장 낮으나, 유치원 공급률은 58.4%로 낮지 않음 편임.

- 유아기 자녀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차별성도 있지만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에 전체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제주의 어린이집 공급률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 공급률 뿐 아니라 어린이집 공급률도 증가하였음.
- 앞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어드는 현상(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 정원도 감소 추세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공급률의 감소는 영유아의 급속한 감소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즉, 공립 유치원의 증가와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기관 보육서비스의 공급량 조절이 어린이집(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와 어린이집 공급률 등의 감소는 향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급자가 감소함을 내포하므로, 향후 이 부분의 예산에서 약간의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부모에 대한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에서 일부 여유가 발생한 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및 임금 인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등으로 인한 보육 및 유아교육비 단가(시설에 대한 지원금) 인상에 따라 영유아 기관 보육 부문 예산 전체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표 III-2-8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공급률

단위 : %

	어린이집			유치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6.2	56.0	57.7	34.2	41.9	43.2
서울특별시	50.1	50.9	53.1	43.4	52.6	56.7
부산광역시	48.0	47.8	49.4	45.4	58.0	58.4
대구광역시	54.3	52.9	54.2	51.8	59.7	61.8
인천광역시	50.0	50.5	52.6	54.9	55.0	55.5
광주광역시	65.0	65.7	69.1	51.3	62.2	64.7
대전광역시	55.8	55.8	57.9	54.4	57.3	59.6
울산광역시	49.9	49.6	51.5	42.3	55.1	56.8
세종특별자치시	52.1	51.7	52.7	42.6	45.2	47.5
경기도	55.1	54.3	55.6	34.7	40.2	41.6
강원도	66.4	66.4	68.1	38.9	42.6	43.1
충청북도	64.5	64.6	66.6	42.9	50.0	51.2
충청남도	64.0	64.3	65.7	30.4	32.5	35.6
전라북도	67.7	67.4	68.7	39.3	46.4	49.2
전라남도	64.5	65.5	67.9	42.4	49.8	50.8
경상북도	59.9	60.4	61.9	23.1	24.6	25.6
경상남도	59.2	58.5	60.0	48.4	48.3	50.6
제주	76.2	71.1	70.0	41.6	50.0	51.7

주: 1) 주민등록인구는 생활연령 기준으로 만나이 0-6세(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어린이집 공급률 = (정원/만0-6세 주민등록인구수) *100
 3) 유치원 공급률 = (정원/만0-6세 주민등록인구수) *100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각 년도 12월말 기준.
 2)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각 년도 4월말 기준.
 3) 행정안전부,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각년도 12월 말 기준. (2018. 8. 17 인출)

□ 시간 연장형 보육 서비스는 특수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 요구인데 수요 자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필요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제공기관의 충분성도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시간 연장형 보육의 충분성에 대한 논란은 절대적인 공급량 보다는 이용 가능성 측면이 더욱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위험이 있음.

- 단, 수요자가 소수에 불과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음.

- 반대로 시간 연장형 보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점형 형태로 운영될 경우, 거점형 어린이집으로의 접근성과 이동성 문제 등이 제기됨.

표 III-2-9 시간 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시간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어린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계	1,290	8,582	305	268	844	8,296	300	258	652	8,245	306	252

주: 1)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시간연장 보육,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을 모두 합산한 값임.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와 보육 반의 수는 해마다 증가.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2017년 기준 서울 지역이 72개소, 91개반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임.

- 영유아 수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지역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음.

- 2015년~2017년 사이에 시간제 제공 기관 수 및 반 수가 줄어든 지역은 한 군데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 양육지원 정책이 확장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III-2-10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단위 : 개소, 반

	시간제 보육 제공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제공기관수	반수	제공기관수	반수	제공기관수	반수
계	216	237	347	382	382	437
서울특별시	52	65	61	80	72	91
부산광역시	20	23	35	38	35	39
대구광역시	15	15	29	29	32	32
인천광역시	7	7	15	16	17	18
광주광역시	3	3	10	10	12	12
대전광역시	7	7	21	21	21	23
울산광역시	4	4	10	12	14	20
세종특별자치시	3	3	3	3	3	5
경기도	31	34	47	52	52	62
강원도	8	8	12	12	12	12
충청북도	5	5	13	13	13	14
충청남도	7	7	11	11	14	16
전라북도	14	15	17	18	17	18
전라남도	11	12	14	17	17	19
경상북도	11	11	18	19	17	20
경상남도	10	10	16	16	17	17
제주도	8	8	15	15	17	19

주: 2018년 1월~5월은 총 450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한편, 다양한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개소수와 부속사업장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지역별로는 개소 수는 2017년 기준 서울시가 26개소로 가장 많고, 부속 사업장은 경기도가 68개소로 가장 많음.

- 경기 지역의 경우 영유아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II-2-11 시도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수	부속사업장	개소수	부속사업장	개소수	부속사업장
계	86	108	91	121	94	132
서울특별시	26	35	26	37	26	42
부산광역시	4	1	5	1	6	1
대구광역시	1	0	2	1	2	1
인천광역시	6	9	6	9	6	10
광주광역시	1	0	1	0	1	0
대전광역시	1	0	1	0	1	0
울산광역시	3	1	4	1	5	1
세종특별자치시	1	0	1	0	1	0
경기도	24	56	25	65	25	68
강원도	2	0	2	0	2	0
충청북도	2	0	2	1	2	2
충청남도	2	2	2	2	2	2
전라북도	5	0	5	0	5	0
전라남도	1	0	1	0	1	0
경상북도	2	0	3	0	3	0
경상남도	4	4	4	4	4	5
제주도	1	0	1	0	2	0

주: 1) 부속 사업장은 장난감 도서관, 체험실 등의 육아지원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 사업장의 수를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수는 2015년 17,553명에서 2017년 20,878명으로 증가, 수탁처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인천 등이 2017년 기준 아이돌보미 수가 많은 지역이었음.

표 III-2-12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 및 수탁처 수

단위 : 명, 개소

	아이돌보미 수					
	2015년		2016년		2017년	
	돌보미 수	수탁처 수	돌보미 수	수탁처 수	돌보미 수	수탁처 수
계	17,553	214	19,377	216	20,878	222
서울특별시	2,615	25	2,854	25	2,978	25
부산광역시	1,392	11	1,570	11	1,750	12
대구광역시	791	8	871	8	994	8
인천광역시	868	9	1,003	9	1,031	9
광주광역시	586	2	678	4	802	5
대전광역시	705	2	506	2	533	2
울산광역시	729	1	753	1	858	5
세종특별자치시	116	1	175	1	202	1
경기도	3,283	31	3,761	31	4,209	31
강원도	852	18	878	18	917	18
충청북도	571	11	647	11	684	11
충청남도	765	15	830	15	898	15
전라북도	916	14	1,050	14	1,102	14
전라남도	883	21	932	21	896	21
경상북도	1,155	23	1,403	23	1,500	23
경상남도	1,115	20	1,218	20	1,253	20
제주	211	2	248	2	271	2

자료: 1)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기관 및 서비스 공급률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3년 무상보육의 전면적 실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공급되었다가,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어린이집 공급이 살짝 감소하는 양상을 띤.

-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특히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기관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음.
-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기관 공급률 자체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전반적으로 국공립 기관이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공

성 강화,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나치게 기관 보육에 의존하게 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로 판단됨.

-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 기존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음.

2)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보육료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아이행복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이때, 보육료 지원과 만3-5세 누리과정지원금의 경우에는 기관에 다니면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형태로 지원됨.
- 금융기관은 영유아 부모가 카드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결제하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자금 집행 및 정산처리를 통해 비용이 지원되는 체계를 갖춘.
- 기존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 등으로 각기 다른 카드로 운영 중이던 것을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여, 부모님이 이용 기관을 바꾸게 되더라도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됨.

□ 기관 이용 혹은 아이돌보미 등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카드 결제 형식의 바우처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부모들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체감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 즉, 부모 입장에서는 전면 무상 보육의 도입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생각되기보다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음.
-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급여 사용을 위해서는 현행 바우처 형태의 지원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
- 기관 미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 수급에 대한 체감이 높음.

- 단, 현금 지원인 가정 양육수당 지원액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액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본 연구 평가대상 사업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단위로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비교적 적절한 지원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이후 운영에 있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며 장시간 보육 등의 필요를 매꾸기 위해 직장이 추가적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로, 설치 이후 이러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부속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한 경우에는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특히,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자녀가 어린 나이로 영아 자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 문제가 보다 크게 작용함.
 - 가정 양육 지원의 경우 방문 서비스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넓은 지역에 영유아 가구가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도 낮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가정 양육 지원이 요구됨.
 - 본 연구의 평가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식 도서관 및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 가정 보육사 지원 사업 등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추진 방식의 적절성

- 보육료 지원 사업 등 현금성 사업의 대부분은 비용의 일부를 지방에서 감당하

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행의 주체는 중앙정부로 전국에 걸쳐 고르게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시간 연장형 보육 등은 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체로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는데 이용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운영의 실익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제 시간 연장형 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임.
- 제도 보완 측면에서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나, 영유아기 아이들의 장시간 기관 보육의 문제 및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과 이용도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임.

□ 결과적으로 장시간의 기관 보육을 대체하거나 보육 사각지대(특히 시간적 측면에서)를 해소하기 위한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는 지역별로 가구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보다 세분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결국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단위로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성이 높으나, 문제는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다보니 편차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 일례로 대표적인 가정 양육 지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국비 사업, 지방비 사업 수주 현황이 달라, 각 센터별로 사업 내용도 상이하고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행과 같은 추진 체계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다만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서비스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4) 모니터링의 체계성

□ 모든 사업이 사업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되는 금액이므로, 이러한 보육료의 사용 등에 관해 재무 회계 감사 등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질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센터별 사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문제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2017년 11월에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 시행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일부 하였으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pi.or.kr/site/hp3/contents/business_n/business01_1.jsp, 2018. 11. 20 인출), 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과 현장에서 평가인증으로 인한 고충 토로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수는 32,630개소로 81.1%에 해당함(공공데이터포털⁹⁾, <https://www.data.go.kr/dataset/15001466/fileData.do>, 2018. 11. 20 인출).

- 단, 평가 인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향후에는 모니터링 강화가 이뤄질 예정임.

- 또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지원금이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의 체계는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¹⁰⁾, 이에 대한 보육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국민청원 게

9)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데이터 URL :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425291&fileDetailSn=1)를 내려받아 분석한 결과임.

10) 현재는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시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4303>, 2018. 11. 20 인출)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다. 산출 단계 평가

□ 산출 단계 지표는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 현황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1) 수급자 현황

□ 각 개별 사업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13과 같음.

-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수급자는 2015년 85만 7,508명이었으며 2016년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7년 85만명 수준을 회복.
- 만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은 2015년 130만 1,891명에서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지만, 영유아 보육 사업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사업임.
- 가정양육수당 수혜자는 2015년 100만 9,346명에서 수급자가 매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정 양육수당 수혜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업이 2015년 이후 수혜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대상자 수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게 잡힌 이유는 센터 이용 가구를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발성, 단기간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으므로 부득이 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 2015년 3개월만 지원기간에 속하였으므로 지원자 수가 6,786명으로 적고, 2016년 31,298명, 2017년 56,646명으로 증가함.
 - 앞서 예산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

업은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이 낮은 사업으로 수급률이 낮은 사업에 속함.

- 이처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해당자가 적기 때문으로, 수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최윤경 외(2016: 93-99)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요건(모 부재 가구 대상¹¹⁾)의 완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홍보 강화, 바우처 사용처(구매처) 확대,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표 III-2-13 영유아 보육 사업군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가구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보육료 지원 사업	857,508	837,755	853,625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1,301,891	1,297,341	1,281,45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44,765	52,302	58,454
가정양육수당	1,009,346	933,153	836,290
시간제 보육	7,297	13,377	18,115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351,522	5,357,314	5,905,652
공동육아 나눔터	192,917	318,001	401,334
아이돌봄서비스	57,687	61,221	63,54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6,786	31,298	56,646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3)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단위가 가구이며, 다른 사업은 명으로 산출.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사업의 성격이 보편 지원 혹은 불특정 다수로 하지 않고 특정되어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이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자 수가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개별 사업별 수급 현황은 <부록 표 III-2-5>부터 <부록 표 III-2-10>을 참조하여 살펴볼 수 있음.

11) 조제분유의 경우에 해당함.

□ 만0-2세 보육료 지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자도 많아짐.

- 이는 더 어린 영아기에는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 양육을 보다 선호하다가 아이가 커 갈수록 점차 기관 보육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임.
- 교육과정 및 인력배치 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여 설계된 다문화 보육료 수혜자는 2015년 32,593명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42,009명으로 증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매해 1만1천명에서 1만2천명 사이의 수준으로 큰 증감을 보이지 않음.

□ 가정 양육 수당 수급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모든 월령에서 감소세가 포착됨.

-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을 살펴보면, 11개월이하 영아의 경우 90%이상의 높은 수혜율을 보이고, 23개월이하는 70%전후의 수혜율을 보임.
 - 11개월이하 월령의 영아들의 가정 양육수당 수혜율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12~23개월과 24~35개월이하의 영아의 수혜율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임.
 - 이는 영아기 자녀의 경우 가정 양육이 기관 양육에 비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함으로 의미하며, 더 어린 나이부터 기관 보육이 시작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시간제 보육 이용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등의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시간제 보육 이용자는 2015년 연인원 기준 1만6,490명에서 2017년 43,400명까지 크게 증가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 양육 지원을 받는 이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이용자 수가 과다 계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가정 양육서비스 중에서 프로그램별로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나 놀이실(체험실) 이용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

지함. 이 외에도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상담 등도 모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이용자 수의 90%이상이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
- 이는 기관 보육으로 충족되지 않은 보육시간을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재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되어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

2) 지원 수준의 충분성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개별 사업별 지원 금액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 이와 관련된 부록 표는 <부록 표 III-2-11>부터 <부록 표 III-2-15>를 참조할 것.
 - 다만,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금액 사이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먼저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금도 많음.
 - 이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인력의 배치가 더 많아야 하는 점과 보육 필요성이 더 높은 점 등에 기인함.
-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 적용 및 필요경비 상한 등으로 인해 수익자 부담금 부과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등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있음.
 - 어린이집은 부모에게서 받는 보육료(바우처)와 기본 보육료 등 기관 지원금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무상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연구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바우처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등은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

본 보육료 등 다른 비용 지원 체계와 맞물려 무상 보육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비용 지원 체계상 보육료 이외의 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 상한¹²⁾ 이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는 모두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현행 보육료 지원금은 다른 비용 지원 체계 등과 맞물려 무상 보육을 실시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단, 어린이집이 보육료 상한제 및 필요경비 상한 등으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비 총액 내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심각한 어려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의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즉,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서도 부족한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보육료 지원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영아기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2015년 이후 조금씩 증액되고 있으나, 유아기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5년 이후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22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인상 가능성이 밝지는 않은 상태임.

□ 다문화 보육료는 일반아동과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장애아의 경우에는 일반아동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연령 증가에 따른 보육료 감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음.

-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교사대 아동 인원 등의 기준 준수 등을 위해 보육료 지급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으로, 장애아 보육료에 대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에 준하여 책정됨.

12) 2017년 기준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46), 표 II-2-4 및 해당 자료의 출처를 참조하기 바람.

- 한편, 시간 연장형 보육료의 경우 야간 보육료는 일반 보육료와 동일하며, 24시 보육료는 보육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보육료에 비해 많음.
 - 이러한 운영시간을 벗어난 추가적인 보육에 대해서도 부모 지원금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부모 지원금의 수준만으로 적절성을 논의하기 어려움.
 -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 등의 이용자가 적고 효율성이 낮아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인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은 2018년 기준 11개월 이하 월령 자녀의 경우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금과 비교해볼 때 동일 연령의 경우에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이 20만원가량 적은 상황임.
 - 또한 가정 양육수당은 2015년 지원 수준이 결정된 이후 인상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의 지원 수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이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반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은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이 외에 특수한 상황으로 고려되는 경우로 놓어춘 양육수당, 장애 아동 양육수당 등은 일반적인 보육료에 비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이며, 특수 보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간제 보육 지원금과 아이돌봄 지원 단가 등은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인지 종일제이지,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 지원금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관 서비스 이용에 비해 비교적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요컨대, 현행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적정 수준

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수준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도 가장 포괄적임.

- 하지만, 부모들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지불하는 비용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무상 보육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87)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시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6만 9천원이었으며, 유치원 이용비용은 19만 6천원(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93)이었음.

- 이와 같이 현장과 부모,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 체계는 단순히 부모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보육료 지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간단히 결론짓기 어려움.

- 본 연구가 수행 중인 2018년도에 보육료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와 표준보육 비용 산정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와 적정 수준의 보육비용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가정 양육 수당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기관 이용이 절실하지 않은 영아들의 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가정 양육 수당 지원금의 증액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와 함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은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부 이용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정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인상 요구가 높음.

□ 비용 지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단 회의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가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반적으로 비용 지원보다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의 확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부 전문가는 경우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해 약간의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현행 비용 지원이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음.

- 또한 비용 지원이든 서비스 지원이든 기관 보육의 확대보다는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확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라. 성과 단계 평가

- 성과 단계 평가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등임.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개별 사업들은 주로 성과 지표로 이용자 만족도를 지표로 삼고 있으며, 지원 아동의 수 혹은 서비스 제공 기관 수 등을 정책 성과 지표로 삼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목표 수혜인원을 2018년부터 성과 지표로 채택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량적 지표인 이용 가구 수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성적 지표인 서비스 만족도는 목표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는 지원 인원을 2017년에는 지원 신청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 2016년에는 목표 성과에 다소 미달된 반면, 2017년 성과 목표를 달성.

표 III-2-14 사업별 성과 관리 지표 및 달성 여부

사업명	성과지표	달성 여부
보육료 지원 사업*	만족도	달성 (2015~2017)
	시간연장보육 제공 기관수	달성 (2015~2017)
만3-5세누리과정지원사업	만족도	달성 (2015~2017)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개소수	달성 (2015~2017)
	만족도	미달 (2016~2017)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미달 (2015~2017)
	0~2세 양육수당 지원률(2017 신설)	달성 (2017)
시간제 보육	1개반당 월평균 이용 건수	2018년 신규지표
	연간 아동 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부모 교육 시행 횟수	달성 (2016~2017)
공동육아 나눔터	목표 수혜 인원	2018년 신규지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수	달성 (2015~2017)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미달 (2015)

사업명	성과지표	달성 여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인원 (2016년 지표)	미달(2016)
	지원 신청 증가율 (2017년 지표)	달성(2017)

주: 1)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다문화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개 사업을 의미함.
 2) 성과지표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성과 지표를 의미하며, 달성 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의 성과 달성율을 연구진이 확인하여 작성함. 괄호 안은 해당하는 연도를 표기함.
 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과 지표와 무관하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음.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영유아 사업군의 다수 사업이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는 갖추고 있음.

-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의 경우 부정 수급 등에 관한 점검 절차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거나 성과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마. 영향 단계 평가

□ 제도마다 정책 목표가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보육지원 정책의 목표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양육수당 등 비용 지원 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가계 부담의 완화라고 볼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3).
-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동등한 교육·보육기회 보장 등이 주로 언급되는 정책 목표라 할 수 있음(이진화·박진아·박지원, 2015: 10~11).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등에 나타난 출산율 제고 효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가계부담 완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나, 정책의 효과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간접적 보조 지표로서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함.

- 2012년¹³⁾ 소득에 무관한 무상 보육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제도 도입 초기인 2012년도에는 일부 보육·교육비용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영아의 기관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가계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최효미 외, 2016: 80).
-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인 김은정·이혜숙(2016)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도에는 영아기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시설 이용 및 가계 부담을 일부 완화한 효과가 있었으나, 유아기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에 따르면, 영유아 아동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무상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아 현행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32.6%, 찬성 53.1%에 달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31.9%, 찬성 51.8%에 달함 (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155~158).
- 한편,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5명(통계청, 인구동향조사¹⁴⁾)으로 2008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나 1.30명이하의 초저출산은 지속되고 있음.
 -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무상 보육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던 2010~2012년에는 출산율이 살짝 반등하여, 2012년에는 1.30명까지 상승하긴 하였으나, 이후 바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이와 같이 짧은 기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정책이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보육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지원 정책은 크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3) 0-2세와 5세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영유아기 전 연령에 적용된 것은 2013년임.

14) 통계청, KOSIS, 합계 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_A21&checkFlag=N

- 최성은(2011), 우석진(2014), 김은정·이혜숙(2016) 등 다수의 연구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음.
-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의 확장(전면 무상 보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이상의 정책 목표 이외에도 과도한 기관 이용자의 확대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저하(김사현·주은선·홍경준, 2013)와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이 더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민연경·장한나, 2015: 111)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은데다(김은설 외, 2016), 일부 연구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지향점이 된다는 점(최성은, 2011)을 감안할 때 정책의 틀 자체를 크게 변경시키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사료됨.
- 현행과 같은 지원 체계가 없었다면 지금보다도 출산율이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3 종합 및 시사점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군의 대상자 포괄성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음.
- 무상 보육 도입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영유아기 자녀 전체에 대한 지원이 큰 축이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분야 전체에서 가장 지원 대상의 포괄 범위가 넓음.
- 다만, 이로 인해 지원 대상자 중 보육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집단-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

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높음.

- 즉, 보편 지원의 넓은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 보육 대상자의 보육 서비스 이용에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입소 우선순위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소 1순위 대기자가 워낙에 많아 취약보육 대상자가 기관 선택 시 원하는 기관(예: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또한, 맞벌이 가구 등의 경우 외벌이 가구의 영유아(맞춤반)가 많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¹⁵⁾.
- 무엇보다 기관 이용비용이 저렴하고 운영시간 등이 긴 국공립 기관의 공급률이 낮기 때문에, 취약 보육 대상자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한편, 기관 보육 지원 중심의 현행 지원 체계에서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화함으로써,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현금성 보편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사업간 중복성은 크지 않음.

- 오히려 장시간의 돌봄을 요하는 영유아가 자녀 돌봄에 있어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 간에는 중복 수혜를 허용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장시간 기관 보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5)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7:30~19:30으로 12시간이지만, 늦게 남아 있는 원아가 적을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가구의 희망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다수의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 시간이 외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시간에 비해 약간 길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146)은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4시간, 유치원은 7.7시간이라고 보고함.

표 III-3-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영유아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포괄성 자체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음. - 무상 보육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가정 양육보다는 기관 보육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취약 보육 대상자 중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 해소, 다자녀,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강화 요구가 있음.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보편지원 사업이 다수로, 모수는 영유아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수보육(장애, 다문화, 시간 연장형 등)의 경우 별도의 모수 추정이 지원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은 아니지만, 수요 예측 및 예산 책정 등 정책적 필요가 있으므로, 세부 집단별로 모수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축은 필요함.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적 혜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단, 일부 가정 양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수당과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부족한 지원(시간대 혹은 취약계층)부분을 보충하는 형태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집행 단계 지표 중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총계 차원의 예산은 해당 분야의 예산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기관 보육서비스의 공급도 적정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문제는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속한 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지원금, 가정 양육수당과 같은 무상 보육과 관련된 현금성 지원 사업에 쏠려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 취약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지역적으로 가정 양육 서비스의 지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기관 보육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편차가 없으나, 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역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즉,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

고 자원 배분이 고르게 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임.

- 이는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사업인 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부모대상 바우처 지원)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다 합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본 연구의 연구 범위를 넘어섬.
- 이는 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등을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해당 연구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지역별로 재정 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 사업 특히 현금성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의 부담이 언급되고는 함.
-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 조정, 지자체 특수 시책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지원 방식은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은 통합된 아이행복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은 기관에 지출되는 비용을 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이라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경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용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대규모 지원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한 방식이라 사료됨.
- 가정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나 신청과 지원은 모두 전산상으로 관리되어 중복 수혜 등을 방지하고 있음.
- 다만, 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정 양육수당의 사용처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정 양육수당의 취지가 가정에서 양육할 때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이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현행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표 III-3-2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집 행	투입의 충분성	- 예산의 경우 영유아 모두에 대한 지원으로 영유아 수만큼 예산이 책정되고는 있음. - 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 현금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이 다양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절대적인 공급량만으로 투입의 충분성을 평가할 수 없으나, 큰 틀에서 기관은 충분한 편, 가정 양육지원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원 방식의 적절성	- 급여 사업은 주로 바우처 형태로 수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원 방식이 구축 완료되었음. - 서비스 지원의 경우 인프라 및 인력을 지원하거나, 영유아 가구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는 급여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므로 현행과 같은 서비스 지원 형태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현금성 지원의 경우 보편지원으로 지역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음. - 문제는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공급률만으로 전국적으로 동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기관 보육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의 정비 필요하나, 본 연구의 평가대상 사업인 부모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있어서의 차등은 없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가정 양육 지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울 경기 지역 밀집),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은 필요해 보임.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사업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과 비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함. -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매칭으로 보육 예산의 고갈이 심해, 가정 양육지원 등 다른 지원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함. -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과 예산 확보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형태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모니터링의 체계성	- 모니터링 체계는 모든 사업이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모든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 중 하나를 수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수급율이 높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보육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수혜율도 기관 보육에 치중된 양상을 띤.
- 기관 보육에 치중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액이 기관 보육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결과적으로 지원금 수준이 높은 기관 보육으로의 쏠림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기관 보육으로의 치중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부작용이 제기됨.
 - 맞벌이 가구 혹은 취약 계층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우선권 확보와 가정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때, 전반적인 지원의 확대는 서비스의 추가 지원 등이 적절하고 비용 지원을 늘리는 형태의 제도 개선은 정책적 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특히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수준이 충분치 못하거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전반적으로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되,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표 III-3-3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성과, 영향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산 출	수급자 비율	- 현금성 사업의 경우 영유아 모두에 대한 지원으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은 수급률이 높지 않으나,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지원이 기관 보육에 집중되면서 이용률도 기관 보육에 치중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 - 향후 가정양육 지원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구 충족률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 보육료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있음. - 상대적으로 기관 보육에 비해 가정 양육수당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 수준은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 - 비용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 형태로 지원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여타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 목표로 만족도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만족도보다는 좀 더 객관적 지표(서비스 충족률 등)의 설정이 필요함.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모든 사업이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영 향	간접적 파급 효과	- 영유아 보육 사업은 지원 대비 정책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우가 거의 없음. - 다만, 이와 같은 지원이 없었다면 가계 부담이 지금보다 컸을 것이라는 점, 출산율 등의 저하가 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은 감안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객관적 효과성이 낮는데 반해, 무상 보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자체는 매우 높은 상황임.

□ 결론적으로 현행 보육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자에게 집중된 비용 지원에서 가정 양육으로 유도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단, 가정 양육 서비스의 지원은 전반적인 정책의 확장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 특히 저비용으로 장시간 보육을 담당해야하는 어린이집의 비용지원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며, 국가지원시간 등의 설정을 통한 정

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¹⁶⁾.

- 다만, 기존의 맞춤형과 종일반 지원 제도는 이용 시간에 따라 국가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현장과 부모의 강한 반대를 불러왔으며, 제도가 시행 중인 현재도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등과 관련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논의, 2018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등은 해당 부처에 이미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이므로, 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성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16) 어린이집 비용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벗어남. 다만, 어린이집은 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있어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용 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현행 어린이집의 비용 지원 체계가 유치원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189-190), 표 IV-3-2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IV

아동 돌봄 사업군 사회보장지원현황 및 평가

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3. 부문 종합 평가

IV. 아동 돌봄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가.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 아동 돌봄 사업군은 각종 돌봄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군을 포함함.
 - 아동 돌봄 사업군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가족 등에 주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사업이 주로 해당됨.
 - 대상별 구분에서 보편이 아닌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선별적 지원 서비스로 분류가 가능함.
- 아동 돌봄 사업군 추진 현황은 급여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포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재분류를 한 후 파악함.
 - 현물(서비스 지원)과 현금, 바우처로 급여 및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소득 계층별, 장애유무별, 보편성 유무로 대상을 구분하여 서비스 현황을 점검함.
- 우선 급여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뉨.
 - 개인에게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은 초등돌봄학교(방과후 돌봄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개 사업임.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사업은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역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개인 대상 서비스 지원으로 분류됨.

-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업은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2개 사업임.

표 IV-1-1 아동 돌봄 사업 및 평가 대상

사업군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평가대상 여부	비고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1~2학년생 중심	서비스	○	선별지원/돌봄공백 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 3~6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서비스	○	선별지원/돌봄공백 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	선별지원/취약계층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	선별지원/취약계층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한 부모 가정 자녀 - 차상위 계층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단,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담임추천)	바우처	○	선별지원/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서비스	○	선별지원/취약계층지원 및 돌봄사각지대 지원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cont/info/info030400.tiles?bigcate=013&menuFile=info0304_00 (2018. 5. 5 인출).

-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강신욱 외(2015)에서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 주된 대상이 영유아 자녀이고,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군에 포괄하여 평가를 진행함.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사업도 강신욱 외(2015)에서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이었으나 사업의 주된 대상이 장애아이며, 사업목적이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에 장애아동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에 포괄하여 평가를 진행함.
- 따라서 아동돌봄사업군의 평가 대상 사업(총 6개)이 대상임. 단,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은 현재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평가는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함. 포괄 범위와 지원 방식 등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표 IV-1-2>와 같음.
- 아동 돌봄 사업군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특징을 가짐.
 - 돌봄의 특성상 소득에 따른 선별 뿐 아니라 맞벌이 여부에 대한 선별도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짐.
 - 한편, 대상별로 돌봄의 목적이나 방식이 상이하나 방과 후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 이렇듯 아동 돌봄 사업 평가 대상에 속하는 5개 사업은 지원 방식과 지원 목적 등이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나, 아동 돌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함
- 특히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되고 사업 내용도 유사하여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평가함.

■ 표 IV-1-2 ■ 아동 돌봄 평가 대상 사업의 지원 방식 구분

지원 대상 포괄범위	바우처	현금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선별적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주: 1) 보편과 선별은 소득계층에 따른 구분 뿐 아니라 맞벌이 여부와도 관련.

2)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는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단, 사업명이 분리되어 운영 중이므로 이를 병기하였음.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sc.go.kr/cont/info/info030400.tiles?bigcate=013&menuFile=nfo030400> (2018.5.5. 인출).

나.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지표

□ 먼저 아동 돌봄 사업군의 설계 단계 평가 지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사업간 상충 보완관계임.

- 설계 단계의 지표들은 주로 문헌검토,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통해 확인함.
-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측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아동 수를 측정함.
- 아동 돌봄 사업군은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가족 등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선별지원임. 따라서 해당 사업군의 모든 사업을 대상 연령 모 집단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는 담당 교사 추천으로 진행하거나 별도의 신청절차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군 모집단을 일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음.
-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는 신청 대상자 대 수혜 대상자 비율로 측정하고자 함.

□ 집행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함.

- 투입된 사업 예산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 사업 추진 실적 자료의 취합하여 분석함.
- 투입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서비스 공급률을 검토함.
- 전체 신청 아동 수 대비 각 서비스별 기관 및 인력 공급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지역별 서비스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함. 이는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지역별 예산, 이용자 등의 배분의 적절성을 분석함.
- 아동 돌봄 사업별 담당 부처와 기관이 상이하므로 부처별 혹은 담당 하위 기관별 현황 자료 수합이 필요함. 또한 예산 현황 등은 개별 사업 부처의 사업 추진 실적 자료의 협조가 요구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급여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사업 추진 실적으로 파악.

- 급여 충분성은 기존 평가지표에서는 각 사업별 탈락자/대기자수로 평가하였음. 사업 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 사업별 탈락자/대기자수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해당 지표는 대상자에게 인력, 시설, 급여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와 향후 수요를 충분히 포괄할지에 대해 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함.
- 급여 충분성은 사업 대상자(모수) 규모 대비 인력, 시설, 급여 등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 추진실적, 문헌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함. 또한 부처별 사업 추진실적 내 향후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 성과 단계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2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확인.
- 아동 돌봄 사업군은 서비스 대상자의 변화 파악이 어렵고 계량화하기 어려우므로 성과 단계 지표는 보조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 정책의 간접적 파급 효과에 해당하는 영향 단계에서는 맞벌이 비율, 여성 일자리 창출 비율을 살펴봄.
- 단, 해당 지표들은 아동 돌봄 사업으로 인한 정책 효과와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표 IV-1-3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단 계	지표명	측정 방법	활용되는 자료 혹은 문헌	자료 관리 부처 및 기관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사업별 지원 아동수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 부처
		아동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사업별 지원 대상자 대비 사업 대상 범위 아동수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 부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사업내용,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중복여부 및 중복률 담당자 평가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집행	투입의 충분성	사업 예산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문헌검토	-

단 계	지표명	측정 방법	활용되는 자료 혹은 문헌	자료 관리 부처 및 기관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자원투입의 지역적 적절성 - 사업별 지역적 분포	문헌 검토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사업 내용 확인 (정성평가)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문헌검토	-
	추진방식의 적절성	전달체계 검토 (정성평가)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문헌 검토	-
	모니터링의 체계성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현황 확인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인력의 적정성	자격요건, 사업별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정성평가)	사업추진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산 출	수급자 비율	서비스 이용 실태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 사업별 인력, 예산, 급여 제공의 충분 성 - 향후 수요 충족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확보 여부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정성평가)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정성평가)	사업 추진 실적	개별 사업별 부처
영 향	간접적 파급 효과	맞벌이 비율 혹은 여성 일자리 창출 비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자료: 개별 사업별로 취합해야하는 '사업 추진 실적' 자료는 개별 사업별 소관 부처를 통해 수집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대상 부처임.

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가. 설계 관련 지표 평가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및 모수

- 아동돌봄사업군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단, 해당 사업군은 서비스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는 특징을 가짐.
 - 또한, 소득기준 뿐 아니라 맞벌이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대상자 포괄성 파악에 있어 소득 기준, 신청자 수, 맞벌이 가정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 필요함.
 - 즉 소득 계층에 따른 아동 비율 구분, 맞벌이 가정,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에 속한 아동 비율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수를 파악해야 함.
- 대상자 선정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기준을 활용하며 소득 기준 외에 가족 형태와 관련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여부를 고려함.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이외에 차상위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 저소득층을 포괄함.
 - 맞벌이 유무를 포함하는 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라 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무가 결정됨.
 - 맞벌이인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에 해당함.
 - 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취약가정의 경우 소득기준(‘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지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표 IV-2-1 사업별 지원 대상자 연령 구분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7세			○			
8세(초1)	○		○	○	○	
9세	○		○	○	○	
10세(초3)	○	○	○	○	○	
11세		○	○	○	○	○
12세		○	○	○	○	○
13세		○	○	○	○	○
14세(중1)			○		○	○
15세			○		○	○
16세(중3)			○		○	○
17세			○		○	
18세			○		○	
19세(고3)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대상자 선정시 연령 기준에 따른 포괄성은 다음과 같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 가능하여 연령 기준에 의할 때 가장 포괄 범위가 넓음.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경우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1-2년생,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초, 중, 고교생을 포괄함.

□ 한편,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논외로 하여 사업군 대상자 설정의 모수를 파악해보면, 아동돌봄사업군의 경우 영유아를 제외한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모수로 보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로 연령은 각각 상이함.

□ 제도의 설계는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므로 모수 추정은 각 사업별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아동돌봄사업의 경우 아동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가구별 소득기준, 맞벌

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자 모수 추정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을 통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으로 추출 가능.
 - 하지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우선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을 따로 파악하여야 함.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차상위 이하 만 12세 이하 아동과 장애아동인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를 통해 모수 추정이 가능하여야 함.
-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청 인구로 모수 추정을 함.
- 결과적으로 아동돌봄사업군에 속하는 6개 사업은 잠재적으로 해당 연령의 아동 인구를 통해 대상자 추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추정만으로는 실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맞벌이, 차상위계층, 가족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정함이 원칙적으로 옳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대상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계획 등은 오로지 전년도에 예산 계획에 의존할 밖에 없기에 사업군 관리에 큰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향후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조사, 연구 등이 요구됨.

2)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 포괄성과 표적화의 구분
 - 포괄성이 전체 아동 중 사업군의 대상자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 보여주는 지표라면, 표적화 정도는 사업군의 대상자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의 표적화 특징

- 아동돌봄사업군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 수와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해야 실수요를 기준으로 표적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모든 사업이 신청자수 내지는 대기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
- 따라서 향후 표적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대상자 확인과 함께 서비스 신청자 수, 실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IV-2-2 사업별 서비스 신청자수와 이용자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018	신청자수	-	-	-	626,211	10,463
	이용자수	261,287	110,283	2,603	-	10,463
2017	신청자수	-	-	-	688,923	9,773
	이용자수	245,303	108,578	2,631	505,594	9,773
2016	신청자수	-	-	-	724,062	9,745
	이용자수	238,480	106,668	3,075	576,395	9,745
2015	신청자수	-	-	-	734,552	9,490
	이용자수	239,798	109,661	3,492	640,245	9,490

주: 1)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매년 4.30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매년 말('18년은 10월말) 기준의 이용자 수 임. 나머지 사업은 2018년 8.20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 신청건수는 자원자수와 대기자수를 합한 규모임.
 3)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7년 기준 일반아동 10,961명, 수급자 15,564명, 차상위 12,675명, 다문화 7,507명, 한부모 6,215명, 장애인 1,324명임(해당 수치는 이용자 중 해당 계층 수임).
 4) 방과후 돌봄 서비스(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에 통합되어 있음.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3) 사업군 내 사업간 상충 및 보완 관계

□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교할 때 대상자 중첩이 상당부분 발생함,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중복 이용이 가능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보육료 등에 활용이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상자 중첩이 발생함.
- 개인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지원 금액을 다른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
 - 이는 사업 내에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중첩이 되는 결과 과잉지원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 하지만 이러한 대상자 중첩이 시간대별 이용 요구도, 프로그램의 개별적 운영에 따른 수요자 선택에 따라 분산될 수 있으므로 동일 대상자가 다른 목적으로 복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즉, 지원액 과다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동돌봄사업군은 바우처를 통해 결국 서비스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급여가 전달되는 구조이기에 대상이 중복된다 해도 서비스 이용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짐.
 -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해도 서비스 신청 비율과 환경을 면밀히 살펴 보아 과다한 지원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중복 내지 상충은 제도의 존립을 모호하게 만들 여지가 있음.
 - 소득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맞벌이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가족 형태에 따른 대상 선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기능들이 상충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음.
 - 사업군 내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은 방과후보육료 지원에서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함.
 - 지원액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자 중첩이 결국 사업간 중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학교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크게 구분한다면 학교내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간의 중복사용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왜냐하면 학교내 돌봄이 저녁까지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의 아동학대로 이

어질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소수아동이 저녁까지 체류하면 안전이나 급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임. 급식을 포함한 저녁돌봄이 필요하면 학교내 돌봄이 마무리된 후 지역사회돌봄으로 이동하여 돌봄이 연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지역사회돌봄들을 중복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지역사회돌봄도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수요자(고객)의 각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 단계 평가

1) 투입의 충분성 및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집행 단계의 평가지표로 투입과 관련된 지표 중 투입의 충분성,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은 지표 특성상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가) 투입의 충분성

- 사업별 예·결산 현황은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음. 방과후 보육료는 예, 결산 구분 없이 매년 12월말 기준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 전체 지원되는 규모액으로 보면 방과후 보육료 금액이 가장 큰 사업임. 하지만 2015년 이후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규모액은 조금씩 감소 추세임.
 - 본 보고서에 제시된 방과후 보육료 지원 규모액은 각 지방 교육청의 사업추진 실적에 기인하여 산출되었는데, 전체 보육료 지원 사업 중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 이는 전체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중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동 지원 보육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초등학교령기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금액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예산이 과대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따라서, 방과후 보육료를 제외하고 2018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비슷한 수준임.
 - 세 개의 사업모두 꾸준히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규모 증가가 가장 큰 편임.
 - 예산 대비 결산 비율도 거의 100%에 가까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은 90%이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아동돌봄사업군의 경우 현금 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사업 지원규모가 가장 큼.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주 대상자가 취약계층 초등생 저학년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IV-2-3 아동 돌봄 사업군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A)	결산 (B)	B/A* 100	예산 (A)	결산 (B)	B/A* 100	예산 (A)	결산 (B)	B/A* 100	예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 서비스)	217,055	217,055	100.0	251,906	251,906	100.0	315,980	315,980	100.0	322,934
지역아동센터 지원	285,850	285,864	100.0	296,387	296,387	100.0	305,423	305,238	99.9	328,32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116,891	116,561	99.7	347,548	347,345	99.9	319,353	319,146	99.9	337,96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7,517	35,167	93.7	38,015	38,015	100.0	37,894	37,722	99.8	40,024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아동돌봄군 사업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방과후 보육료 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증감이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17년 약간 감소율을 보임.
- 방과후 보육료 예산 감소는 지원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임.

■ 표 IV-2-4 ■ 아동 돌봄 사업군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251,906	16.1	315,980	25.4	322,934	2.2
지역아동센터지원	296,387	3.7	305,423	3.0	328,323	7.5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347,548	197.3	319,353	-8.1	337,968	5.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8,015	1.3	37,894	0.3	40,024	5.9

주: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전년도 예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표 IV-2-5 ■ 방과후 보육료 지원규모액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규모액	전년 대비 증감률	지원규모액	전년 대비 증감률	지원규모액	전년 대비 증감률
계	3,144,168	-	2,752,438	-12.5	2,265,246	-17.7

주: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년도 지원규모액-전년도 지원규모액)/전년도 지원규모액]*100으로 산출함.
자료: 방과후 보육료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아동돌봄군 사업 재원 출처 및 매칭 방식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 일반예산(국비)과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짐.

-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었음.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국비 비율이 적은 편이며, 이는 지방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내 사업 성격이 강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12년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

표 IV-2-6 아동 돌봄 사업군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자원 출처 및 매칭 방식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	일반예산+ 지방비	775	216,280	0.36	832	251,074	0.33	797	315,183	0.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예산+ 지방비	137,716	148,148	47.9	142,764	153,623	47.9	146,999	158,239	47.9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일반예산+ 지방비	1,461	115,100	1.2	1,229	346,116	0.3	849	318,297	0.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육기금+ 지방비	17,181	17,986	48.9	18,508	19,507	48.7	18,390	19,332	48.8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방비	- 서울: 교육청(20%), 시·군·구(80%) - 지방: 교육청(50%), 시·군·구(50%) ※ 초·중·등 사업 이관 이행협약(11. 10, 19)에 따라 '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로 처리함.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함.								

주: 일반예산, 기금은 국비에 해당하며 각 사업별 국비 내용은 자원 출처를 참조. 매칭 비율은 [국비/(국비+지방비)]*100으로 산출함.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방과후보육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 교육부 방과후 보육료 안내 참조.

- 아동돌봄사업군 대상자 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산정하였음. 단, 각 사업은 선별지원으로 직접 혹은 학교 내 추천으로 대상자가 선발됨. 아동돌봄 사업군 대상자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적절하나 사업별로 신청자 수를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에서 부처 담당자가 대상자 모

수로 선정한 기준을 사용함. 초등돌봄교실은 서비스 이용자가 오후돌봄교실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 인원수를 전체 대상으로 산정함.

- 아동돌봄 사업군 대상자 규모 대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100%이며, 전체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중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산정됨. 이는 방과후 학교 서비스 요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짐.
-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26.7%가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초등돌봄의 공급량에 맞추어진 수요량으로 잠재적 수요는 더 존재할 수도 있음.
-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2.5%)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0.4%), 방과후 보육료지원 사업(0.2%)은 이용자 비율이 낮은 편임. 단, 해당 수치는 전체 대상자 산정에서 소득수준별로 선별된 자료가 아닌 사업 대상자 연령 인원을 기준으로 모수를 추정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해석이 필요함.
- 즉, 세 개 사업의 이용률은 대상자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는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정확한 모수를 추정한 상태에서 공급량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표 IV-2-7 아동 돌봄 사업군 대상자 규모 및 서비스 이용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상자(A)				서비스 이용자				비율(B/A)
	'15	'16	'17	계(A)	'15	'16	'17	계(B)	
초등돌봄교실 (방과후돌봄)	931,773	887,325	891,642	2,710,740	239,798	238,480	245,303	723,581	26.7
지역아동센터	4,513,664	4,322,672	4,236,650	13,072,986	109,661	106,668	108,578	324,907	2.5
방과후보육료	1,670,000	1,769,000	1,759,000	5,198,000	3,492	3,075	2,631	9,198	0.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735,000	724,000	689,000	2,148,000	734,552	724,062	688,923	2,147,537	1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472,189	2,770,634	2,711,622	7,954,445	9,490	9,745	9,773	29,008	0.4

- 주: 1) 각 사업별 전체 대상자는 서비스 신청자가 아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에 모수로 선정한 대상자 규모임. 단, 초등돌봄교실은 서비스 이용자 수치가 오후돌봄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전체 대상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한정함.
- 2)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이용자는 오후돌봄(초등학교 1-2학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임. 따라서 전체 대상자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산정함.
- 3) 지역아동센터지원은 2018년 6월 기준
- 4)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수이며,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수는 아님.
- 5)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원은 실인원임. 전체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현황 중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기준임.
- 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18년 4월 기준임. 각 서비스 이용자수는 실인원임.
- 자료: 1)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5-'17년) 유초등현황 중 학년별 인원수 참조(<http://kess.kedi.re.kr>)(인출일: 2018년 7월 30일).

나)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각 사업별로 지역별 자원 투입 배분을 16개 시도별 시설수, 이용자수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원은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금액, 이용자수 기준으로 살펴봄.

-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에는 전체 학교 수는 약간 증가하였지만 전체교실 수, 학생 수는 약간 감소하였음. 2017년에는 학교수, 이용학생수 모두 증가하였음.
-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용 학교수, 이용 학생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원 투입 배분이 많은 편임.
- 전체 학교수 대비 이용 학생 수 비율을 산정한 결과, 2015년은 서울,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약간 낮았음. 2016년에는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음. 지역별로 비율이 높고 낮은 편차도 비슷한 양상이었음. 세종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학교당 학생 비율의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음(부표 IV-1-2참조).
-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시설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용 학생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큰 폭의 변화는 아니며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전남, 광주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설수와 이용 학생수가 약간 많음.

- 전체 시설수 대비 이용학생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도별로 큰 변화폭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방과후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지원규모와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음. 지원규모 대비 지원대상은 서두에서도 밝힌대로 보육료 지원금액에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별로 취약아동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규모별 지원 대상 아동수의 단순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자료에서는 산출하지 않았음.
-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이며, 부산, 울산,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규모가 큰 편임. 하지만 각 지역별 지원규모와 대상수로만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취약계층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자원 투입의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취약계층 유형별 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도 급여성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투입비용 대비 이용아동수를 살펴보았음.
- 2015년에 비해 2016년 투입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이용아동수는 감소하였음. 2017년에는 전체 예산은 약간 감소한 반면, 이용아동수는 큰 편으로 줄지 않았음. 아동수 대비 투입비용 비율은 2016년에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음.
- 아동 1인당 투입비용은 세종과 대구,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음. 2016년에는 강원지역, 전남, 경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2017년에는 울산, 대전, 부산, 대구 지역 비율이 약간 높았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 수는 2016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변화가 없음. 이용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가장 시설수가 많았으며, 전남,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운영되는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도 약간 많았음. 운영시설수 대비 아동수 비율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비슷하였음. 이는 지역별 자원 배분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지원 방식, 추진방식의 적절성

가)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아동돌봄 사업의 지원 방식은 서비스 형태와 바우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바우처 형태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임.
 - 두 사업 모두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비용과 기회 균등 제공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의 측면에서 지원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예산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조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은 지역별로 1인당 지원단가가 차이가 있음. 하지만 지역별 프로그램, 물가 등을 고려하되 지원 범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서비스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서비스 형태의 지원방식이 적절함.
 -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절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일부 보조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식 형태로 보임.

표 IV-2-8 아동돌봄 사업군 지원 방식

구분	사업목적	지원 유형	비용구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 돌봄필요한 취약계층 가정 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	- 무상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일부 보조, 운영 관리 지원)	- 운영비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 지원	- 바우처	-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비(서울과 지방간 교육청대 시군구 매칭 비율이 상이함)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 바우처	- 정액(1인당 600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활동(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	-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내부자료).

나)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형태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교육청, 각 지역청 및 학교로 연계되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져 있음. 예산 지원 및 최종 관리 관할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적 수준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내 서비스 수요 파악은 각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서비스 선택권도 지역 교육청과 학교 재량권이 크게 부여되어 지역 내 요구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진 방식은 적절성을 유지한다고 보여짐.
-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위탁하여 각 지역별 지역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여 지역 간 서비스 질적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내 수요자의 요구와 대응은 각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고 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통해 한번 더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와 지역 내 서비스 요구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여상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지침을 전달하여 사업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각 지자체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 바우처 형태의 사업인 방과후 보육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서비스 전달체계와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내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지역 내 대상 기관에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추진됨.
- 서비스 사업과는 별개로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은 지역내 요구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며, 지원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전달체계가 적절한 추진방식으로 판단됨.

다) 모니터링의 체계성

- ☐ 아동돌봄 사업군은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 모니터링 형태는 현장점검, 지도점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자체 단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모니터링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급여성 지원 사업인 만큼 민원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통로를 마련하고 있었음.

표 IV-2-9 아동돌봄 사업군 모니터링 방법

구분	모니터링단 유무	운영 방법	
		형태 및 시기	주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음	1. 수시점검, 담당자 협의회 2. 현장점검: 연 2회 이상 - 결산보고: 매년	교육청별 자체 점검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음	1. 지자체 지도점검: 연중 실시 2. 외부 사업평가: 매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참여 3. 정산 확인: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검토 4. 지역아동센터 시설평가: 3년마다 심화평가 5.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예산 집행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있음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민원사항 모니터링: 연중 수시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있음	현장점검: 연 1회 이상 결산보고: 매년	교육청별 자체점검 실시, 지원 현황 분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있음	현장점검: 연 1회 이상 사업평가: 2년주기	현장점검: 직접, 지자체 사업평가: 위탁, 산하기관 수행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 자료(내부자료).

라) 인력의 적정성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종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타 직종 종사자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편임.

- 향후 각 아동돌봄 사업 형태별 임금 수준, 경력기간 등이 데이터화되어 관리된다면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인력기준은 각각 유·초등교사(1, 2급)등의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자가 없는 등 서비스 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음.

다. 산출 단계 평가

1) 수급자 비율

□ 아동돌봄 사업의 수급자 비율은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통해 파악함.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같은 서비스 지원 사업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급여성 형태 사업인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음.
-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지역별로 규모는 차이가 있었음. 연도별로 이용자 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출산 이후 여성 경력단절의 주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공급에 있어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임
 - 참고로 육아정책연구소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 보고서(2017) 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 대상 조사 결과 직장맘 임금과 취업률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 등의 경우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성이 발견됨.
 - 초등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의 부족은 사교육 이용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과 공공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사교육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임.
-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수도 지역별로 약간의 규모 차이는 보이고 있음. 16개 시도별로 2015년에 비해 2017년 이용자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졌지만 서울지역, 세종, 경북지역은 이용 학생이 약간 증가하였음.
- 시도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원 아동수도 지역별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대상별로 지원되는 급여성 사업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별 지역 인구수에 따른 차이로 보임.

- 시도별 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아동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6개 시도별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음. 이는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수도이전 계획에 따라 유입인구가 많이 생겨나는 신생 도시로 지역 내 지속적으로 신설 학교가 생기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짐.
- 시도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대상 범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임. 전체 학년별 차지하지는 인원은 초등학교 이용자가 약 53%, 중학생 이용자가 약 47% 정도임('18년 기준).
- 초등학교와 중학생 이용자는 각각 증가하고 있음.

표 IV-2-10 아동 돌봄 사업군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합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239,798	238,480	245,303	261,287	984,868
지역아동센터지원	109,661	106,668	108,578	110,283	435,190
방과후 보육료 지원	3,492	3,075	2,631	2,603	11,80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734,552	724,062	688,923	626,211	277,374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9,490	9,745	9,773	10,463	39,471

주: 1) 초등돌봄교실은 매년 4월 30일 기준임.
 2) 지역아동센터지원은 2018년 6월 기준
 3)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수이며, 방과후 보육료 대상자수는 아님.
 4)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실인원임.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18년 10월 기준임. 각 서비스 이용자수는 실인원임.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급여 충분성

-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설수와 이용자수를 살펴보았음.
- 초등돌봄교실 시설수는 초등돌봄교실이 설치된 학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이용학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는 3년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실인원도 '16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다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금급여 형태인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인력수와 이용 대상자수를 살펴보았음.
- 방과후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인력수와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음.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V-2-11 아동 돌봄 사업군 시설수 대비 인원

단위: 개, 명

구분	'15		'16		'17		'18	
	시설수	실인원	시설수	실인원	시설수	실인원	시설수	실인원
초등돌봄교실	5,972	239,798	5,998	238,480	6,054	245,303	-	-
지역아동센터지원	4,102	109,661	4,107	106,668	4,189	108,578	4,192	110,283

주: 1) 초등돌봄교실은 시설수는 학교수, 실인원은 이용학생수임.
 2) 지역아동센터지원은 2018년 6월 기준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IV-2-12 아동 돌봄 사업군 인력 대비 실인원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10	
	인력수	실인원	인력수	실인원	인력수	실인원	인력수	실인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5	3,492	113	3,075	102	2,631	82	2,60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32	9,490	750	9,745	750	9,773	780	10,463

주: 1)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사업은 인력수와 실인원 추정이 정확히 어려워 담당부처에서 해당없음으로 분류함.
 2)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2018년 자료는 6월 기준임.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자료는 4월 기준임.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향후 이용자수와 예산을 활용한 사업의 예산 추정치를 통해 사업의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보았음.

-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증가된 예산의 충당은 지방비를 통해 확보될

예정임.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 증액되어 충당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도 이용자수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2-13 | 아동 돌봄 사업군 향후 추진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자수	예산		이용자수	예산		이용자수	예산		이용자수	예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268,000	21,000	320,408	282,000	21,000	336,508	296,000	21,000	352,608			
지역아동센터지원	110,760	170,041	182,274	111,870	175,142	187,742	112,990	180,395	193,37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000	22,402	23,453	11,900	25,821	26,648	13,400	31,241	32,24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참여는 매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단위학교가 결정되어 향후 운영 예산시설 추정이 어려움.											
방과후보육료 지원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계획 구축 사업 확대에 따라 방과후 어린이이집 사업은 재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계 추정 어려움.											

주: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 매년 1% 증가로 추계함.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단위: 명, 백만원

라. 성과

1) 목표대비 성과 달성률

- 초등돌봄교실의 성과지표는 초등돌봄교실 만족도로, 돌봄교실 체험기간 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오후돌봄 연장, 방학 등 휴업일 운영 강화 등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15년 94.8%에서 '17년 95.3%로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
- 지역아동센터의 성과지표는 이용아동수와 이용아동의 만족도임. 이용아동수는 아동인구의 감소와 돌봄체계 확대에 의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는 '17년 목표인 85.0보다 6.6점이 높은 91.6점으로 나타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존 성과지표인 청소년 만족도에서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 학업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항목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전후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됨.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평균성적은 증가하였고, 공부시간도 늘어났으며, 학교발표에 대한 적극성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원하는 교육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후 참여하기 전에 비해 음악활동, 체육활동, 야외체험활동, 학습활동, 과학활동 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경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이후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학업성취 효능감을 비롯하여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관계 효능감 등 자기효능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전후에 건강상태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 전에

비해 참여 이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이후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표 IV-2-14 아동 돌봄 사업군 성과 달성률(2017년 기준)

구분	성과지표명	목표	달성	달성률	가중치	최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만족도	95.8	95.3	99.4	-	99.4
지역아동센터지원	만족도	88.0	91.6	104.1	0.6	104.7
	이용아동수	109,500	108,578	99.2	0.4	99.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A.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효과성 증가율	20.8	21.1	101.4	0.7	102.1
	B.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수	9,400	9,773	104	0.3	104.3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 초등돌봄교실은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달성 여부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
- ☐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3~중3)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자체 공무원, 시설 및 관련 단체 대상으로 지침 개정,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절차도 거치고 있음.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효과성 변화로 성과관리 시행중임.
- ☐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매년 시도교육청별 지원 학생 수, 1인당 실 지원액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및 성과관리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매년 시도교육청별 지원 학생 수, 1인당 실 지원액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및 성과관리.

표 IV-2-15 아동 돌봄 사업군 성과 절차

구분	성과관리 절차 유무	내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	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지역아동센터지원	유	매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3~중3)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방과후 보육료 지원	유	지원 현황을 파악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유	지원 현황을 파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유	청소년 효과성 변화 파악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3) 만족도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은 만족도 평가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임. 보다 객관적으로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 예컨대 지원 대상 대비 해당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률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산망 정비가 필요함.

표 IV-2-16 아동 돌봄 사업군 만족도

구분	만족도 조사 유무	내용	비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	돌봄교실 체험기간 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한 오후돌봄 연장, 방학 등 휴업일 운영 강화 등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증가
지역아동센터지원	유	이용아동의 만족도 조사	작년도 대비 증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유	이용 청소년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작년도 대비 증가

자료: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마. 영향

- 영향부분 평가는 아동돌봄 부분의 간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함.
- 우선 아동 돌봄사업군의 목표에 따라 배치 및 구성에 대한 간접적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보완 관계에 의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돌봄군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자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돌봄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할 때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이 상호 보완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소 긍정적임.
 - 해당 사업군은 돌봄의 주체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요하는 부분과 요하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짐.
 - 외부 자원을 통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므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 하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개선 요구가 높음.
 - 또한, 자격요건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황임.
- 자원 간 연계 및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상자 및 모수 추정이 일괄적이지 않고,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아동 돌봄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추정이 불가.

3 부문 종합 평가

- 아동돌봄 사업군의 종합적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설계 부분은 서비스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대상의 표적화 정도, 모수 추정, 사업군 내 및 사업군 간의 상충 보완관계로 사업을 평가.
- 우선, 대상자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설정에 있어 소득기준과 맞벌이 여부 기준이 혼재되고 있어 사업별 중복과 기능 정리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수립과 함께 사업간 통합과 폐지가 필요.
 - 이때 사업별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폐지 및 통합을 논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설계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 요구자 수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수요 파악이 가장 힘든 상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전제되어야 할 상황으로 사료됨.
 - 지원 대상의 연령별 구분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이용 필요 시간대, 원하는 서비스 내용, 맞벌이 유무 등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수요 욕구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
 - 예를 들면,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수요에 대하여 학교별로 학기 초에 조사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돌봄교실의 기능, 지역사회 자원 소개, 매칭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요 조사는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각 돌봄 서비스의 기능과 대상, 목표 등을 정확하게 숙지시킨 후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것이 필요함.

표 IV-3-1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단 계	지표명	아동 돌봄 사업군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소득기준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맞벌이 유무 등 선별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초등돌봄은 초등저학년, 방과후 돌봄은 그 이상의 연령을,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역아동센터는 연령에 있어 포괄성이 높음.
	대상 집단에 대한 표적화 정도	- 다수의 사업이 신청자 수 혹은 대기자수를 파악하지 않아, 표적화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움. - 사업의 다수가 표적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러한 자료의 구축이 요구됨.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 대부분의 사업이 지원 대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함.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모수를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지원 대상이 다소 중복적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사업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동시간대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 수혜의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사업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중복될 경우 사업들 간의 차별성이 낮아져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집행 단계에서는 대상자 규모별로 적절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된 선별사업임에도 각 사업 팀은 대상자 규모를 전체 아동수로 책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별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대상자 규모는 이용자 수 평균으로 산정하고 정확한 사업 규모를 추계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각 사업별 대상자 규모 대비 사업의 규모의 충분성을 파악할 때는 이러한 사업 대상자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 비율이 50%가까이 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지방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으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음.
- 아동돌봄사업의 지원방식과 추진방식은 서비스 지원사업과 현금 급여성 지원사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서비스 지원사업은 각 지역내 다양한 요구를 좀 더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관리 하에 지방정부 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현금 급여 지원사업은 서비스 사업과는 다르게 지역내 요구의 다양성이 적은 편임. 따라서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하에 지자체는 재원 배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은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 사업은 현장점검, 지도점검 등 좀 더 다양한 단계의 모니터링 절차를 갖추고 있음.
- 아동돌봄사업군 인력의 자격조건은 법적 근거를 통해 마련되어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처우가 문제점으로 보임.

표 IV-3-2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단계

단 계	지표명	아동 돌봄 사업군
집 행	투입의 충분성	- 방과후 보육료 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 가구 학생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100% 지원임. - 초등돌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26.7% 정도 되지만, 나머지 사업은 해당 지원 대상 아동 수 대비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단,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투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지원 방식의 적절성	- 바우처 사업은 방과후 보육료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행 비용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원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원 기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임.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사업별로 지역별 편차가 약간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지역적 불균형을 보아야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함. - 이때,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에 한계가 있음.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연계를 통해 추진되어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와 지역 내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 급여성 형태 사업인 방과후 보육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은 지역내 요구도가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예산 배분이 적절하도록 진행되는 추진방식을 가지고 있음.
	모니터링의 체계성	- 현장점검, 지도 점검 등 모든 사업이 모니터링을 실시 중임. -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모니터링이 가장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산출 단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을 위한 자원 확보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돌봄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이용자와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업 규모 추정도 어려운 상황임.
 - 다른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단, 저출산으로 인해 이용 대상 아동수가 줄어들 수 있는 사회 현상은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사업의 성과는 목표대비 성과 달성률을 통해 파악하였고, 성과 관리 절차 여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을 만족도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은 만족도조차 조사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향후 만족도 뿐 아니라 필요도 조사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아동돌봄 사업군은 돌봄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향후 지역사회가 아동돌봄 사업군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아동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향후 이를 보완할 서비스 자원의 투입 정도, 질적 우수성 확보 등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한편 관련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가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의 질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군 내의 종사자 임금 조사 외에 돌봄사업군의 종사자별 임금 수준,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시간 등을 부가적으로 조사할 것이 요구됨.

표 IV-3-3 아동 돌봄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성과, 영향

단 계	지표명	아동 돌봄 사업군
산 출	수급자 비율	- 초등돌봄교실 등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급여성 지원인 방과후 보육료 등의 이용자는 감소추세를 보임.
	급여 및 서비스 충분성	- 방과후 보육료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것에 맞추어 시설, 예산, 인력도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의 사업이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사업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적절한 자원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대부분 만족도로 조사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 - 만족도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아동수로도 보고 있는데 상승중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 절차 존재
영 향	간접적 파급 효과	- 돌봄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지역사회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적극적 시장 투입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아 질 낮은 일자리의 양산이 우려 - 자격기준 수립과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V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2. 요보호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4. 학교밖 및 위기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5.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종합



V.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사회보장지원 현황 및 평가

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대상 및 추진 현황

가.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총 29개가 검토되었으며 최종 평가대상 사업군으로는 26개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아동·청소년 보호 평가 대상은 우선 사회보장지원 사업에 국한하고, 강신욱 외(2015) 연구와 전문가 자문에 기초하여 일부 사업군을 조정하여 분석함.
- 제외된 사업: 강신욱(2015) 연구 분류에 따른 사업군 내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입양 알선 및 철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평가에서는 제외함
- 추가된 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사업은 강신욱(2015) 연구 분류에서는 아동돌봄군으로 분류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사업군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함.
- 본 장에서는 개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이라는 큰 틀 속에서 평가가 필요하나, 26개 사업을 포괄하는 평가들의 어려움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아동·청소년보호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군을 일부 유사범주로 묶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대상특성, 기능, 지원형태 등에 따라 유사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의 특성으로는 크게 학대, 입양, 실종 등 요보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출청소년,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등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3개로 분류할 수 있음.

표 V-1-1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대상특성별 분류

대상특성	사업명	소관부처
요보호 아동·청소년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실종아동보호및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미혼모·부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WEE프로젝트상담지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가출청소년보호지원센터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으로는 보호(돌봄/안전), 교육지원, 신체건강지원, 심리정서지원, 생활지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표 V-1-2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기능별 분류

번호	사업명	기능별					소관부처
		보호 (돌봄/ 안전)	교육 지원	신체 건강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1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	.	.	.	보건복지부
2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	.	.	.	.	보건복지부
3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	.	.	○	보건복지부
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	.	.	○	보건복지부
5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	.	○	○	.	보건복지부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	.	.	.	보건복지부
7	실종아동보호및지원	○	.	.	.	.	보건복지부
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	○	○	.	보건복지부
9	청소년특별지원	○	○	○	○	○	여성가족부
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	.	.	○	보건복지부
11	장애아동수당	.	.	.	.	○	보건복지부
1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	.	.	.	보건복지부
1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	.	.	○	여성가족부
1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	.	.	여성가족부
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	.	.	○	여성가족부
16	미혼모·부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	.	.	○	여성가족부
1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	.	○	.	여성가족부
1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	.	.	○	.	여성가족부
1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	.	○	.	여성가족부
20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	.	.	○	.	여성가족부
21	WEE프로젝트상담지원	.	.	.	○	.	교육부
22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	.	○	.	여성가족부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	○	.	여성가족부
2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센터운영지원	○	.	.	.	.	여성가족부
25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	.	○	○	.	여성가족부
26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	○	○	○	.	여성가족부
계		11	7	6	12	8	

자료: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sc.go.kr/cont/info/info030400.tiles?bigcate=013&menuFile=Info030400> (2018.5.3. 인출).

2)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원 형태별로는 비용 지원과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사업의 상당수는 서비스지원 형태이며, 비용지원의 경우에 일부 서비스지원 형태를 동시에 지님.

표 V-1-3 아동·청소년보호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포괄성 분류

번호	사업명	지원 형태		지원대상 포괄성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명확	불명확
1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	
2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	○	
3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	
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	
5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		○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	
7	실종아동보호및지원		○	○	
8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	
9	청소년특별지원	○	○	○	
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	
11	장애아동수당	○		○	
1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	
1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	
1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	
16	미혼모·부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	○	
1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
1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		○
1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
20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		○
21	WEE프로젝트상담지원		○		○
22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	○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24	가출청소년보호지원쉼터운영지원		○	○	
25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문쉼터운영지원		○	○	
26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	○	
계		10	19	20	6

주: 1) 사업별 지원내용에 따라 중복이 있을 수 있음.

자료: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sc.go.kr/cont/info/info030400.tiles?bigcate=013&menuFile=Info030400> (2018.5.3. 인출).

2)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청소년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중심의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중복성을 줄이는 방향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을 대상특성을 중심으로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학교 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으로 분류함.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생애 주기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 대상 연령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적 정의를 떠나, 아동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 V-1-4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 법의 정의

대상	법	정의
아동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 18세 미만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
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9~24세)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

1)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은 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관련 사회보장사업으로 총 7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음.

- 학대 관련 사업(2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 입양 지원 사업(2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 지원 사업(2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
- 실종관련 사업(1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

표 V-1-5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번호	사업명	기능별					지원형태		소관부처
		보호 (돌봄/ 안전)	교육 지원	신체 건강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1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	.	.	.		○	보건복지부
2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	.	.	.	.		○	보건복지부
3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	.	.	○	○	.	보건복지부
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	.	보건복지부
5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	.	○	○	.	○	.	보건복지부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	.	.	.		○	보건복지부
7	실종아동보호및지원	○	.	.	.	.		○	보건복지부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은 저소득층, 한부모, 미혼모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사업으로 총 9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음.

표 V-1-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번호	사업명	기능별					지원형태		소관부처
		보호 (돌봄/ 안전)	교육 지원	신체 건강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1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	○	○			○	보건복지부
2	청소년특별지원	○	○	○	○	○	○	○	여성가족부
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	○		보건복지부
4	장애아동수당					○	○		보건복지부
5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	보건복지부
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	○		여성가족부
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여성가족부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		○	여성가족부
9	미혼모·부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	○	여성가족부

3)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은 학교밖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성폭력 피해, 성매매, 가출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됨.

표 V-1-7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특성

번호	사업명	기능별					지원형태		소관부처
		보호 (돌봄/ 안전)	교육 지원	신체 건강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		○			○	여성가족부
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			○	여성가족부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	여성가족부
4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 담 운영				○			○	여성가족부
5	WEE프로젝트상담지원				○			○	교육부
6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 지원)				○		○	○	여성가족부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			○	여성가족부

번호	사업명	기능별					지원형태		소관부처
		보호 (돌봄/ 안전)	교육 지원	신체 건강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8	가출청소년보호지원센터운영지원	○						○	여성가족부
9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운영지원	○		○	○			○	여성가족부
10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	○	○	○			○	여성가족부

나.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지표

- ☐ 평가지표는 사회보장정책평가(강신욱 외, 2015)의 공통지표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며, 사업 특성과 자료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함.
- ☐ ‘설계-투입-집행-산출-성과’의 큰 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구성,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평가틀을 적용함.
 -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사업군 내 사업 간의 상충/보완 관계 등을 검토함.
 - (투입)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을 검토함.
 - (산출) 수급자 비율, 지원 수준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등을 검토함.

1)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 ☐ 먼저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설계 단계 평가 지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유무, 사업간 상충 보완관계임.
 - 설계 단계의 지표들은 주로 개별 사업별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 집행 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 자원 배분 투입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 등을 평가함.

- 투입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금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자수,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대상및지원현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금액 등을 취합하여 사업 예·결산 및 서비스 공급률 등을 분석함.
 -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별 비용구조를 분석함.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실적, 장애유형별 입양양육보조금현황,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현황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공급률을 분석함.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지원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수혜자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등을 통해 평가하며,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함.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성과 단계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2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확인함.
-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 지표가 적절한지,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함.

표 V-1-8 요보호 아동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요보호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설정이 적절히 되었는가?	사업별 지원 대상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개별 사업별로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가 존재하는지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자료 유무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경우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인지 확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투입	투입의 충분성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사업 예·결산	사업 추진 실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금액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금액 학대피해아동쉼터이용자수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대상 및지원현황,
	지원 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 검토	지역별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장애유형별 입양양육보조금현황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현황
산출	추진 방식의 적절성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추진 체계인지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의 체계성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방식 등을 확인	지역별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수급자 비율	서비스 대상자 대비 수혜자 현황을 파악	사업별 수혜자 현황 (서비스이용률)	사업 추진 실적
	지원 수준의 충분성	지원 수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은 없는지를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의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지표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의 설계 단계 평가 지표는 주로 개별 사업별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 집행 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 드림스타트대상(연령별포함)및지원현황, 청소년특별지원지원자수및지원현황·지원경

로, 아동발달계좌지원대상및지원현황 등을 취합하여 사업 예·결산 및 서비스 공급률 등을 분석함.

-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별 비용구조를 분석함.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실적, 장애유형별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지원대상가구수및대상아동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대상및지원현황,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및지원현황, 미혼모·부자가구수및지원현황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공급률을 분석함.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지원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수혜자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등을 통해 평가하며,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함.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성과 단계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2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확인함.

-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 지표가 적절한지,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함.

표 V-1-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설정이 적절히 되었는가?	사업별 지원 대상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개별 사업별로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가 존재하는지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자료 유무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경우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인지 확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투입	투입의 충분성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사업 예·결산	사업 추진 실적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지원 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 검토	지역별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추진 방식의 적절성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추진 체계인지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산출	모니터링의 체계성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방식 등을 확인	지역별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수급자 비율	서비스 대상자 대비 수혜자 현황을 파악	사업별 수혜자 현황 (서비스이용률)	사업 추진 실적
	지원 수준의 충분성	지원 수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은 없는 지를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의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3)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지표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설계 단계 평가 지표는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유무, 사업간 상충 보완관계임.

- 설계 단계의 지표들은 주로 개별 사업별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

□ 집행 단계 지표는 투입의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예·결산 및 서비스 공급률 등을 분석함.

-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별 비용구조를 분석함.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실적, WEE프로젝트

대상학생및지원현황, 학교밖청소년지원청소년수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공급률을 분석함.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의 체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산출 단계 지표로는 수급자 비율, 지원의 충분성 등을 검토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수혜자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등을 통해 평가하며,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함.
- 지원 수준의 충분성은 사업 추진 실적을 취합하여 사업 내용을 분석함.

□ 성과 단계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2가지로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확인함.

-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 지표가 적절한지,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함.

표 V-1-10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평가 지표 및 활용 자료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설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설정이 적절히 되었는가?	사업별 지원 대상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개별 사업별로 대상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조사, 통계 등)가 존재하는지 사업 추진 실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자료 유무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경우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 인지 확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투입	투입의 충분성	충분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사업 예·결산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지원 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 검토	지역별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WEE프로젝트대상학생및지원현황 학교밖청소년지원 청소년수

단계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 방법	활용 자료
	추진 방식의 적절성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추진 체계인지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의 체계성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방식 등을 확인	지역별 서비스 공급률	사업 추진 실적
산출	수급자 비율	서비스 대상자 대비 수혜자 현황을 파악	사업별 수혜자 현황 (서비스이용률)	사업 추진 실적
	지원 수준의 충분성	지원 수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은 없는지를 검토	사업 내용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성과 관리의 객관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확인	사업 추진 실적

2 요보호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가. 설계 단계 평가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을 보면 각 사업들이 관련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입양특례법, 실종아동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지원대상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모수 역시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부처에서 특정하고 있음.

표 V-2-1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근거
중앙·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자 가족	「아동복지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및운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12조·제47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만16세 이전)	입양특례법 제35조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만18세 이전)	입양특례법 제35조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입양·가정위탁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59조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운영 지원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 통합·지원 기능 강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아동·부모	아동복지법 제48조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실종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가족	실종아동법 제3조, 제5조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측면에서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 조손가족(조부모손자녀양육가정)에서 학대 이외의 요인인 경제적, 신체적(노화), 지적 요인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현재 아동복지법 요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학대행위자(주로 부모)와 격리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각 사업들은 전년도 기준 통계로 사업 대상자 모수를 추정하고 있으며,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매년 보호 아동수,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해당
 연도 기준 실종 접수 및 미발견 수를 모수로 추정하고 있음.

표 V-2-2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단위: 명

사업명	대상자/ 모수 (추정치)	2015	2016	2017	2018	모수 추정 근거 자료
중앙·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모수	19,214	29,674	34,18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2016) 아동학대현황보고 (속보치, 2017)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및 운영	모수	3,110	4,095	4,23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2016) 아동학대현황보고 (잠정치, 2017)
입양아동양육 수당지원	대상자	12,814	13,188	13,764	-	전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현황 (지자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모수	14,256	15,085	13,622	13,350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대상자	315	295	294	-	
	모수	326	326	326	314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	모수	가정위탁 14,385명 국내입양 637명	가정위탁 13,728 국내입양 683명	가정위탁 12,896명 국내입양 546명	가정위탁 11,983명 국내입양 465명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 소녀가정현황 통계자료 (전년말 기준 통계로 추정)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운영 지원	모수	14,385	13,728	12,896	11,983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 녀가정현황 통계자료 (매년 보호아동수로 추정)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2-3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접수 및 미발견 수('17. 12월, 경찰청)

단위 : 건

	구 분	총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4년	37,522	14	21,591	2	7,724	5	8,207	7
	'15년	36,785	11	19,428	3	8,311	4	9,046	4
	'16년	38,281	30	19,870	13	8,542	11	9,869	6
	'17년	38,789	191	19,956	100	8,525	77	10,308	14

주: * (접수) 해당년도 기준, (미발견) '17.12월말 기준/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3)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각각의 법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사업의 중첩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요보호 아동·청소년 사업 부문의 경우 중복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과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은 모두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은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과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은 모두 입양특례법에 의한 지원이지만 입양아동 중에서 장애유무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으로 입양특례법에 의한 지원이 양육수당 및 보조금 지원인 것에 비해 심리정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자가족 지원을 하는 사업이므로 별개의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나. 집행 단계 평가

1) 투입의 충분성

- ☐ 투입의 충분성은 재정 투입과 관련된 예·결산 현황과 서비스 공급 현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사업별 예·결산 현황

-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억 9,400만원(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에서 356억 2,400만원(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으로 나타남.
- ☐ 예산 대비 결산비는 79.8%~100%로 나타남.
-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 대 결산비가 100%로 나타났고, 실종아동보호및지원도 예산 대 결산비가 99% 이상으로 나타남.
-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사이에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2016년 6.3%, 2017년 5.4%, 2018년 6.0%로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예산이 2016년도에 46.2%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 42.1%가 증가하여 예산감소분을 회복하였고, 2018년도에는 20.5%가 증가함.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예산의 증감폭이 다른 사업들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예산의 안정성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 2016년 11.8%, 2017년 8.2%, 2018년 13.9%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예산은 2017년도에 8.5% 감소하였고, 2018년도에는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음.

표 V-2-4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예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338	1,338	100	1,383	1,383	100	1,446	1,446	100	1,446	1,44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30,012	29,078	96.9	31,890	31,890	100	33,598	33,598	100	35,624	35,624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14,263	12,017	84.3	7,335	6,797	92.7	10,420	10,180	97.7	12,560	12,560
임양아동양육수당지원	25,553	21,595	84.5	27,200	22,684	83.4	24,561	23,139	94.2	23,990	23,990
장애아동임양양육보조금	2,574	2,155	83.7	2,590	2,103	81.2	2,590	2,074	80.1	2,450	2,450
임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381	304	79.8	426	335	78.6	461	394	85.5	525	525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435	435	100	435	435	100	444	444	100	451	451
실종아동보호및지원	992	986	99.4	992	988	99.6	893	893	100	854	854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2-5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383	3.4	1,446	4.6	1,446	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31,890	6.3	33,598	5.4	35,624	6.0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7,335	-48.6	10,420	42.1	12,560	20.5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27,200	6.4	24,561	-9.7	23,990	-2.3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2,590	0.6	2,590	0	2,450	-5.4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426	11.8	461	8.2	525	13.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435	0	444	2.1	451	1.6
실종아동보호및지원	992	0	893	-10	854	-4.4

주: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전년도 예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재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을 보면 국비 비율은 40%~100%로 나타났고, 2015~2017 사이에 국비 비율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재원 출처 및 매칭 방식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 근거 사업)이 기금(복권 기금)과 지방비 매칭 방식,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지방비 매칭 방식,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기금(복권 기금)과 지방비 매칭 방식,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아동복지법 근거 사업)이 일반회계와 지방비 매칭 방식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국비인 일반회계 100%로 나타남.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 사업은 재원이 기금 중에서도 복권기금으로 운영됨으로써, 재원 출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는 예산 책정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사료되나, 재원의 안정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함.

표 V-2-6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자원 출처 및 매칭 방식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지방비	1,338	-	100.0	1,383	-	100.0	1,446	-	10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지방비	15,006	15,006	50.0	15,945	15,945	50.0	16,799	16,799	50.0
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및운영	기금(복권기금)+지방비	5,705	8,558	40.0	2,934	4,401	40.0	4,168	6,252	40.0
임양아동양육수당지원	기금(복권기금)+지방비	14,247	7,348	66.0	14,979	7,705	66.0	15,304	7,835	66.1
장애아동임양양육보조금	기금(복권기금)+지방비	1,375	780	63.8	1,346	757	64.0	1,329	745	64.1
임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일반회계+지방비	190	114	62.5	207	128	61.9	247	147	62.6
중앙가정위탁아동센터운영지원	일반회계	435	-	100.0	435	-	100.0	444	-	100.0
심종아동보호및지원	일반회계	986	-	100.0	988	-	100.0	893	-	100.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나) 서비스 공급 현황

□ 서비스 공급 현황은 지원 인력 현황, 이용자수 현황, 시설 공급 현황,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원 인력 현황

- 지원 인력 현황을 응답한 사업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개 사업임.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지원 인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입양 지원 사업들의 경우 대상자 지원을 현금 및 서비스 지원으로 하고,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대한 민간보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및 시설 공급 현황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V-2-7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지원 인력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513	718	814	848	연도말, '18.6월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11	11	11	1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수

□ 이용자수 현황

- 이용자수 현황이 파악 가능한 사업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임.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의 이용자수는 최근 3년간 연간 6,000~8,0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예산 및 지원 인력 증가 추세를 설명하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는 연도에 따라서 증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음.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이용자수

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 역시 증가추세라는 것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이용자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V-2-8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이용자수 현황(실인원)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9,214	25,878	34,185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830	1,030	999

□ 시설 공급 현황

- 사업추진계획에서 시설 공급 현황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만 제시되어 있음. 그 이유는 이 사업들이 시설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최근 3년 동안 시설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시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학대 신고가 되더라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격리보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의 시설 공급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V-2-9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시설 공급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56	59	60	61	연도말, '18.6월말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	46	53	57	62	연도말, '18.6월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1	1	1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수

- 서비스 공급 현황에서 실종아동보호지원 서비스 현황은 다른 사업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실종아동 등 가족지원 서비스 및 실종아동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현황을 제시하였음.

- 실종아동 등 가족지원 서비스(우리아이찾기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일제수색 참가지원 등) 현황을 보면 찾기활동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심리정서 서비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V-2-10 실종아동보호및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단위 : 건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찾기활동 가족지원	24,565	47,521	60,118	우리아이찾기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일제수색 참가지원 등
심리정서 서비스	176	54	46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사례관리 전문화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	582	544	571	상담·의료비, 활동비 지원
네트워크 강화	22	14	73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등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유괴 예방교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국민 홍보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 변화는 실종예방교육을 아동과 교사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대국민홍보를 확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같은 변화는 예방적 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표 V-2-11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실종유괴 예방교육	84,683명	70,835명	56,566명	아동교육, 교사교육
대국민 홍보	782건	6,129건	12,672건	캠페인, 광고, 홍보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의 인건비 및 시스템 개선비용을 위한 예산증액(2019년

371백만원, 2020년 125백만원, 2021년 138백만원).

- 사업추진실적에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 운영만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2015~2018년과 비교하면 2019~2021년에 인력, 시설, 예산을 모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를 통해 사업이 확장 국면에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V-2-12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확대 계획

단위: 수, 백만원

사업명	인력·시설·수급자 수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유(근거)
중앙·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인력 수		1,052	1,052	1,052	기재부 심의 기준, 지원인력 포함	- 국정과제: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 한 아동지원 강화 - 아동복지법 제45조 2 제2항: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시도 및 시군 구 1개소 설치
	시설 수		63	63	63	-	
	예산	국비	20,563	20,128	20,128	-	
		지방비	20,563	20,128	20,128	-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인력 수		365	365	365	기재부 심의 기준	- 국정과제: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 한 아동지원 강화
	시설 수		73	73	73	-	
	예산	국비	5,531	5,050	5,050	-	
		지방비	8,296	7,575	7,575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인력 수		4명	-	-	-	- 예산 증액 (인건비 및 시스템 개선비용)
	예산	국비	371	125	138	-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지원방식의 적절성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1인당 현금지원 및 시설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이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시설

을 통한 서비스 지원, 장애아동양육육보조금 등은 현금성 지원으로 정책 성격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으며, 비교적 적절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V-2-13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

사업명	비용구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서비스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서비스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월 15만원/인(정액)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인, (경증 등) 월 551천원/인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치료비 20만원 이내/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실종아동보호및지원	민간보조 100%

3)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지역별 서비스 공급률)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지역별 서비스 공급률로 파악할 수 있음

- 지역별 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이용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 분포에 비례하지 않음.
 - 이는 지역별 요보호 아동의 발생 건 수가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보호 아동 부문 사업의 다수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 장애입양양육보조금 사업에서 장애유형별 입양 양육보조금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이용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음.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형별 입양 아동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보면 학대피해아동수 및 기관이용자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서울에 비해 경기도의 학대 피해아동수 및 기관이용자수는 2배에 달함.
 -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지자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로 이해됨.
- 지역가정위탁센터 운영현황에 나타난 위탁아동수 및 센터이용자 수도 지역

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서울에 비해 경기도의 위탁아동 수 및 센터이용자수는 2배에 달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요보호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학대 아동, 가정 위탁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역 내 인구 분포 뿐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 범위를 넘어섬.
- 요보호 아동 지원의 경우에는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

표 V-2-14 | 장애유형별 입양 양육보조금 현황

단위: 원, 명

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금액	이용아동 수		지급금액	이용아동 수		지급금액	이용아동 수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서울	391,647,000	25	37	362,216,000	22	33	350,835,000	21	37
부산	134,602,690	13	7	130,796,460	13	8	130,295,000	11	8
대구	49,020,000	3	4	42,959,000	4	4	40,356,000	4	4
인천	107,654,000	8	12	107,635,000	7	10	104,728,000	7	11
광주	37,088,000	2	4	40,945,000	2	4	41,667,000	2	5
대전	57,570,000	4	5	44,764,000	4	4	45,714,000	3	4
울산	27,455,000	1	4	33,972,000	1	4	40,964,000	2	5
세종	6,897,000	1	-	7,524,000	1	-	7,524,000	1	-
경기	509,324,570	41	41	523,411,000	38	40	516,938,000	40	40
강원	82,403,000	3	10	78,413,000	2	10	80,139,490	4	8
충북	43,320,000	4	2	38,152,000	4	3	36,898,000	3	3
충남	63,707,000	4	6	63,783,000	4	5	59,128,000	4	6
전북	117,591,000	9	11	99,864,000	8	8	87,191,000	8	5
전남	110,960,000	9	8	94,221,000	8	9	95,152,000	9	7
경북	84,153,000	7	9	83,353,000	5	8	82,251,000	5	7
경남	134,045,000	10	10	135,356,000	11	10	122,607,000	12	7
제주	6,612,000	-	1	6,612,000	-	1	6,612,000	-	1
계	1,964,049,260	144	171	1,893,976,460	134	161	1,848,999,490	136	158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2-15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015~2017)

지역	2015					2016					2017					단위: 명, 수
	학대피해 아동수	기관 이용자수 2)	예산		지원 인력수 1)	학대피해 아동수	기관 이용자수 2)	예산		지원 인력수 1)	학대 피해 아동수 2)	기관 이용자수 2)	예산		지원 인력수 1)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1,179	2,329	2,028,816	2,028,816	28	2,268	3,440	1,903,181	1,903,181	90	2,233	3,836	2,045,884	2,045,884	100	
부산	525	900	1,030,891	1,030,891	33	880	1,322	955,097	955,097	46	1,439	2,298	913,206	913,206	54	
대구	347	639	762,340	762,340	21	736	999	736,024	736,024	36	1,129	1,739	864,996	864,996	37	
인천	511	923	726,288	726,288	31	1,190	1,825	799,464	799,464	36	1,218	2,723	864,992	864,992	39	
광주	253	384	245,923	245,923	10	346	482	623,398	623,398	25	794	1,037	576,664	576,664	26	
대전	330	512	245,923	245,923	10	359	528	266,488	266,488	10	516	949	288,332	288,332	12	
울산	340	671	245,923	245,923	14	685	824	646,152	646,152	16	736	956	610,585	610,585	31	
경기	2,973	4,767	2,652,682	2,652,682	111	4,353	5,950	3,380,732	3,380,732	156	5,048	7,707	3,426,058	3,426,058	183	
강원	552	877	1,112,911	1,112,911	39	981	1,255	1,065,952	1,065,952	45	1,069	1,333	1,153,326	1,153,326	54	
충북	644	945	737,768	737,768	32	948	1,250	786,404	786,404	36	889	1,396	831,072	831,072	35	
충남	615	1,065	1,037,768	1,037,768	30	824	1,132	760,284	760,284	33	1,027	1,657	898,909	898,909	40	
전북	889	1,328	737,768	737,768	34	1,446	1,775	804,259	804,259	36	1,572	2,134	864,994	864,994	38	
전남	757	1,052	737,768	737,768	37	1,229	1,519	813,849	813,849	44	1,410	1,908	864,996	864,996	47	
경북	808	1,409	983,691	983,691	32	1,040	1,677	1,070,747	1,070,747	52	1,618	2,492	1,153,328	1,153,328	59	
경남	742	946	821,925	821,925	33	1,139	1,435	862,821	862,821	38	1,119	1,390	932,838	932,838	39	
제주	250	467	430,389	430,389	18	276	465	469,619	469,619	19	340	630	508,820	508,820	20	
계	11,715	19,214	14,538,774	14,538,774	513	18,700	25,878	15,944,471	15,944,471	718	22,157	34,185	16,799,000	16,799,000	814	

주: 1) 지원인력 수는 기관의 장과 사무원 등 행정인력을 제외, 상담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 포함.

2) 기관 이용자수는 신고접수.

3) 2017년 자료는 확정치가 미반영된 수치임.

표 V-2-16 | 지역가정위탁센터 운영현황(2015-2017)

단위: 명, 수

지역가정 위탁센터 운영	2015					2016					2017				
	위탁 아동수	센터 이용자수	예산		지원 인력수 1)	위탁 아동수	센터 이용자수	예산		지원 인력수 1)	위탁 아동수	센터 이용자수	예산		지원 인력수 1)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1,256	1,256	-	지방비	8	1,163	1,163	-	지방비	8	1,076	1,076	-	지방비	11
부산	760	760	-	지방비	9	692	692	-	지방비	10	653	653	-	지방비	10
대구	298	298	-	지방비	10	298	298	-	지방비	10	285	285	-	지방비	10
인천	722	722	-	지방비	10	663	663	-	지방비	10	580	580	-	지방비	10
광주	344	344	-	지방비	9	356	356	-	지방비	9	346	346	-	지방비	10
대전	274	274	-	지방비	7	265	265	-	지방비	7	242	242	-	지방비	8
울산	297	297	-	지방비	7	283	283	-	지방비	7	252	252	-	지방비	7
경기	2,403	2,403	-	지방비	9	2,267	2,267	-	지방비	9	2,157	2,157	-	지방비	9
강원	1,316	1,316	-	지방비	10	1,229	1,229	-	지방비	10	1,111	1,111	-	지방비	10
충북	542	542	-	지방비	7	593	593	-	지방비	10	528	528	-	지방비	10
충남	692	692	-	지방비	10	647	647	-	지방비	11	633	633	-	지방비	10
전북	916	916	-	지방비	10	844	844	-	지방비	10	791	791	-	지방비	10
전남	1,453	1,453	-	지방비	7	1,313	1,313	-	지방비	7	1,177	1,177	-	지방비	14
경북	1,032	1,032	-	지방비	10	970	970	-	지방비	10	935	935	-	지방비	14
경남	1,116	1,116	-	지방비	11	1,026	1,026	-	지방비	11	953	953	-	지방비	11
제주	307	307	-	지방비	10	287	287	-	지방비	11	264	264	-	지방비	11
계	13,728	13,728	-	-	153	12,896	12,896	-	-	159	11,983	11,983	-	-	174

주: 1) 지원인력 수는 센터장, 사무직원 등 행정인력, 상담원, 임상심리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포함

4) 추진방식의 적절성

□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사업 추진 방법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업 추진 방법은 사업유형 및 전달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에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서비스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은 현금급여,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민간보조(실종아동전문기관)로 구분됨.

- 전달체계에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업무지원을 하는 지원체계임.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학대피해아동센터의 순서로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순서로 운영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체계임.

-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장의 협력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전달체계는 대체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별도의 중앙지원기관이 존재하여 사업별 지역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중심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다시 말해서 아동중심이 아닌 기관중심형 또는 보호자중심형 전달체계라는 것임.

- 아동은 시군구 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뿐 재고를 요청할 통로가 없으며, 시군구에 따라 가용한 자원의 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거주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원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 한편,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가 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사업간 연계가 취약해지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표 V-2-17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추진 방법

사업명	사업유형	전달체계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서비스 지원	(1) 중앙아동전문기관은 지역아동전문기관에 대해 업무지원 (2) 보건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보조금 교부 (3)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순서로 보조금 교부 (4) 시·도,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조금 교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서비스 지원	(1)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순서로 보조금 교부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순서로 운영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현금급여	(1)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입양가정의 순서로 보조금이 교부됨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2) 입양가정에서 시군구로 지원신청 (3) 사군구, 시도, 보건복지부의 순서로 사업실적보고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업무지침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로 치료아동 지원 실적 보고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심리치료 대상 아동 추천 (3)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위탁아동에게 심리치료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치료기관 선정 및 치료비 청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1)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위탁아동 친가정의 순서로 지침시달 및 가정조사가 이루어짐 (2)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친가정의 순서로 지침시달, 업무지원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짐 (3) 위탁가정은 시군구에서 급여지원, 지역가정위탁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음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민간보조 (실종아동전문기관)	보건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의 협력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5) 모니터링의 체계성

□ 모니터링의 체계성은 사업 모니터링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형

태, 운영 횟수(주기), 운영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모니터링 형태 및 운영 횟수(주기)는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현장점검(수시), 결산보고서평가(매년)으로 구성되고,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3년 주기 사업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및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은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연 4회),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 중간정산 및 결산보고서(연 1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및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사업평가(3년주기) 및 결산보고서(연 1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방법은 직접 집행실적점검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V-2-18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모니터링 현황

사업명	모니터링 형태	운영 횟수(주기)	운영방법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수시 - 사업평가: 3년 주기 - 결산보고서 평가: 매년	- 현장점검: 직접, 지자체 - 사업평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수행 - 결산보고서 평가: 직접, 지자체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 운영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수시 - 결산보고서 평가: 매년	- 현장점검: 직접, 지자체 - 결산보고서 평가: 직접, 지자체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분기별 진행실적 점검	집행실적제출: 연 4회(필요시 추가 제출)	집행실적점검: 직접
장애아동임양육보조금	분기별 진행실적 점검	집행실적제출: 연 4회(필요시 추가 제출)	집행실적점검: 직접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중간정산 및 결산보고서	- 중간정산: 년 1회 - 결산보고서: 매년	- 중간정산: 지자체에서 사업집행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서면 보고 - 결산보고서: 지자체에서 사업집행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서면 보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평가, 결산보고서 등	- 사업평가: 3년주기 - 결산보고서: 매년 - 분기보고: 분기 -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 간담회: 매년 - 만족도 조사: 매년	- 사업평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실적평가 - 결산보고서: 센터에서 사업집행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서면 보고 - 분기보고: 센터에서 사업집행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서면 보고 - 민간 간담회: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만족도 조사: 위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센터 시행
실종아동보호및지원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수시 - 사업평가: 주1회 실적 및 계획보고, 3년 기사업 재위탁 평가 - 결산보고서 평가: 매년	운영방법: 직접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다. 산출 관련 지표 평가

1) 수급자 비율

□ 수급자 비율은 사업별 수혜자 현황(서비스 이용률)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 보조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은 연간 실인원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신청자와 지원자가 구분되지 않음.
- 그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은 신청 건 수 대 지원 수인 수혜율이 23.6~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 수는 현저하게 떨어짐.
 -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인 학대 신고가 되더라도 학대판정을 받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의 예산, 지원인력, 시설공급, 서비스 확대 계획 등이 모두 증가 추세라는 것은 아직도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 신청 건 수 대 지원 수인 수혜율이 85.3%~94.9%로 나타나서 수혜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V-2-19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 수(서비스 이용자 현황)

사업명	신청자 및 수혜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신청 건수(A)	19,214	25,878	34,185
	지원 수(B)	19,214	25,878	34,185
	수혜(충족)율(B/A*100)	100	100	100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신청 건수(A)	3,110	4,095	4,231
	지원 수(B)	830	1,030	999
	수혜(충족)율(B/A*100)	26.7	25.2	23.6

사업명	신청자 및 수혜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지원 수(B)	12,814	13,188	13,764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원 수(B)	315	295	294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 치료지원	신청 건수(A)	330	370	450
	지원 수(B)	297	351	384
	수혜(충족)율 (B/A*100)	90.0	94.9	85.3
	대기자 수	33	19	6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 건수(A)	14,385	13,728	12,896
	지원 수(B)	14,385	13,728	12,896
	수혜(충족)율 (B/A*100)	100	100	10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라. 성과 관련 지표 평가

1)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은 각 사업별로 78%~111.7%로 나타남.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수혜율이 23.6%~26.7%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쉼터 입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서 국내입양추진비율,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및 중앙가정위탁심리치료지원에서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은 연도에 따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것은 상대적으로 입양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표 V-2-20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사업명	연도	성과지표명	목표	달성	달성율	가중치
중앙·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2015년	재학대 발생률(하향지표)	12.0	10.6	111.7	1
	2016년	재학대 발생률(하향지표)	10.5	8.5	119.0	1
	2017년	재학대 발생률(하향지표)	10.0	8.2	117.2	1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및 운영	201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	20.0	23.4	111.7	1
	201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	23.4	23.6	100.8	1
	2017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	23.5	23.8	101.1	1
입양아동양육 수당지원	2015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64.6	99.4	1
	2016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62.0	95.4	1
	2017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53.4	82.2	1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015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64.6	99.4	1
	2016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62.0	95.4	1
	2017년	A. 국내입양추진비율(%)	65.0	53.4	82.2	1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	2015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7.8	26.7	96.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81.0	78.1	96.0	0.6
	2016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9.1	22.8	78.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79.9	77.4	97.0	0.6
	2017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8.0	26.3	94.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78.5	83.1	106.0	0.6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운영 지원	2015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7.8	26.7	96.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81.0	78.1	96.0	0.6
	2016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9.1	22.8	78.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79.9	77.4	97.0	0.6
	2017년	A. 요보호아동 중 가정위탁 비율(%)	28.0	26.3	94.0	0.4
		B. 위탁아동 부모 만족도(점)	78.5	83.1	106.0	0.6
실종아동보호 및지원	2015년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97.0	99.1	102.2	1
	2016년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99.0	99.2	100.2	1
	2017년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99.2	99.5	100.3	1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는 수혜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만족도조사 등으로 구성되었음.

- 성과관리를 위한 간담회 및 만족도조사 뿐 아니라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성과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표 V-2-21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성과 관리 절차

사업명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아동복지법 제47조)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복권기금 사업평가(매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수혜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17년 실적: 입양부모 간담회 6회, 입양기관 간담회 3회),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2018년부터 도입)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수혜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17년 실적: 입양부모 간담회 6회, 입양기관 간담회 3회),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2018년부터 도입)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	위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만족도조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위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만족도조사 - 아동사업 지원기관 적격성 평가
실종아동보호및지원	결과보고서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마. 부문 종합평가

□ 설계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부 측면에서 정책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 조손가족(조부모손자녀 양육가정)에서 학대 이외의 요인인 경제적, 신체적(노화), 지적 요인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현재 아동복지법 요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각각의 법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집행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5억 2,500만원(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에서 356억 2,400만원(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으로 나타남.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사이에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을 제외하면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인력, 이용자수, 시설 공급 현황을 보면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서도 인력수, 시설수, 예산에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사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시설공급에 있어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시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법률변화에 따른 학대 신고 발견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전문가 조사 결과 등에서는 학대 신고가 되더라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격리보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의 시설 공급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1인당 현금지원 및 시설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지역별 서비스 공급률)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장애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 지역가정위탁센터운영현

황에서 17개 시도별로 이용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요보호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접근성을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결국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추진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대체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별도의 중앙지원기관이 존재하여 지역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임.
 -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아동중심이 아닌 기관중심형 또는 보호자중심형 전달체계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음.
 - 아동은 시군구 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뿐 재고를 요청할 통로가 없으며, 시군구에 따라 가용한 자원의 차이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거주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원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음.
 -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가 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사업간 연계가 취약해지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 모니터링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 비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신청건수 대 지원수인 수혜율이 23.6~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수는 현저하게 떨어짐.
 - 이러한 결과는 학대 신고가 되더라도 학대판정을 받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의 예산, 지원인력, 시설공급, 서비스 확대 계획 등이 모두 증가 추세라는 것은 아직도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 사업별로 78%~111.7%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지표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수혜율이 23.6%~26.7%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쉼터 입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는 주로 간담회 및 만족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성과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저소득(또는 빈곤), 장애, 가출 청소년, 시설보호, 한부모/다문화/미혼모·부 가정, 농어촌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회보장평가 사업군에서의 취약계층 부문에 대한 분류는 빈곤, 신체적 취약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으로 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을 평가하고자 함

가. 설계 관련 지표 평가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9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연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적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0-24세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중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대상연령에 차이가 있음.
- 취약계층 사업부문 9개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연령과 소득의 기본적 기

준 하에, 장애와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 등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함께 고려되어 설계되는 구조임.

- 수혜대상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형태가 있으며, 모두 직접지원의 형태를 가짐.
- 지원형태로는 비용지원, 기관지원, 서비스지원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청소년특별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비용지원과 서비스지원이 병행되는 구조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현금지원 및 서비스지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조임.
 - 소득을 기본적 기준으로 하는 만큼, 비용지원의 형태를 띠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V-3-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설계 특성

사업명	선정기준				수혜자지원		지원형태		
	소득	연령	장애	가족 구조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비용 지원	기관 지원	서비스 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		○	○				○
청소년특별지원	○	○			○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	○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		○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		○	○				○
미혼모·부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	○		○	○		○		○

□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관부처와 관련법이 상이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혜대상자 지원연령 또한 상이하게 나타남.

-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18세 미만을 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8세를 포함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 24세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

표 V-3-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지원 대상 연령 기준 구분

사업명	수혜 대상자 연령											
	0세	3세	5세	9세 미만	12세 이하	14세 미만	18세 미만	18세	19세	20세	22세 미만	24세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초기지원												

주: 빗금친 부분은 해당연령임에도 취약중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자 연령에 포함함.

-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분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50%이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 미혼모·부 지원 관련 사업 등 가족구조가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V-3-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구분

사업명	수혜 대상자 소득(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2% 이하	60%이하	72% 이하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주: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이 '60%이하'와 '72% 이하' 2가지임.

- 취약계층 중 상대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이나 자립이 어려운 후기 청소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사업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0~18세까지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특별지원과 같이 18세 이후~24세 연령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2)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 개별 사업별로 지원 대상자 규모 추정은 행복e음, 통계청자료, 조사자료 등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었음.
- 드림스타트 사업, 장애아동수당 사업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추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등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음. 나머지 5개 사업은 자체 조사·보고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있었음.

표 V-3-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자 규모 및 근거

단위 : 명,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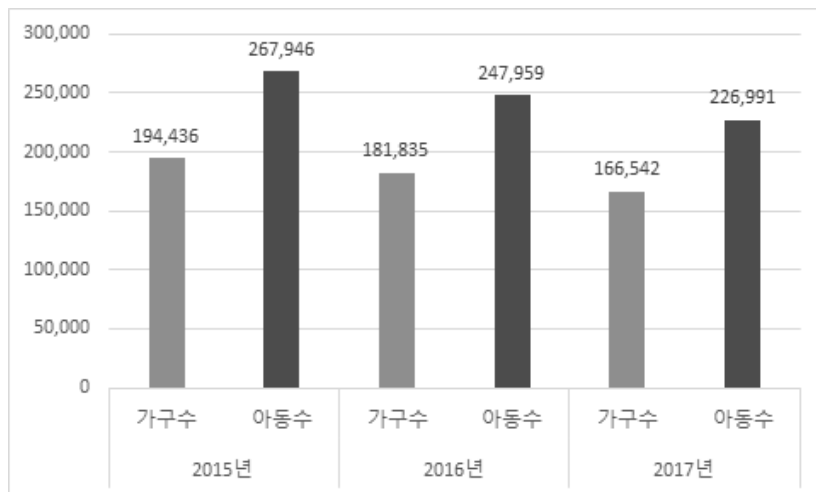
사업명	대상	인원				근거
		2015	2016	2017	201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0~12세 취약계층 아동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67,946	247,959	226,991	227,397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현황 (행복e음)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대상아동 (만0세~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 (만12세~18세미만)	61,000	70,417	71,457	80,000	지자체 조사자료 등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464	19,934	19,323	18,568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통계 (행복e음)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	3,331	3,318	3,318	3,725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명	대상	인원				근거
		2015	2016	2017	2018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192,000	187,000	181,000	-	한부모가족지원 현황 / 실지원인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2,279	2,419	3,040	-	청소년한부모 지원현황 / 실지원인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지원	한부모가구	2,050,000	2,090,000	2,130,000	2,160,000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미혼모·부	-	-	35,088	33,108	2015,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발표자료

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가 단위가 가구 단위이며, 나머지 사업은 명수를 단위로 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연도별 0~12세 취약계층 가구수와 아동수는 보면, 취약계층 가구수는 2015년 194,436가구에서 2017년 166,542가구로 줄었고, 아동수 또한 2015년 267,946명에서 2017년 226,99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V-3-1 ■ 연도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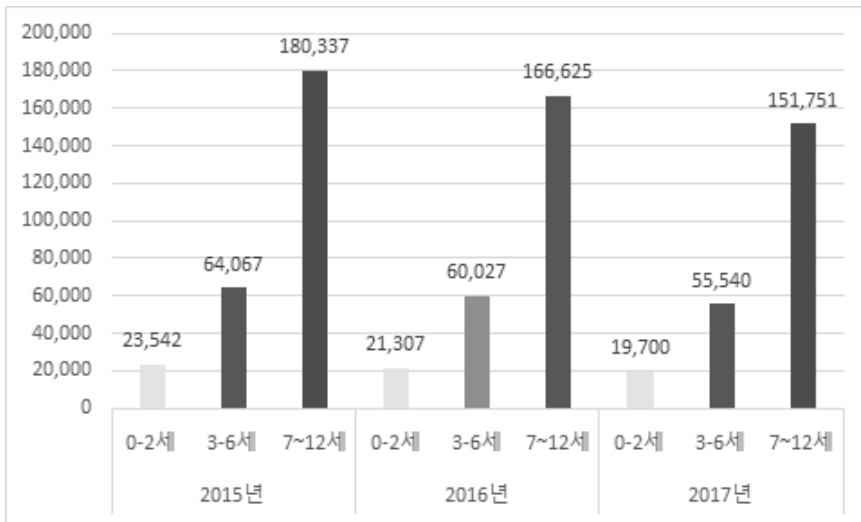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8). 행복e음 추출 자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7년 0~2세 영아는 19,700명, 3~6세 유아는 55,540명, 7~12세 초등학생은 151,751명으로 나타남. 연도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사업 축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그림 V-3-2 ■ 연도별 연령대별 취약 아동·청소년 수(0~12세)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8). 행복e음 추출 자료.

3)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수혜대상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득+장애, 소득+한부모/미혼모·부 등 가족구조 등과 결합하여 대상자에 대한 중복은 방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형태가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용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중복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중복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가 불가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중복 지원의

우려는 없음.

- ☐ 취약계층 중 아동·청소년으로 관련 사회보장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는 없다고 보임.

나. 투입 및 집행관련 지표 평가

1) 투입의 충분성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적 자원/시설 등에 대한 투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

가) 예산 투입 현황

- ☐ 취약계층 부문 사업중에서는 한부모(4개 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장애(2개 사업)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비용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현금지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컸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규모가 상당하였음.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의 경우 소득, 장애, 가구구조의 특성으로 수혜 및 지원 대상이나 선정기준이 명확하여, 사전에 예산규모를 예측하여 적정하게 투입하는 것이 가능함.
-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절대적으로 많고 비용지원 중심으로 투입되는 경향성이 있음. 드림스타트 사업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형태의 사업들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도 예상됨.
- ☐ 전반적으로 예산대비 결산비율이 높아 불용액이 적은 편임.

표 V-3-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결산	예산	결산	예산대비결산	예산	결산	예산대비결산	예산	예산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68,083	68,081	100.0	69,334	69,332	100.0	69,334	69,333	100.0	69,355	
청소년특별지원	1,409	1,409	100.0	1,409	1,409	100.0	1,409	1,409	100.0	1,40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5,443	15,443	100.0	16,108	16,108	100.0	24,940	24,940	100.0	28,240	
장애아동수당(A)	39,719	33,404	84.1	34,922	32,553	93.2	33,721	31,613	93.7	32,428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B)	12,367	12,367	100.0	12,530	12,530	100.0	13,830	13,830	100.0	17,23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C)	96,883	96,883	100.0	96,679	96,679	100.0	123,504	123,504	100.0	122,181	
청소년한부모지원(D)	3,217	3,217	100.0	2,860	2,860	100.0	2,935	2,935	100.0	3,65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E)	6,767	6,376	94.2	6,251	6,227	99.6	3,094	3,080	99.5	2,391	
미혼모·부 초기지원(F)	846	846	100.0	846	846	100.0	846	846	100.0	846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A+B)	52,086	45,771	87.9	47,452	45,083	95.0	47,551	45,443	95.6	49,664	
한부모 아동·청소년 지원(C+D+E+F)	107,713	107,322	99.6	106,636	106,612	100.0	130,379	130,365	100.0	129,070	

주: 청소년특별지원 결산액은 실천행에 기준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2015~2017년 동안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이나 장애아동수당,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줄거나 담보상태에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대상 아동에 대한 연령과 조건 등 신규선정 조건을 확대하여 지원대상 수혜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1년 기초수급아동을 추가 지원대상으로 만12세 확대, 2016년 기초수급아동 가입연령을 12~13세로 확대, 2018년 기초수급아동 가입연령을 12~17세로 확대함.

표 V-3-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68,083	69,334	1.8	69,334	0.0	69,355	0.0
청소년특별지원	1,409	1,409	0.0	1,409	0.0	1,409	0.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5,443	16,108	4.3	24,940	54.8	28,240	13.2
장애아동수당	39,719	34,922	-12.1	33,721	-3.4	32,428	-3.8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2,367	12,530	1.3	13,830	10.4	17,236	2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96,883	96,679	-0.2	123,504	27.7	122,181	-1.1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3,217	2,860	-11.1	2,935	2.6	3,652	24.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6,767	6,251	-7.6	3,094	-50.5	2,391	-22.7
미혼모·부 초기지원	846	846	0.0	846	0.0	846	0.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재원구조는 국비가 2015년 62.4%, 2016년 64.5%, 2017년 63.9%로 국비가 지방비보다 많고 국비비율이 60% 초반대로 나타남.

- 일반회계와 지방비로 매칭되는 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임.

-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현재 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비를 33%를 지원하고 있음.
- 기금과 지방비로 재원이 구성된 사업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미혼모·부 초기지원 포함)(이상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복권기금)임.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특히 재원의 안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금과 지방비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재원의 안정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기금예산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의 출처의 적절성이 문제시되고는 함.

표 V-3-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자원 출처 및 매칭방식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비율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일반회계 + 지방비	65,781	66,832	49.6	66,832	2,500	96.4	66,833	2,500	96.4
청소년특별지원	기금(청소년육성기금) + 지방비	1,409	759	53.9	1,409	775	55.0	1,409	785	55.7
아동발달지원거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일반회계 + 지방비	10,447	4,996	67.6	10,917	5,191	67.8	17,054	7,886	68.4
장애아동수당	일반회계 + 지방비	22,381	11,023	67.0	21,811	10,742	67.0	21,181	10,432	67.0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일반회계 + 지방비	8,043	4,324	65.0	8,206	4,324	65.5	8,960	4,870	64.8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기금(양성평등기금)+ 지방비	72,442	24,441	74.8	72,442	24,237	74.9	92,540	30,964	74.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기금(양성평등기금) + 지방비	2,303	914	71.6	1,970	890	68.9	2,017	918	68.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기금(복권기금) + 지방비	3,491	2,885	54.8	3,418	2,809	54.9	1,846	1,234	59.9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기금(양성평등기금) + 지방비	423	423	50.0	423	423	50.0	423	423	50.0
전체		223,018	134,598	62.4	220,982	68,117	76.4	247,870	77,208	76.2

주: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과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사업의 양성평등기금은 서로의 사업내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나. 인력 및 시설 등 공급 현황

- 공급 현황은 지원 인력 현황, 시설 공급 현황,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력공급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지원단이 있거나 서비스 전담인력이 별도로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작성함.
- 시설공급의 경우에는 드림스타트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등 별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공급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등 현금급여사업인 경우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서비스 공급확대 계획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장애가족양육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 3년간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 6개 사업의 경우 별도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이 없음.
 - 향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비용신청과 서비스 활용 신청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업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V-3-8 Ⅲ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인력 공급 현황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인력수)
	인력수 (A)	이용자수		인력당 인원수 (B/A)	인력수 (A)	이용자수		인력당 인원수 (B/A)	인력수 (A)	이용자수		인력당 인원수 (B/A)	
		연인원	실인원 (B)			연인원	실인원 (B)			연인원	실인원 (B)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969	-	-	-	991	-	-	-	1,039	-	-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종사자수
청소년특별지원	-	1,410	-	-	-	1,627	-	-	-	1,739	-	-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2,073	17,104	2,073	1.0	2,022	17,178	2,022	1.0	2,013	16,961	2,013	1.0	-
미혼모·부 초기지원	17	4,164	1,164	68.5	17	4,273	1,137	66.9	17	4,342	1,198	70.5	사업전담인력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3-9 Ⅲ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시설 공급 현황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시설수)
	시설수 (A)	이용자수		시설당 인원수 (B/A)	시설수 (A)	이용자수		시설당 인원수 (B/A)	시설수 (A)	이용자수		시설당 인원수 (B/A)	
		연인원	실인원 (B)			연인원	실인원 (B)			연인원	실인원 (B)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229	-	-	-	229	-	-	-	229	-	-	-	시군구 드림스타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23	3,469	-	-	122	3,023	-	-	125	2,579	-	-	복지시설 (실인원 미집계)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가자점 기관운영)	17	4,164	1,164	68.5	17	4,273	1,137	66.9	17	4,342	1,198	70.5	사업수행기관 (가점기관)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3-1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단위 : 명, 개

사업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인력 수	4	5	5명	재정당국심의필요
	수급(이용)자 수	80,000	85,000	90,000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인력수	100	100	100	
	수급(이용)자 수	300	300	300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인력 수	17	34		
	시설 수	17	34		
	수급(이용)자 수	1,240	2,480	2,520	실인원으로 누적인원임
	예산(국비)		100% 증액		
	예산(지방비)		100% 증액		

주: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의 서비스공급 확대 사유: '아동수당법'에 시설생활아동은 아동명의
의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입 확대
2)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서비스공급 확대 사유: 사업수행기관 개소수 확대(현재 17개소 → 향후 34개소)
를 통해 미혼모·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업 신청 및 지원 활성화.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지역별로도 지원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의 공급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별 수혜자를 고려한 담당인력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공무원당 지원아동수는 평균 인당 227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인당 평균 140명의 취약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담당공무원은 인당 169명에서 438명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인당 88명에서 200명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인력공급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V-3-11 드림스타트 담당인력 및 지원 아동수 현황

단위 : 명

지역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력	인당 지원아동수	지원인력	인당 지원아동수
서울	93	180	110	152
부산	43	256	66	167
대구	26	215	31	180
인천	35	216	44	172

지역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력	인당 지원아동수	지원인력	인당 지원아동수
광주	15	213	16	200
대전	12	302	21	173
울산	11	245	25	108
경기	93	274	198	129
강원	50	169	72	117
충북	27	239	45	144
충남	34	255	63	137
전북	39	237	65	142
전남	54	241	95	137
경북	59	181	84	127
경남	40	246	79	125
제주	4	438	12	146
세종	2	175	4	88
계	637	227	1,030	140

주: 지원인력은 2017. 8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급여와 서비스지원 방식이며 개인단위 지원이 대부분이며 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행태를 보임.
- 장애나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소득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방식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대상의 중복과 기능의 중복을 피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이는 다른 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현금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생계, 주거, 활동, 법률 등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취지의 제도임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선정과정에서 대다수가 탈락하고 있음(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등과 중복 불가).
 - 또한 대상자 아동, 청소년이 선정되더라도 '가구'에 대한 지원이므로 취약, 위

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

-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크지 않아 지자체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사업임.
- 사회보장제도 내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 서비스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상자 친화적일 뿐 아니라 비용편익도 클 것임.

표 V-3-12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유형

사업명	지원방식		
	현금급여	현물급여	서비스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보건·복지·보육 등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청소년특별지원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주거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	○	○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의 비용구조 방식은 매칭방식이 있으며, 금액 방식은 정액과 한도내 금액 지원의 두 가지가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경우에는 정부와 수혜아동이 1:1 매칭되는 구조이며,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서울은 국비가 50%, 이외 지방은 국비가 70% 매칭하는 구조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내역에 따라 국비가 50~100% 지원되는 구조임.
- 정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수당 형식의 현금급여지원 사업이 있으며, 한도내 금액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이 있음.

표 V-3-13 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

사업명	비용구조		
청소년특별지원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72% 이하(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60% 이하)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시 정부가 동일한 금액(4만원*, 1:1매칭)을 지원 * 2016년까지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 '17년부터 최대 월 4만원으로 인상		
장애아동수당	• 국비,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70%)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지원 - 시간당 단가 7,530원, 본인부담 없음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정액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정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내역사업명	국비(%)	본인부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50~80%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100%	월 임대료, 관리비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50%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100%	사업에 따라 상이
	시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100%	-
미혼모·부 초기지원	• 출산·양육 지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70만 원 이하 지원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양육용품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지원) - '출산·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3)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자원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원아동당 지원금액을 보면 일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곳이 있음. 드림스

타트사업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추출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초기상담 지원실적이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지원인력이나 예산 등 공급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임.
-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지역별로 아동당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아를 합한 아동수이기 때문에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지역별 편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예산 분배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분배할 필요도 있음.

표 V-3-14 취학개층 아동·청소년 부문 주요사업별 지원 아동수 및 예산(2017년)

단위: 명, 백만원

시도	드림스타트			청소년 특별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아동당 지원 금액
	대상 아동수	지원 아동수	지원 비율	지원 아동수	지원 금액 (천원)	아동당 지원 금액	지원 아동수	지원 금액	아동당 지원 금액	돌봄서비스 이용자수	휴식프로그램이용자수	지원 가구수	지원 아동수	지원 금액	아동당 지원 금액	
서울	34,835	16,733	48.0	333	353,711	1.1	2,736	4,551	1.7	434	251	14,078	17,163	20,845.9	1.2	
부산	15,410	11,002	71.4	146	121,122	0.8	1,316	2,087	1.6	281	34	6,882	8,376	9,587.3	1.1	
대구	13,582	5,577	41.1	84	142,303	1.7	1,125	1,721	1.5	151	94	4,601	5,576	6,399.7	1.1	
인천	15,822	7,551	47.7	73	120,909	1.7	1,121	1,890	1.7	210	344	7,324	9,078	10,934.9	1.2	
광주	11,607	3,192	27.5	140	126,006	0.9	862	1,456	1.7	141	76	3,715	4,650	5,567.5	1.2	
대전	8,051	3,625	45.0	46	55,993	1.2	741	1,210	1.6	146	75	3,282	4,070	5,042.5	1.2	
울산	3,389	2,696	79.6	55	102,944	1.9	318	487	1.5	118	0	2,842	3,547	3,235.8	0.9	
경기	42,387	25,461	60.1	213	325,542	1.5	3,556	6,024	1.7	375	112	23,468	29,427	35,513.8	1.2	
강원	7,678	8,427	109.8	65	71,344	1.1	773	1,243	1.6	130	0	3,894	4,843	5,302.4	1.1	
충북	7,542	6,461	85.7	72	69,046	1.0	866	1,262	1.5	125	176	3,478	4,452	5,660.9	1.3	
충남	8,689	8,661	99.7	113	138,026	1.2	821	1,313	1.6	154	0	4,012	5,164	6,352.2	1.2	
전북	15,096	9,244	61.2	107	82,057	0.8	1,265	2,136	1.7	253	260	4,417	5,633	7,299.3	1.3	
전남	11,673	13,032	111.6	90	72,525	0.8	1,066	1,753	1.6	161	36	3,715	4,740	5,961.9	1.3	
경북	12,167	10,684	87.8	121	103,906	0.9	1,231	1,982	1.6	218	0	4,578	5,738	6,968.8	1.2	
경남	14,254	9,843	69.1	63	103,442	1.6	1,126	1,851	1.6	287	89	6,917	8,741	10,744.8	1.2	
제주	4,061	1,750	43.1	16	20,101	1.3	348	561	1.6	137	60	1,994	2,515	3,006.3	1.2	
세종	748	350	46.8	2	2,143	1.1	52	86	1.7	28	0	346	446	581.6	1.3	
계	226,991	144,289	63.6	1,739	2,011,120	1.2	19,323	31,613	1.6	3,349	1,607	99,543	124,159	149,005.7	1.2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4)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들은 연도별로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운영됨.

■ 표 V-3-1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추진계획 여부

사업명	사업추진계획 여부	관련 자료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있음	•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지침)
청소년특별지원	있음	• 2018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있음	• 아동분야 사업안내
장애아동수당	있음	•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있음	• 2018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있음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있음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있음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있음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의 전달체계는 사업별로는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의 기본적 협력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사업총괄을 주로 수행하고, 시·도는 관리감독, 시·군·구는 실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드림스타트,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계좌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에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 수준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여러 개 과(팀)으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단위 사업이 흩어져 있음.
- 또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사업수행기관)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간 대상자 및 정보에 대한 연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결국 공급자가 원하는 대상자를 각자 발굴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대상자도 의뢰나 연계 없이 누수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전반적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와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표 V-3-1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전달체계

사업명	전달체계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보건복지부(총괄) → 시·도(관리 및 운영지원) → 시·군·구(드림스타트 운영)의 기본 전달체계를 지님. • 시·군·구는 지원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수퍼비전, 멘토/멘티를 운영함.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소득확인 (시·군·구) ⇒ 심 의 (운영위원회) ⇒ 통 보 (지원) ⇒ 사례관리 (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 보건복지부 → 지자체(아동발달지원계좌(CDA) 위탁단체) → 수혜자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혜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보건복지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운영기관 → 수혜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수혜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수혜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입소 * 주거·출산·양육 지원 * 자립(교육·취업 등) 지원 * 입소자 상담·치료 ⇒ 국비 지원 임대 주택 입주 ⇔ 〈임대주택 운영기관〉 * 양육·취업 등 지원 * 지역자원 연계 * 상담 ↑ 〈한부모 상담전화〉 * 입소상담 * 지원안내 ↑ 여가부 기능 보강 상담 치료 ↑ 지자체 운영비 지도· 감독 ↑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종사자 교육 ↓ 퇴거 ↓ 퇴소 자립 한부모 가족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상담 * 자조 모임 * 가족관계 회복 * 문화생활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 여성가족부 → 지자체·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 수혜자 -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자체예산 확보 및 홍보,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종사자교육, 컨설팅 제공 등 기타 사업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제출, 사업홍보, 지원대상자 모집, 상담 및 서비스 등 제공, 지역 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5) 모니터링의 체계성

□ 9개 모든 보호사업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이루어지는 결산보고와 사업평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있음.

- 사업에 따라 분기, 수시, 연1회 등 횟수와 주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현장점검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연구를 수행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의 경우 3년 주기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소득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자격정비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운영방법은 직접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용역 및 산하기관 위탁모니터링의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소득과 연령이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중요한 만큼 최소 분기별로 시스템 등을 통해 자격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표 V-3-1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모니터링 체계

사업명	모니터링 실시 여부	모니터링 형태	운영방법	
			횟수	방법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실시	운영평가 효과연구	연1회 매년	중앙/지방 점검위원회, 연구용역
청소년특별지원	실시	현장점검 결산보고	수시 매년	직접 및 지자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실시	월별보고 합동평가	월별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장애아동수당	실시	현장점검 결산보고	연1회 매년	직접 및 지자체 결산시 방문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실시	현장점검 사업평가 결산보고	연1회 매년 매년	직접 및 지자체 산하기관 위탁 지자체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실시	자격정비, 실적점검	분기 수시	직접 및 지자체

사업명	모니터링 실시 여부	모니터링 형태	운영방법	
			횟수	방법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실시	자격정비 실적점검	분기 매년	직접 및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실시	현장점검 사업평가	수시 3년주기	직접 및 지자체 산하기관 위탁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실시	현장점검 사업평가	연1회 매년	지자체 직접 및 지자체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다. 산출 관련 지표 평가

1) 수급자 비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부문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고, 가구소득, 장애, 한부모가족 여부, 중복수혜여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임. 그럼에도 부처별로 제출된 실적자료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실적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현금 및 현물 등이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방문상담 등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 특성상 신청 건수 및 대기자 수 등을 특정할 수 없음.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위기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지원건수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장애아동수당은 타 보장(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장애인) 책정여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함.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 한 후 소득이 적합한 경우에 장애아동이 있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므로 수혜율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함.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신청대비 지원 수혜율이 2015년 92.2%, 2016년 90.9%, 2017년 88.1%로 다소 줄어들고 있음.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타 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혜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은 신청건수를 미집계하고 있으며, 지원자 수는 시설 입소자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예산의 감소와 함께 수혜자수가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스스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낙인효과를 우려해 신청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지원 실적이 사업별로 관리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가 약한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 V-3-18 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신청자 및 수혜자 수

단위: 건, 명,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125,562	134,853	144,289	
청소년특별지원	지원(건)	6,456	7,497	8,437	
		1,415	1,580	1,74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명)	61,000	70,417	71,457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아동수
장애아동수당	지원	20,464	19,934	19,3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신청	3,613	3,649	3,802	
	지원	3,331	3,318	3,349	
	수혜율	92.2	90.9	88.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지원	171,340	98,294	101,21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지원	2,279	2,419	3,0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지원	3,469	3,023	2,579	입소자수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운영)	지원	1,164	1,137	1,198	

주: 1)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의 수혜자 지원 실적은 초기상담 대상아동수임.
 2)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지원 건수임.
 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의 실적은 실인원, 의무지출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지원 수준의 충분성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이라는 서비스 대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행복e음이나 각종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추정하여 실제적인 수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원수준과 내용이 실제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만큼 충분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 수준에 대한 준거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즉, 최저생계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라. 성과 관련 지표 평가

1)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목표대비 성과 달성률은 성과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여부와 성과달성정도를 파악하고,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부문의 경우 부처 이원화 등 사업추진 주체와 방식이 상이하고 사업별 지원 내용이 달라 일률적 평가가 어려움.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는 수혜아동의 정서·심리 안녕감을 지표로 하여 100점 중 75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치 100%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다른 지표로는 드림스타트 수혜아동수를 상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혜아동수를 100% 이상 상회하고 있음.
 - 향후에는 수혜연령별로 정서·심리 안녕감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가 있는지 등 개인별 추적도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추가로 발달뿐만 아니라 건강 등에 대한 종합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평균 매칭지원금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연간 총 지원받은 금액을 연간 총 저축한 아동의 누적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 2015년~2016년의 경우에는 목표대비 100% 이상 충족하였으나, 2017년은 목표달성률이 89.6%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2017년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매칭금액을 인상하여 2017년 매칭금액 실적 이 기존 2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상승한 것을 볼 때 매칭금 인상효과는 있다고도 보임.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양육비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5점척도로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만족도는 매년 목표치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설정은 다소 낮아 보여 목표치 설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모두 목표치를 100%이상 충족하였음.
 - 그러나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의 지표 또한 만족도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지표로 타당한지 의문임.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의 경우는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학용품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은 입소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이미 입소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이외에도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공급 지원확대나 수혜자 증대 등도 성과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사업이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가 성과지표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찾아내어 지원한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하여 서비스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표 V-3-19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성과지표

단위: 점, 명, 원, %

사업명	성과 지표 유무	성과지표명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달성	달성률	가중치	목표	달성	달성률	가중치	목표	달성	달성률	가중치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있음	아동의 정서·심리 안녕감	75	75.57	100.8	0.6	75	75.89	101.2	0.6	75	76.75	102.3	0.6
		드림스타트 수혜이동수	102,200	125,562	122.9	0.4	129,328	134,853	104.3	0.4	138,898	144,289	107.8	0.4
청소년특별지원	없음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아동장)지원	있음	요보호 아동1인당 월평균매칭금	23,200	25,294	109.0	1.0	25,300	25,360	100.2	1.0	33,900	30,391	89.6	1.0
장애아동수당	없음	-	-	-	-	-	-	-	-	-	-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없음	-	-	-	-	-	-	-	-	-	-	-	-	-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지원	있음	한부모가족 자녀 만족도	71	71	100.0	1.0	72	72.3	100.4	1.0	73	73.4	100.5	1.0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있음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만족도	88.5	88.5	100.0	1.0	88.6	89.9	101.5	1.0	-	-	-	1.0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수	-	-	-	-	-	-	-	-	1,080	1,197	110.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81	86	106.0	1.0	86.1	83.1	97.0	1.0	83.5	83.7	100.0	1.0
미혼모·부 초가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있음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자 만족도	88.5	88.5	100.0	1.0	88.6	89.9	101.5	1.0	88.8	89.7	101.0	1.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성과관리에 대한 절차로 보고서나 결과물, 실태조사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에는 효과성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네트워크 대회 등 성과공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도 있음.
-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현장점검을 통한 우수기관 포상과 함께 하위등급기관 컨설팅을 하는 등의 성과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가입아동 현황, 적립금, 매칭지원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매월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하고 있었음.

표 V-3-20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성과관리 절차 유무

사업명	성과관리 절차 유무	성과관리 내용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 점검 결과서 - 시군구별 미흡사항에 대한 분석자료 개별 통보 - (결과환류)우수지역에 대한 포상 및 미흡지역에 대한 컨설팅
청소년특별지원	있음	• 만족도 조사 *해당 시·군·구에서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를 조사·분석 관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있음	• 민간보조사업의 매년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감독 • 지자체 월별 실적 등 확인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 활성화 추진,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등 • 가입아동의 현황 및 적립금, 매칭지원금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추진정도를 지속적 관리 보고 • 합동평가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 아동비율 및 기초수급아동·가정위탁아동 가입 지표 반영
장애아동수당	있음	• 복지광장 등 담당 공무원의 개선 요구 반영 • 연말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실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있음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있음	• 사업만족도 결과보고 • 한부모가족네트워크 대회 - 우수사례 등 사업성과공유 등 • 유공자 포상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있음	• 사업실적 보고 • 유공자 표창

사업명	성과관리 절차 유무	성과관리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여)	있음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유공자 표창 실시
미혼모·부 초기지원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 기관운영)	있음	• 연1회 현장점검을 통한 우수기관 포상 및 하위등급기관 컨설팅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마. 부문 종합평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은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사업 9개를 평가함.

□ 설계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등 관련 사업의 주관부처와 관련법이 달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연령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대상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됨.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드림스타트 이후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단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 사업부문의 지원 대상자 규모 추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특성상 행복e음이나 통계청자료 등을 통해 시스템상에서 지원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혜대상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득+장애, 소득+한부모/미혼모·부 등 가족구조 등과 결합하거나, 타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 등의 방법을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있어 사업간 중복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임.

□ 집행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한부모 관련 4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7년 1,3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동수당이 320억원 규모,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약 700억원 규모로 크게 나타남. 예산대비 결산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취약계층의 특성상 급여성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지원 사업인 경우는 매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재원구조는 국비가 2015년 62.4%, 2016년 64.5%, 2017년 63.9%로 국비가 지방비보다 많고 국비비율이 60% 초반대로 나타남.
- 인력이나 시설공급은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장애가족 양육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등 3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서비스접근성과 수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급-수요간 편차를 고려하여 인력이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임.
-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급여와 서비스지원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기본으로 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자원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예산 분배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파악과 인력/시설 등의 공급 확대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임.
- 개별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지침에 의해 전달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다만 사업담당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도 여러 담당부서로 사업이 흩어져 있어, 유기적 협력·연계가 되어 대상자의 누락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의 특성상 일부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지원자가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부문 사업은 지원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고, 가구소득, 장애, 한부모가족 여부, 중복수혜여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대부분의 사업이 지원대상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수혜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정책 지원 대상이 발견되지 않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들은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의 경우, 해당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거나 사업의 여러 지원내용 중 특정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대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성과목표치의 경우에도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이전년도 실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도전적이지 못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향후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는 각종 보고서와 결과물, 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임.

4 학교밖 및 위기 아동, 청소년 부문 평가 결과

가. 설계 관련 지표 평가

1)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및 모수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을 보면 각 사업들이 관련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지원대상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모수 역시 해당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부처에서 특정하고 있음.

표 V-4-1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9~24세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상담채널 운영	9~24세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9~24세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WEE프로젝트상담 지원	국립학교의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 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조기 진단 및 치유	학생· 학부모 등 (국립부설학 교 33곳)	국정과제 54-2-3(학교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 우개선)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근거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학교밖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만9세~만24세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출청소년보호쉼터 운영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가출청소년 (9세~24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등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40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몇 가지 측면에서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 밖에 있으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들이 존재함.
- 이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을 중퇴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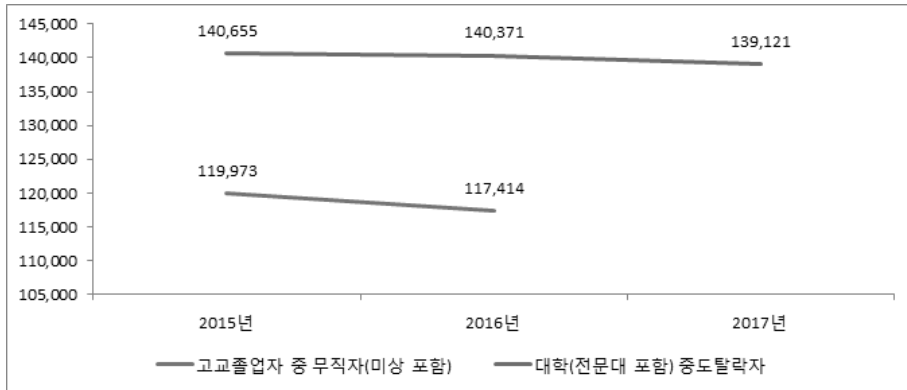
표 V-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조항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현재 고교 졸업자 중 미상을 포함하여 무직자는 2016년 현재 12만 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 학업중단자는 14만 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연령 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정책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이들을 정책 대상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또 다른 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곳이 학교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그림 V-4-1 ■ 고교 졸업자 중 무직자(미상 포함)와 대학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018.10.18. 인출.
2) 김해영 의원실 보도자료(2018.10.12.).

-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경우 정책 대상을 24세까지 정하고 있으나 전체 청소년 중 40%를 차지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은 5%미만만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임(서미, 2017).
- 9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정책 대상 중 특정 연령인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상담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집단별로 균형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로는 8가지가 있음.

-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 자료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2015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초4, 중1, 고1), 학교밖청소년지원(2016년 학업중단현황(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경찰청 성폭력 사건 분석 통

계) 등임.

-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자료만으로는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모수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은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지속된 경우나 학생이지만 가출, 비행, 범죄 등으로 학교 밖에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정확한 추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정자료(주민등록인구,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해당 연령의 인구수에서 학생수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 중임.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대표성을 갖는 표본추출방법으로 가구조사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이는 가구조사 시 해당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통계청 승인통계를 활용해 정확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V-4-3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

구분	대상자/ 모수 (추정치)	2015	2016	2017	2018	모수 추정 근거 자료	단위: 명, 천단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대상자	9~24세 청소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모수(추정치)	9,654천명	9,467천명	9,249천명	8,990천명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대상자	9~24세 청소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모수(추정치)	9,654천명	9,467천명	9,249천명	8,990천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대상자	9~24세 청소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모수(추정치)	9,654천명	9,467천명	9,249천명	8,990천명		
WEE프로젝트상담지원	대상자	-	-	-	-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경우,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이므로 사전 에 규모 파악 어려움	
	모수(추정치)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여기능해소	대상자	과외존 위험군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초4, 중1, 고1)	
	모수(추정치)	208,446명	198,642명	202,436명	196,337명		
학교밖청소년지원	대상자	초·중·고등학교 졸업중단학생				학업중단현황(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개발원)	
	모수(추정치)	47,070	47,663				
	대상자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규모추정(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모수(추정치)	387,403	358,468				
기출청소년보호상담 센터	대상자	9~24세 청소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모수(추정치)	9,654천명	9,467천명	9,249천명	8,990천명		
성폭력피해이동청소년 전용상담운영지원	대상자	676	725	776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경찰청 성폭력사건 분석 통계)	
	모수(추정치)	8,290	7,791	8,706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	대상자					성매매 피해대상 청소년은 성매매 사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 므로 모수를 추정할 수 없음	
	모수(추정치)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3)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정책 대상으로 학생(교육부), 아동(보건복지부)과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구분되고 정책추진주체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유사한 연령대의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추진주체의 차이는 사업군 내뿐만 아니라 사업군을 넘어서는 다른 사업 간에 중복 문제를 발생하며 필수적으로 상호보완관계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줌.
 - 델파이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아동복지사업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사업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최근 아동복지사업이 일반 청소년, 청소년복지사업이 위기아동·청소년 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면서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사업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정책 대상이 처한 상황(학교 밖, 학교 폭력, 가출, 성폭력 등)에 따라 대응책으로 마련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되거나 사업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어려움을 다루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WEE프로젝트 상담지원 등은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을 가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모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나 WEE프로젝트 상담지원은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으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가출, 성폭력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연계와 사업추진 주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델파이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일괄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상담복지센터 위탁형태로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함.
- 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이 2~3명 수준으로 법령에 따라 별도

의 센터를 두기보다는 CYS-Net이나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나. 투입 및 집행관련 지표 평가

1) 투입의 충분성

가) 사업별 예·결산 현황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비는 97.7%~100%로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99.7%에서 100%로 높았으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과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사업, 가출청소년보호쉼터 운영 지원사업은 매년 100%의 예산 대비 결산비를 보여주고 있음.

- WEE프로젝트 상담지원은 99% 이상의 예산 대비 결산비를 보여주다가 2017년 97.7%로 다소 낮아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7년 100% 집행으로 예산 대비 결산비가 다소 상승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7년 사이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은 2016~2018년 동안 예산증가율이 9.4%~16.7%로 나타났고,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도 7.0%~26.6%로 나타나 빠른 증가율을 보임.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은 3년 동안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피해 청소년이 늘거나 주는 문제 발생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발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각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함.

- WEE프로젝트상담지원 및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는 예산이 증가한 다음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 수준이 안정화된 단계로도 볼 수 있음.

표 V-4-4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비	예산	예산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10,873	10,868	100.0	12,072	12,032	99.7	12,568	12,539	99.8	12,94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1,971	1,971	100.0	1,971	1,971	100.0	1,971	1,971	100.0	2,06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6,801	6,800	100.0	7,449	7,449	100.0	8,146	8,146	100.0	9,503	
WEE프로젝트상담지원	1,313	1,313	100.0	1,463	1,463	100.0	1,562	1,562	100.0	1,669	
매체활동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4,696	4,696	100.0	4,795	4,795	100.0	5,690	5,690	100.0	5,331	
학교밖청소년지원	16,767	16,618	99.1	21,289	21,061	98.9	23,483	23,483	100.0	24,640	
가출청소년보호센터 운영지원	10,002	10,002	100.0	12,666	12,666	100.0	13,565	13,565	100.0	15,570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문 상담운영지원	961	-	-	980	-	-	979	-	-	979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1,100	1,096	99.6	1,063	1,055	99.2	1,067	1,057	99.1	1,036	

주: 1) '성폭력피해지원시설(30개소) 운영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문상담터(특별지원 보호시설 4개소)만의 자료 없음.

2)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4-5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	전년 대비 증감률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12,072	11.0	12,568	4.1	12,946	3.0
청소년사이버상담 센터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1,971	0	1,971	0	2,060	4.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7,449	9.5	8,146	9.4	9,503	16.7
WEE프로젝트 상담지원	1,463	11.4	1,562	6.8	1,669	6.9
매체활용능력증진및 역기능해소	4,795	2.1	5,690	18.7	5,331	-6.3
학교밖청소년지원	21,289	27.0	23,483	10.3	24,640	4.9
가출청소년보호쉼터 운영지원	12,666	26.6	13,565	7.0	15,570	14.7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운영 지원	974	1.4	979	0.5	979	0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063	-3.4	1,067	0.4	1,036	-2.9

주: 전년대비 증감률은 (금년도 예산-전년도 예산)/전년도 예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별 재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을 보면 국비 비율은 50.0%~100%로 나타났고, 2015~2017 사이에 국비 비
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재원 출처 및 매칭 방식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이 기금(청소년육성기
금)과 지방비 매칭 방식이었고,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이 일반회계임.
- 매체활용능력및역기능해소는 일반회계와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은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지방비 매칭,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은 기금(청소년육성기금)으로 나타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은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금과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V-4-6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자원 매칭 방식 및 비율(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자원 출처 및 매칭 방식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비율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10,868	10,823	50.1	12,032	11,987	50.1	12,539	12,423	50.2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1,971	-	100	1,971	-	100	1,971	-	1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6,800	6,790	50.0	7,449	7,440	50.0	8,146	8,137	50.0
WEE프로젝트 상담지원	일반회계+특별회계	1,313	-	100	1,463	-	100	1,562	-	100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일반회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4,696	-	100	4,795	-	100	5,690	-	100
학교밖 청소년지원	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11,167	5,451	67.2	14,692	6,369	70	15,842	7,637	67.4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기금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9,086	9,086	50	12,102	12,102	50	13,019	13,019	50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운영지원	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지방비	691	270	71.9	704	276	71.8	696	283	71.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1,096	-	100	1,055	-	100	1,057	-	100

주 :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특별회계(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예산과 결산 등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과 비교하여 1인당으로 환산한 예산 투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입의 충분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청소년예산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독일의 1인당 청소년 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독일의 1/4, 일본의 1/2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의 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다만, 해당 예산은 청소년예산 총액으로 본 연구의 특정 사업에 국한한 예산의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음.
 - 국가별 지원 사업의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예산 규모를 국제비교하기는 어려움.
- 전반적인 청소년예산 총액 규모 자체가 적은만큼 해당부분의 예산 책정도 넉넉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표 V-4-7 주요국 청소년예산 비교(2013)

구 분	청소년 예산	원화 환산	청소년인구4)	1인당 예산
한국 ¹⁾	6,019,791백만원	6,019,791백만원	1,004만명(9세-24세)	599,600원
독일 ²⁾	35,526백만유로	46,058,657백만원	2,245만명(27세 이하)	2,051,600원
일본 ³⁾	3,303,493백만엔	33,452,117백만원	3,551만명(30세 미만)	942,100원

주: 1)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European Union(2016). EU Youth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독일의 인구 수는 Eurostat database(<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3) 内閣府(2013), 「子ども・若者白書」.
 4) 각 국가별 청소년법률에 따른 2013년 현재 청소년 연령 인구이며 해당 연령은 괄호에 표기하였음.
 자료: 정은진·김기현(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에서 재인용함.

나) 서비스 공급 현황

□ 서비스 공급 현황은 지원 인력 현황(이용자수 현황 포함), 이용자수 현황, 시설 공급 현황,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원 인력 현황

- 지원 인력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은 지원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사업들은 지원 인력 규모에 변동이 없음.
- 이용자수 현황을 보면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는 실인원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다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 혹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한 경우에도 상담 건수로 모두 합산되므로, 실적이 과대하게 잡히는 문제가 있음.
- 실적의 관리는 건 수가 아닌 인당(아동·청소년)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표 V-4-8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지원 인력 현황

단위: 명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648	714	720	72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85	85	85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1,044	1,066	1,146	1,261	
WEE프로젝트상담지원	2,089	2,182	2,297	2,911	WEE프로젝트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인력을 모두 합산한 수치임.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484	484	484	484	인력 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기재함
학교밖청소년지원	446	540	559	574	
가출청소년보호 쉼터운영지원	714	714	738	780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 쉼터운영지원	28명	28명	28명	28명	시설당 7명의 인건비 지원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표 V-4-9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이용자수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이용자수/ 상담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연인원				자료없음
	실인원	224,792	186,336	178,12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연인원				자료없음
	실인원	34,775	35,710	38,456	
WEE프로젝트상담 지원	상담건수	1,475,816	1,477,915	1,493,283	WEE클래스 상담 건수
	상담건수	795,728	401,974	371,888	WEE센터 상담 건수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연인원	151,664	147,395	153,399	인력 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을 기재
	실인원	34,221	41,270	43,006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운영 지원	연인원	106	84	85	시설당 7명의 인건비 지원
	실인원	61	57	61	

□ 시설 공급 현황

- 시설공급현황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은 매년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표 V-4-10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시설 공급 현황

단위 : 건, 개소, 명

사업명		시설 수 / 이용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WEE 프로젝트 상담지원	클래스	시설 수		6,191	6,382	6,624	6,965	개소
		상담건수		1,475,816	1,477,915	1,493,283	-	건
	센터	시설 수		198	204	209	215	개소
		상담건수		795,728	401,974	371,888	-	건
학교밖청소년 지원		시설 수		199	202	202	206	개소
가출청소년 보호쉼터운영지원		시설 수		119	119	123	130	개소
		이용자 수	연인원	25,012	30,329	31,197	-	명

사업명	시설 수 / 이용자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	시설 수		4	4	4	4	개소
	이용자 수	연인원	106	84	85	-	연도 중 입소자 전체
		실인원	61	57	61	-	연도말 기준 현원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사업 부문의 모든 사업들이 2019~2021년 동안 사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는 해당 부문 사업들에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서비스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표 V-4-11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확대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개소

사업명	인력·시설·수급자 수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유(근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인력 수		+18	+18	+15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확정사업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의 거하여 전국 시· 도 및 시·군·구에 CYS-Net 확대 구축 필요
	예산	국비	13,716	14,740	15,566	단위: 백만원	-
		지방비	13,666	14,540	15,46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력 수		+55	+61	+69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확정사업	위기 청소년에게 적기에 개입하기 위하여 청소년동 반자 확충 필요
	예산	국비	10,636	12,078	13,769	단위: 백만원	-
		지방비	10,626	12,068	13,759		
매체활용능력증 진 및 역기능해소	인력 수		33	70	50	*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 계획임	국정과제에 포함 됨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53-2) 중 청 소년 미디어 중독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가 포함)
	예산	국비	1,138	2,523	2,139	* 인력 수 및 예산은 전년 대비 추가되는 분만 작성	

사업명	인력·시설·수급자 수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유(근거)
학교밖 청소년지원	인력 수		+17	+17	+19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정과 제 5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시설 수		+8	+8	+11	-	
	수급자 혹은 이용자 수		62,000	64,000	66,000	학교밖청소년 연계인원(명)	
	예산	국비	21,792	23,655	25,932	백만원	
		지방비	9,339	10,137	11,113	백만원	
가출청소년보호 센터운영지원	인력 수		+48	+48	+54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확정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31조
	시설 수		138	146	155	-	
	예산	국비	18,973	24,387	27,747	-	-
		지방비	17,920	22,987	26,582	-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센터 운영지원	인력 수		32	32	32	시설당 1명(7→8명) 총원 필요
시설 수		4	4	4	-	-	
수급자 혹은 이용자 수		70	70	70	정원	-	
예산		국비	714	714	714	백만원	-
		지방비	290	290	290	백만원	-

주: +로 표기된 부분은 전년대비 순증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2) 지원방식의 적절성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이용 청소년 본인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지원 또는 시설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일단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중 서비스 이용자 비중을 산출하는 등의 지표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3)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지역별 서비스 공급률)

-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데, 지원을 받은 학교밖 청소년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음.
- 이는 학교밖 청소년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연도별 지역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수는 <부표 V-4-13>~<부표 V-4-15> 참조.
 -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은 지역이 있는 것인지,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률이 차이를 보여 사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4) 추진방식의 적절성

- ☐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사업 추진 방법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사업 추진 방법은 사업유형 및 전달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에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WEE프로젝트상담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및 역기능해소,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은 서비스 지원이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쉼터운영지원은 지자체경상보조,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은 시설 운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달체계는 대체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사업별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상이한데다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체계가 구성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특히 사례 관리가 지역센터별로 이뤄짐에 따라 아동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표 V-4-12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추진 방법

사업명	사업유형	전달체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50%)	중앙부처→지자체→사업운영기관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및 가족·친구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운영	서비스 지원	중앙부처→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사업운영기관(매년 공모)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50%)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전국 청소년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짐
WEE프로젝트상담지원	서비스 지원	국립부설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제공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바우처 및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치료협력병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협력체계
학교밖청소년지원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중앙지원기관),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와 협력하는 형태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지자체경상보조 (보조율 50%)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전국청소년쉼터의 협력체계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 쉼터운영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보조율, 70%)	중앙부처→지자체→사업운영기관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운영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치료보호·숙식 제공 - 여성폭력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교육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감독) → 중앙교육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대상자 지역센터 연계 및 총괄관리) → 지역교육센터(10개소, 지역센터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각 사업들은 별도의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갖추고 있음.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기적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표 V-4-13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 지침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사업지침 (2018년 모바일 상담 및 사이버상담 보조사업자 공고) * 매년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시행 하고 있음

사업명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 지침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사업 지침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WEE프로젝트상담지원	2018년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2018년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
학교밖청소년지원	2018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포함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사업지침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2018년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2018년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안내서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5) 모니터링의 체계성

□ 모니터링의 체계성은 사업 모니터링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형태, 운영 횟수(주기), 운영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모니터링 형태 및 운영 횟수(주기)는 현장점검(연 1회, 연 4~5회, 수시), 사업평가(3년, 매년, 분기별), 결산보고서 평가(연 1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방법은 지역운영기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 보고서를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V-4-14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모니터링 현황

사업명	모니터링 형태	운영 횟수(주기)	운영방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 연 1회 - 사업평가 : 3년주기 (법정평가) - 결산보고서 평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지자체 - 사업평가 : 위탁, 산하기관 수행 - 결산보고서 평가 : 지자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운영	친절도 조사 및 결산보고서 평가	- 친절도 조사 : 연 2회 - 사업평가 : 3년주기 (법정평가) - 결산보고서 평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 사업평가 : 위탁 - 결산보고서 평가 : 직접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현장점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 연 1회 - 결산보고서 평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지자체 - 결산보고서 평가 : 지자체

사업명	모니터링 형태	운영 횟수(주기)	운영방법
WEE프로젝트상 담지원	운영·상담실적 현황 파악, 집행결과 및 만족도 파악	- 매년	- 운영·상담실적 현황, 집행결과 파악: 직접 - 만족도 조사: 위탁기관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해소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 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 연 4~5회 - 사업평가 : 매년 - 결산보고서 평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 사업평가 : 직접 - 결산보고서 평가 : 직접
학교밖청소년 지원	현장점검, 결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수시 - 집행실적 점검 : 상반기 - 결산보고서 점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지자체 - 결산보고서 작성 : 지자체
가출청소년보호 쉼터운영지원	현장점검·컨설팅 및 사업평 가, 결산 및 정산보고서 평 가	- 현장점검 : 연 1회 - 사업평가 : 3년주기 - 결산 및 정산보고서 평가 : 매년	- 현장점검 : 직접, 지자체 - 사업평가 : 산하기관 수행 - 결산 및 정산보고서 평가 : 지자체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 운영지원	현장점검 및 감사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현 장점검을 실시하여, 보호 시설의 운영실태, 입소자 관리 현황, 운영비 집행 상황 등을 확인	- 실적점검: 연 2회 (6월말, 12월말 기준) 입소자 현황 및 지원실적 점검 - 시설평가: 3년마다 시설평가 실시	-
성매매피해 청소년치료·재활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결 산보고서 평가	- 현장점검 : 연1회 - 사업평가 : 분기별 - 결산보고서 평가 : 연1회	- 현장점검 : 지역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등 - 사업평가 : 분기별 사업보고 및 연차보고서 제작·배포 - 결산보고서 평가 : 여성가족부,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다. 산출 관련 지표 평가

□ 산출 관련 평가 지표는 수급자 비율과 요구 충족률로 나누어짐.

- 수급자 비율은 대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 대비 실제 급여를 받는 자의 비율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분야는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사업 신청자 대비 지원 비율로 고찰함.
 - 요구 충족률은 실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수급한 자의 급여액 혹은 서비스

등이 사업군이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이 평가군에 포함된 여러 사업에 사업 성과로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성과 평가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함.

□ 지원 대상 충족률은 이 평가군의 사업들이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발굴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충족률을 계산하기 어려움.

- 사업추진 부처에서 충족률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WEE 클래스 상담지원, 가출청소년보호지원 운영,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 등임.

□ 지원 대상 수혜율을 제시한 사업들은 충족률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은 사업 지원자가 곧 신청자로 보고 100% 충족률로 제시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시설, 기관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한 인원을 신청으로 보고 실제 지원자 수로 충족률을 제시하였음.
-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사업은 전체 서비스 대상자인 과의존 위험군을 신청가능한 전체 총 숫자로 보고 이중에서 실제 지원한 수로 충족률을 제시하였음.
- 지원 대상에 대한 충족률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사업처럼 지원을 받을 대상을 분모로 지원자 수를 분자로 정해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 V-4-15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지원 대상 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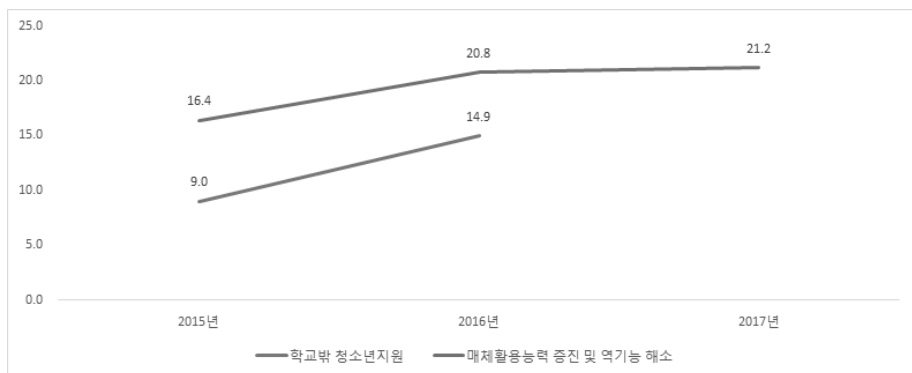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	지원	수혜율	신청	지원	수혜율	신청	지원	수혜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224,792	-	-	186,336	-	-	178,128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	지원	수혜율	신청	지원	수혜율	신청	지원	수혜율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운영 /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396,460	396,460	100.0	429,910	429,910	100.0	434,574	434,574	10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34,775	-	-	35,710	-	-	38,456	-
WEE프로젝트 상담지원	-	8,404	-	-	10,452	-	-	12,925	-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해소	208,446	34,221	16.4	198,642	41,270	20.8	202,426	43,006	21.2
학교밖청소년 지원	36,468	33,718	92.0	55,909	53,553	96.0	68,459	65,685	95.9
가출청소년보호 쉼터운영지원	-	25,012	-	-	30,329	-	-	31,197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전용 쉼터운영지원	-	61	-	-	57	-	-	61	-
성매매피해 청소년치료· 재활	1,052	1,055	100.0	1,060	1,274	120.00	1,067	1,471	138.0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그림 V-4-2 전체 지원 대상 기준 수혜자 충족률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지원 대상 수혜율을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사업 혜택을 본 경우로 2017년의 경우 아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모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6년까지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2015년 수혜율은 9.0%였으나 2016년 14.9%로 증가하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매체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증진사업은 전체 서비스 대상자인 과의존 위험군 중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 지원 대상 수혜율은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한 후 2017년의 경우 2016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라. 성과 관련 지표 평가

- 성과 관련 지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과 성과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사업 부문의 사업추진주체가 제시한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은 각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의 난이도를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성과지표는 CYS-Net서비스 위기변화도(단위:%)로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들의 위기상태에 개선되었는지를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음. 목표치는 매년 1.5%p씩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가족복귀와 자립률로 목표치는 2%p 내외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달성률은 10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는 인원수를 성과 달성률로 제시하고 있음. 연계율을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복귀와 취업, 훈련을 받는 비율 등으로 성과 달성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는 A.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치유서비스 지원율과 B. 인터넷치유캠프 참여청소년 중독개선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A는 산출지표에서 다루었으며 B를 살펴보면, 매년 0.5%p 내외로 평가지표의 목표를 상향하고 있으며 100% 이상 성과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음.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사업은 A.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B. 교육프로그램 참여생 수, C. 교육만족도, D. 사회복귀율 등을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 중임. 이 중에서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에 가장 근접하는 성과지표는 사회복귀율임. 사회복귀율은 90% 이상이어서 92.6%로 고정하고 매년 사회복귀율이 이보다 높게 혹은 낮게 나왔는지를 측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사회복귀율은 100%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에는 98.8%로 낮아짐.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산출에서 요구 충족률로 볼 수 있는데 교육만족도는 4.33점으로 고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100%의 충족률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과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은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을 담당부처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단,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지원을 별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상담소, 보호시설 전체 지원 실적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해 그 결과를 사업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있음
 - 별도의 성과 달성률 측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은 청소년상담 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친절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있음.
- WEE프로젝트상담지원은 WEE센터 상담 만족도 및 WEE클래스 상담 만족도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제시함.

표 V-4-16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7.0	17.9	105	18.5	20.1	109	20.3	20.4	101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88.3	89.9	102	90.1	90.2	100	90.3	90.3	100
WEE프로젝트상담지원	90	89.2	99.0	89.5	89.6	100	90	93	103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70.3	70.3	100	70.5	72.5	122	71.1	72.5	102
학교밖청소년지원	-	-	-	신규	55,909	-	57,000	68,459	120
가출청소년보호쉼터운영지원	26.5	29.7	112	29.9	30.9	103	31.1	32.4	104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	92.6	95.5	103	92.6	96.4	104	92.6	91.5	98.8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다음으로 성과 관리 절차로 대부분 우수기관이나 우수 실무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형태의 관리 절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은 성과 관리 절차로 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제시하였음.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우수 동반자에 대한 포상을 제시하였고 청소년상담 친절도 조사를 실시해 포상하는 경우도 있었음.

마. 부문 종합평가

□ 먼저 설계 관련 지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사업 부문의 정책대상이 24세 이하로 포괄적인데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비율이 매우 낮아 연령집단별로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고교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등 해당 연령에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사업 부문에 포함된 사업 대상자 모수 추정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청 승인통계로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 사업 부문의 사업들은 정책 대상으로 학생(교육부), 아동(보건복지부)과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구분되고 정책추진주체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유사한 연령대의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추진주체의 차이는 사업 부문 내뿐만 아니라 사업 부문을 넘어서는 다른 사업 간에 중복 문제를 발생하며 필수적으로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을 보여줌. 사업주체 간에, 사업들 간에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집행 관련 지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사업 부문에 포함된 사업들의 예산 대비 결산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7년 사이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지원 예산이 최대 1/4에서 최소 1/2로 한국의 예산 규모가 동일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이 사업 부문에 포함된 사업들의 지원 인력이나 시설 공급은 대부분의 사업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등도 모든 사업들이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서비스 확대 폭이 매우 낮은 수준의 지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늘어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 부문에 포함된 사업들의 추진방식은 적절하며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출 및 성과 관련 지표는 모든 사업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지원 대상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전체 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 비율을 각 사업별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과 매체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증진사업 정도임. 그리고 요구 충족률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업 만족도 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 관련 지표로 각 사업 담당 주체들은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여 성과 달성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가 넘는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음.
 - 동시에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를 동일하게 정한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경우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목표는 현재 달성한 수준이 아니라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보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절대 점수 수치가 아니라 변화율이며 성과 달성률은 전년 대비 변화율로 바꾸어 평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종합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3개 부문으로 범주화하여, 총 26개 사회보장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학대, 입양, 실종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저소득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등),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가출 청소년,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등) 3개 부문을 평가함.
- 설계 관련 지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등 관련 사업의 주관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의 용어정의나 대상연령도 상이한 경우가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연령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아동, 청소년 보호사업군 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됨.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드림스타트 이후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단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비율이 매우 낮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고교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등 해당 연령에 포함되지 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 거나,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로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부문의 지원 대상자 규모 추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e음이나 통계청 자료, 실태자료 등 시스템과 조사자료를 통해 대상규모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객관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조사 및 개별적 사업 추정하는 문제 는 별도의 대상 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고, 실태조사의 경우 대표성을 가질수 있도록 표본수를 지속적으 확대할 필요
- 전반적으로 법에 따라 지원대상을 특정하고, 타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 등 의 방법을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있어 사업간 중복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임.

표 V-5-1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설계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설 계	대상자 설정의 포괄성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담당부처, 관련 법령, 대상연령 등이 상이하며, 일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 조손가정 취약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분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차상위계 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 미혼모부 지원 관련 사업 등 가 족구조가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경우는 소득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취약계층 중 상대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이 나 자립이 어려운 후기 청소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사업 보완도 필요하 다고 보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정책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24세 이하의 고졸(미진학자) 및 대학 중퇴자 등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학교 밖이나 위기 청소년의 경우 전화나 방문 등 자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동시에 학교와 학교 밖의 지원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이들에 대해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상자 모수 추정을 위한 자료의 유무	- 전반적으로 사업부문의 지원 대상자 추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e음, 통계청 자료, 승인통계, 국가단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요보호 사업들은 전년도 기준 통계로 사업 대상자 모수를 추정하고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매년 보호아동수, 실종아동보호및지원은 해당 연도 기준 실종 접수 및 미발견 수를 모수로 추정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 장애아동수당 사업의 경우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추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등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음. 나머지 5개 사업은 자체 조사보고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있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모수 추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밖청소년 규모 추정은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지속된 경우나 학생이지만 가출, 비행, 범죄 등으로 학교 밖에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정확한 추정이 필요함.
	사업군 내 사업간의 상충/보완 관계	- 사업은 유사 지원대상 발생의 중복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나 법적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중복성을 피하려고 함. -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나누어 보호사업이 수행되지만, 유사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수적으로 상호보완, 협력 관계가 중요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의 사업들은 중복되거나 사업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어려움을 다루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WE프로젝트 상담지원 등은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을 가지므로 추진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

□ 집행 관련 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예산, 지원 인력, 이용자수, 시설 공급 현황을 보면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서도 인력수, 시설수, 예산에

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한부모 관련 4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7년 1,3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장애아동수당이 320억원 규모,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약 700억원 규모로 크게 나타남. 예산대비 결산비율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취약계층의 특성상 급여성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지원 사업인 경우는 매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예산 대비 결산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2016~2017년 사이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등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지원 예산이 최대 1/4에서 최소 1/2로 한국의 예산 규모가 동일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지원 인력이나 시설 공급은 대부분의 사업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 등도 모든 사업들이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서비스 확대 폭이 매우 낮은 수준의 지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늘어날 필요가 있음.
-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1인당 현금지원 및 시설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급여와 서비

스지원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기본으로 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이용청소년 본인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지원 또는 시설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지역별 서비스 공급률)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장애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 지역가정위탁센터운영현황에서 17개 시도별로 이용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요보호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자원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자원 투입이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게 제공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예산 분배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파악과 인력/시설 등의 공급확대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임.
-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데, 지원을 받은 학교밖 청소년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음.
 - 이는 학교밖 청소년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한편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의 정책 인지도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심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격차일수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고 지원의 확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추진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대체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아동중심이 아닌

기관중심형 또는 보호자중심형 전달체계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음.

- 사례관리를 사업별 지역센터에서 실시함으로써,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개별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지침에 의해 전달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다만 사업담당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도 여러 담당부서로 사업이 흩어져 있어, 유기적 협력·연계가 되어 대상자의 누락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의 추진방식은 적절하며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V-5-2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집행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집 행	투입의 충분성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예산, 지원 인력, 이용자수, 시설 공급 현황을 보면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서도 인력수, 시설수, 예산에서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문의 특성상 급여성지원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지원 사업인 경우는 매년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청소년예산 투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1인당 지원 예산이 최대 1/4에서 최소 1/2로 한국의 예산 규모가 동일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1인당 현금지원 및 시설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지원방식은 주로 현금급여와 서비스지원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기본으로 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 비용구조는 이용청소년 본인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지원 또는 시설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자원 투입 배분의 적절성	- 요보호 아동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자원투입 배분의 적절성은 일부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더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예산 분배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요약
		-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데, 지원을 받은 학교밖 청소년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지는 않으므로 학교밖 청소년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추진 방식의 적절성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추진방식의 적절성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대체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지역센터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아동중심이 아닌 기관중심형 또는 보호자중심형 전달체계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에서 개별 사업들은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지침에 의해 전달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다만 사업담당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도 여러 담당부서로 사업이 흩어져 있어, 유기적 협력·연계가 되어 대상자의 누락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 사업의 추진방식은 적절하며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모니터링의 체계성	- 모니터링 체계는 모든 사업이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산출 관련 지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사업의 특성상 일부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원자가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와 수혜자를 지표화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체계화 해야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신청건수 대 지원수인 수혜율이 23.6~26.7%임. 이에 대해 낮은 수혜율에 따라 지역별 설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동의 가족에 대한 개입보다는 분리 위주 정책은 문제로, 추가 아동학대쉼터 설치보다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보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부문 사업은 지원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고, 가구소득, 장애, 한부모가족 여부, 중복수혜여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지원수준의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전체 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 비율을 각 사업별로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적

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표 V-5-3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산출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산 출	수급자 비율	- 대상자에 대한 특정과 규모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부분 지원자가 수혜자가 되는 구조임. - 또한 지원대상 규모의 사전 파악이 어려워, 지원실적 위주의 관리로, 수혜자만 파악하는 경우도 많음. - 지원대상자와 수혜자를 명확하게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계 획수립시 필요함.
	요구 충족률 (또는 급여 및 서비스 충족성)	- 지원방식의 적절성은 대부분 지원대상의 규모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원 신청후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족률을 계산하기 어려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이라는 서비스 대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행복e음이나 각종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추정하여 실제적인 수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 및 위기 청소년 보호사업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매체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증진사업은 지원대상 규모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상황임.

□ 성과 관련 지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성과 관련 지표 평가를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각 사업별로 78%~111.7%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지표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 입소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수혜율이 23.6%~26.7%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쉼터 입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는 주로 간담회 및 만족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성과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들은 대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의 경우, 해당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거나 사업의 여러 지원내용 중 특정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대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성과 관련 지표로 각 사업 담당 주체들은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여 성과 달성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100%가 넘는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음.
- 동시에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를 동일하게 정한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경우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목표는 현재 달성한 수준이 아니라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보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절대 점수 수치가 아니라 변화율이며 성과 달성률은 전년 대비 변화율로 바꾸어 평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V-5-4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결과 요약 : 성과 단계

단 계	지표명	평가 결과
성 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의 성과 관련 지표 평가를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지표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운영은 실제로 쉼터 입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것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요보호 아동·청소년 부문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는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노력이 성과관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보호 사업부문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의 경우 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거나 사업의 여러 지원내용 중 특정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대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학교밖청소년 부문 성과재표는 보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 여부	- 모든 사업이 성과 관리에 대한 절차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VI

총괄 평가 및 정책 제언

1.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2.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3. 재정 구조 관련 개선점
4.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VI. 총괄 평가 및 정책 제언

1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가.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 필요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영유아 보육, 아동 돌봄의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영유아기 부모에게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제는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지지도에 불구하고, 정책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있음.
 - 또한, 모든 영유아가 급여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이 외에도 부모에게 수업료 부과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역기능도 있음.
-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제고를 효과적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등을 부모에게 직접 지불할 경우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있음.
 - 상당수의 영유아가 지원 수준이 높은 기관 보육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관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의 기관 이용

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함.

- 기관 보육으로의 과밀집과 급속한 공급 확대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

□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시간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져(하루 12시간) 있고 보육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정해진 비용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기도 함.

-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지원시간(표준보육시간)을 새롭게 정립하여, 장시간 기관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 시간 내에서만 기관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건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즉,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장시간 보육을 요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¹⁷⁾, 교사들의 업무 강도를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맞벌이 가구 등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여러 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장시간 기관 생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도 국가 지원 시간의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유치원의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하루 4~5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이를 국가 지원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평가 사업은 아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란이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17) 교사의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국가지원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사의 배치 등이 부차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어린이집 국가 운영 시간 설정 필요

- 국가지원시간(혹은 표준 보육시간)은 현행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유지되는 운영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어야 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7시간 내외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보육교사들의 행정업무 및 잡무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표준보육시간이 6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현행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반 운영이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종일반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맞춤반에 대해서도 긴급보육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어, 맞춤반의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맞춤반의 지원금이 종일반에 비해 작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맞춤반 이용이 손해라고 생각하여 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가지원시간의 적용은 부모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근거로 해서 설계될 때 정책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공립 기관 확충

-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률을 40%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국공립 기관의 확충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임.
- 단기간 내에 국공립 기관 확충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공공청사·학교 내 유휴공간 등의 적극적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식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의한 개인 위탁 방식이 많다는 점으로, 개인 위탁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위탁체 선정시 공공기관 우선 고려, 연간 국공립 확충 개소 중 개인 위탁 비율 상한 규제 등의 제도적 보완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사

료됨.

□ 보육서비스 질 관리 모니터링의 강화

- OECD 국가의 ECEC 분야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모니터링이 가장 일반적이며, 교직원 질, 아동발달 및 성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미화 외, 2017: 111¹⁸⁾).
- 최근에는 교사의 커리큘럼 실행과 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보육 과정의 수행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니터링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제고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와 환류 체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이미화 외, 2017: 111).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교직원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음(이미화 외, 2017: 111).
-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모니터링을 연계한 예로 한국의 경우 평가 인증 제도 의무화를 들 수 있음.
- 현재(2018년 12월 기준)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기는 하나, 평가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을 요함.
- 다만, 평가 인증 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에 해당하는 ‘통합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사립 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 적용 및 공공성 강화

- 최근 사립 유치원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소한 누리과정 지원금 및 기관 지원금에 대한 회계 감사가 가능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과 현행 재무 회계 규칙이 사립 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상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일정 정도의 회계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임.

18) 해당 보고서가 OECD(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인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재인용함.

- 단,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재무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현실임.
- 무엇보다 에듀파인은 복식 회계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통상 단식 회계에 익숙한 사립 유치원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교육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 어린이집 및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식 회계에 근거한 재무회계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이 필요한 상황임.
- 시스템의 구축에 앞서 사립 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안 개정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나.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의 강화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한편, 기관 보육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육아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음.
 - 가정 양육서비스는 기관 양육으로 충족되지 않는 사각지대(장시간 기관 보육의 보완책)에 대한 지원과 온종일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둘 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집중해야하는 서비스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음.
 - 현실에서는 가정 양육 지원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의 급여액이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에 비해 적은 점,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수요자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 최근 들어, 장시간 기관 보육의 폐해 등으로 인해 가정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하지만, 특히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바, 부모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의 확장이 요구됨.

- 영아기 자녀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가 종일 아이를 돌보며 독박육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확충이 요구됨.
 - 본 연구의 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업은 지역별로 크게 편차가 존재하고, 기관 접근성이 낮은 등의 문제로 영유아기 부모들의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영아기 자녀의 가정 양육 지원은 작은 단위로 세분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지원 제도 중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이러한 형태를 지향하는 사업이긴 하나,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지원의 내용이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로 인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아기 자녀의 가정 양육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보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확대가 요구됨.
 - 단,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함.
- 또한, 맞벌이 가구와 같이 장시간 기관 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 보육과 가정 양육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부분 존재함.
- 특히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의 가정 양육서비스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확장과 공급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보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는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형태로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작은 단위로 세분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즉,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동단위 이하의 세분된 지역 혹은 가정 단위 서비스가 다수로 확장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해 낼 수 있어야 효과를 갖게 될 것임.
- 지자체 사업이기는 하나 서울시의 보육반장 제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해당함.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동식 도서관, 가정 보육사 파견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함(김은설 외, 2014).
- 이러한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단,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지자체 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맡겨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정부가 제공하거나 농어촌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유관 중앙 부처의 지원을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시간제 가정 양육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방과 후) 시간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가정 양육서비스의 지원이 확장되어야 함.
- 특히 맞벌이 가구의 장시간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 보육실태조사(2015)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서비스가 아닌 민간 베이비 시터 혹은 조부모 등 혈연 도우미의 활용빈도가 높으며, 이용 시간대도 대체로 등하원시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김은설 외, 2016).
- 민간 베이비시터 혹은 혈연도우미 활용이 높은 이유가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 때문인지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량 부족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상당 정도의 서비스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가구(라형¹⁹)는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비스 우선권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있음.
 - 아이돌봄미들도 시간제보다 종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매칭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량의 확대와 함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유인책,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지원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봄 직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과 영유아 부모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초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 양육지원보다는 어린이집 지원에 무게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가정 양육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는 부모 교육, 시간제 보육, 장난감 도서관 등 대여 사업,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사업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 가정 양육지원서비스는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분소 등을 다수 설치하는 형태로 확장이 필요함.
 - 주민센터, 보건소,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세분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큰 편차를 보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정 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지역이 다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시도센터는 국

19)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구분은 <부표 III-2-14>와 <부표 III-2-15>를 참조하기 바람.

비와 지방비 50:50, 시군구 센터는 전액 지방비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7a).

- 즉, 지자체의 상당한 정도의 예산 배정이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가정 양육서비스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임. 문제는 영유아가 많지 않은 지역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확대가 단기간에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과 유사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의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다.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육아 지원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특히 영유아기에 집중된 현금성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 및 전반적인 지역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
 -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보편 지원의 성격이 강해 다수의 육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금 대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아 정책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된 현금성 지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정책의 후퇴에 대한 부모들의 반감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지원 정책의 틀은 큰 틀에서 유지될 필요성이 높음.
 - 하지만,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돌봄 지원 예산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재원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 아닌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더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제도 개선

- 특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아이를 가까이에서 보살필 수 있고,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다, 대체로 보육서비스가 좋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를 가진 어린이집 유형임.
- 하지만, 실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전체 어린이집의 2.6%에 불과함(보건복지부, 2017b).
 - 정부의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발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도 시행에 힘입어 설치 의무 사업장²⁰⁾의 의무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의무이행 대상 자체도 아니고 비용 부담 등으로 설치율이 매우 저조함(이미화 외, 2017 : 215 재인용).
-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나 비정규 근로자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설치 뿐 아니라 이후 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됨.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의 완화를 통한 설치 확대, 의무 사업장의 설치율 제고를 위한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점진적 폐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강화 및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단,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은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현황과 민간 어린이집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만 과잉 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임.

20)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한편, 인프라 지원의 확대는 보육 및 교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확충을 넘어선 지역 사회 전반적인 육아 지원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지역 내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도서관, 체험 학습관, 아동 전용 체육시설, 어린이 전용 병원 등이 모두 지역 사회 육아 지원 인프라에 포함됨.
 - 이와 함께 어린이집 전용 공간의 확대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도시 환경이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지역 내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은 육아 가정의 가정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부모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정책이기도 함.
 - 최근 지자체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사업임. 이를 반드시 국가가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아동 친화적 도시의 확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함.
 -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수행 중이며, 인증 지표 중 일부가 가족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현행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인증 지원 제도에서 가족 지원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보다 방점을 두어 ‘여성가족친화도시’ 등으로 확장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직 함.

라. 초등 돌봄 지원의 강화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영유아, 아동 돌봄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영유아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띠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초등학령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적었음.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을 통해 종일 보육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

는 영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초등학교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양상을 띠며, 돌봄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
-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은 학교를 통한 돌봄의 지원과 학교 밖 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를 통한 지원이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님.
 - 학교를 통한 지원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초등돌봄교실이며, 이외에도 방과후 교육과정 지원 등이 있음.
 - 학교 밖 돌봄 지원의 대표적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으나,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모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움.

□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영유아기처럼 모든 대상에 대한 지원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학교 하교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집단(예: 맞벌이 가구) 등의 경우에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부모들의 접근성이나 아이들의 방과후 안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내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편의성이 높긴 하나, 학교 내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돌봄의 기능을 병행하기에는 인력 및 관리의 문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소득 수준이 낮지 않은 맞벌이 가구 등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전반적으로 영유아기 보육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지원에서 초등 돌봄(특히 저학년)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과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임.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온종일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정착

-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확정하는 등(교육부 블로그, 2018. 10. 25 인출) 초등 돌봄 정책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2017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음.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1,817개소 설치(9만명 돌봄제공)를 목표하고 있음.
- 선정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 등)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 지역주민협의체,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교육부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전국 총 9개 지역을 선정하였음.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초등 돌봄 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책 변화인 ‘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율해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됨.

마. 전달체계 정비 및 정책 홍보 강화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한편,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이 다수의 부처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오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범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영유아 보육의 경우에도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 가정 양육(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아동 돌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임.

• 본 연구의 평가 사업 중에서는 지원 대상이 특정 집단에 국한된 사업, 예를 들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정책 인지 및 활용도가 낮은 정책에 해당함.

•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서 정책 인지가 높은 사업은 아무래도 보편 지원이면서 현금성 지원인 0-2세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임.

-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개별적 성격이 다른 만큼 부처가 나뉘어 운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다만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사업의 중복은 최소화하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은 여러 부처에 산재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정책을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취약 계층의 정보 사각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안내

- 특히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정책 인지가 낮은 편인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찾아보거나 정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자체가 낮을

가능성도 있음.

- 기본적인 생애 주기의 변화 시기에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활용 가능한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정책으로부터의 사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예컨대, 행정자치부의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자녀 출생 신고 시 다자녀 가구를 식별하여, 이용 가능한 정책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등과 같이 집으로 우편 등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이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도 육아관련 기관이 아닌 주민 센터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통해 정책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아동, 청소년 보호 지원 체계에 대한 제언

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경우 전문가의 대다수가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서비스의 사각은 해당 대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경우와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대상자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발견 자체가 힘들어서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보호 사업군의 경우 주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경우보다는 후자의 두 경우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취약 혹은 요보호 대상 중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지원 대상 자체를 명시하지 않

은 경우로는 조손 가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고교 졸업자와 대학 중퇴자 등 해당 연령에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보호 사업군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원 대상 기준이 현실적 보호 필요대상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매우 까다롭거나 협소하게 설정된 경우임.

-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거나, 학대행위자와 격리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선별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실제적으로 서류상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현장 실무자 및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 자체를 완화하거나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요구됨.
 - 다만, 이러한 과정은 개별 사업별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하고 확장할 것인가는 사업별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서비스 전달자 교육 강화

- 지원 대상(아동, 청소년)의 특성상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 과정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지원 대상 선별 과정 등에서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이 자신이 스스로 빈곤 가정이거나 학대 가정임을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이것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을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서비스 전달자의 훨씬 섬세하고 배려적인 태도가 요구됨.
- 서비스 전달자(인적 자원)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이하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함.

□ 보호 필요 아동·청소년 발견을 제고 노력

- 학대, 성폭력 피해 등 요보호 아동 및 위기 청소년의 발견 자체가 늦어져,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개정)의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신고 빈도가 증가하고 발견율이 높아지고는 있음.
- 다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유관 기관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서도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학대 등이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 요보호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 혹은 조사 없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며, 방관 혹은 재발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임.
- 이는 발견 당시부터 요보호 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사 단계에 적절히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 대상자 포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필요

- 실제적으로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혹은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 등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손 가정까지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조손 가정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를 오롯이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조부모 스스로가 공공부조 혹은 돌봄서비스를 요하는 요보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까지를 책임져야 함에 따르는 추가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함께 보호대상으로 포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후기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가 요구되며, 종합적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드림스타트 이후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단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또한, 학교밖 및 위기 청소년 부문에서도 19세 이상 24세 이하 후기 청소년이 지원 대상 연령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사각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속하는 대상인만큼 이에 걸맞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나. 종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 DB 구축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현행 보호 사업군의 다수 사업은 자료의 취합 관리가 아동·청소년 단위로 이뤄지지 않고 건수로 관리되는 한계가 있음.
 -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 건 수로 관리하면서 어떤 지원 대상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될 뿐 아니라, 지원 실적이 과다하게 잡히는 문제를 유발함.
-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의 경우 분절적 사업 지원이 아닌 지원 대상(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 발견 당시부터 완전한 사회화까지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 즉, 초기 사업 대상으로 들어온 순간 해당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지속적인 추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대상자 관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학대 아동으로 포착된 아동에게 심리지원, 치료, 개인서비스, 금전적 지원, 훈련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기에 필요한 지원과 장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모두 계획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현재는 사업간 연계도 미흡한데다 대상자 관리도 각 부처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며, 실적 관리도 개인 단위가 아닌 건당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2) 정책 및 개선 방안

□ 통합 DB 구축 사업

- 우선적으로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부터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떤 경로이든 지원 대상으로 들어온 아동에 대해 개인 이력 관리를 통해 하나의 지원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른 추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 DB 구축 및 관리를 필요로 함.
- 중장기에 걸쳐서는 DB통합 뿐 아니라 해당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이하 전달체계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
-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한 지원 대상자 관리 DB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 진행 및 DB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다수의 사업의 지원 대상자 관리는 사회보장정보원의 DB를 활용하고 있음.
-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DB간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기 구축된 DB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열람하고 참조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부처가 협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임.

다. 지역별 공공 컨트론타워(사례 관리 기관)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1)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의 경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가 산재하는 반면, 실제 실행 단계인 지역에서는 하나의 부서로 모여서 수행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오히려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사업간 중복 혹은 분절성으로 인해 조직적 관리가 어렵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보호 사업군은 사업의 수가 많긴 하나 지원 대상(아동·청소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처가 달라 사업 연계가 미흡하거나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중앙 부처 간, 중앙 부처-지자체, 지자체-지역 교육청, 지자체-민간 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함.

- 중앙 부처의 경우에도 학교를 통한 지원은 교육부, 학교밖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나뉘져 있으며, 교육부와 두 부처 간의 연계도 원활하지 못한 편임.

□ 한편, 정부 부처 간 전달 체계 개선 뿐 아니라, 지원 대상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전달 체계(추진 방식) 개선도 요구됨.

-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의 운영과 사례 관리까지 모두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개별화되고 분절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각각의 사업별로 위탁을 받은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해당 지원만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임.

-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도 배제된 상태로,

아동에 대한 지역 단위에서의 종합적 지원을 수행할 공공 기관이 부재한 상태임.

- 각종 협의체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논의 기구의 성격이 강하여,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아동학대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초기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후 심리정서지원, 쉼터 제공, 소득 보전 혹은 자활 지원 등으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이 이러한 형태의 지원 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12세 이하²¹⁾로 중고등학생 기 아동·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합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개별적 사업은 사업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조정보다는 이들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업간 유기적으로 연계와 조율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히 조사와 진단,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조사와 진단,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은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사업의 수행과 운영은 민간 위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컨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기능 수행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임.

2) 정책 및 개선 방안

□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학교밖 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 학대 등 요보호 아동의 경우나 취약 아동의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21) 만 12세 이상 아동이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하지만, 요보호 아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과 예방적 조치 등은 학교 밖(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보다는 교육부(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임.

□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별 컨트롤 타워 구축

- 어떤 경로로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든 간에 아동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에게 해당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안내하며, 하나의 지원 사업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하 컨트롤타워)이 필요.
- 이러한 컨트롤타워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최소한 지역구(가능하면 동단위)로 구축하되, 컨트롤타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 혹은 사업별로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
- 즉,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각종 아동·청소년 사업을 지역별로 산재한 컨트롤타워에서 일원화하여, 해당 지역 내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Ⅱ 그림 VI-2-1 Ⅱ 통합사례관리 절차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 지역별 컨트롤 타워 관리를 위한 중앙 정부 기능 강화

- 다수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인력 구조가 취약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당장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전국적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전달 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지역 단위로 배치된 컨트롤 타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개별 사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이러한 업무를 지방 정부에 맡겨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 혹은 부처가 지역별 아동·청소년 보호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지역별 격차를 축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양성 필요

-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원활한 사업 연계,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등에는 지역 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선결 과제임.
 -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 줄 지원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서울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력의 전문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
-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발견한 보호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찾아서 안내할 수 있는 초기 진단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민감성과 배려적 태도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라.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정책 지원 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를 상대로 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발견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의 경우 다양한 부모교육을 통해 정책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정책 홍보의 강화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개별 사업별로 신고 등의 경로가 상이하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로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반면, 단순화되고 통합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상이 들어올 경우 대상자에 맞는 지원을 쉽고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컨트론타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3 재정 구조 관련 개선점

가.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현행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거나 재정 조달 과정에서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영유아의 경우 현금성 지원 사업에 예산이 몰리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 지원 및 기타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로 서비스 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함.
- 대표적인 급여 사업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에도 다행히 2017년부터 3년간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국비로 해결되면서 잠시 소강상태이긴 하나, 이후 또 다시 국비와 매칭되어야 하는 지방비

의 마련에 대한 논란이 재기될 위험이 높음.

□ 한편, 영유아 보육 등에 집중된 현금성 사업의 예산에 비해 보호 사업군은 대상자가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많지 않으며, 총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임.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총량적 측면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예산의 확대 및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됨.

• 단,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현 상황에서 차츰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초등 돌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후에도 이 예산의 조정을 통해 보호 사업 예산의 추가적 확보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 여러 개 사업으로 쪼개져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개별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사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 기금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과 상관성이 낮은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및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지역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거나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부족으로 보호 사업의 수행에 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예산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정책 및 개선 방안

□ 기준보조율 차등적 적용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 압박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초연금과 보육료지원 예산이 단위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개별 사업별로 기준보조율(국비부담율) 적용되고 있는데,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지원 속한 세부 사업별 기준보조율이 파악되지 못함.
- 영유아 및 아동 돌봄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개별 사업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수준을 파악하여 지방재정 영향평가²²⁾를 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구조 개선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사업이 소관부처별, 회계별 다양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많음.
-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은 고용보험기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양성평등기금을 재원으로 함.
- 아동 돌봄 사업군은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만 청소년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함.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은 일반회계 외에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양성평등기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짐.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22)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지방재정영향평가)' 중앙정부가 지방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하는데, 기금의 수입원에 따라 수입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여 재원이 불안정함²³⁾.
- 동일 부처 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다른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사업의 성격에 맞게 회계가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됨. 한부모 가족아동 양육비지원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등 대상 및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재원을 달리하여 통합적인 사업운영에 저해됨.
-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 중 대상 및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동일한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성 사업이 아닌 현금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회계 내에서 재원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정이 필요함.
 - 기금사업들 중에서 유사한 성격에 사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통합적인 사업 접근이 가능함으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함.

□ 중앙정부 예산 비중 확대 필요

- 모든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추어 기획되고 실행됨으로써 부모 만족도 및 정책 효과성이 높아질 것임.
- 특히,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가장 취약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보장인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OECD국가 및 다른 사회보장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23)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 53조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한다”에 그 근거를 두고 1989년부터 조성됨. 2004년을 정점으로 매년 기금의 순조성액은 재원 조달의 한계로 인해 점점 고갈되어 가는 반면에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육성기금은 그 예산규모와 운용의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박진규, 2011,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한편, 영유아 보육 분야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이 지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 가정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지역의 보육, 저출산 예산이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해 소요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이 더디게 이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다만, 돌봄 및 보호 사업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업으로 처음부터 양분할 경우, 오히려 지자체가 돌봄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축소하여 지역 편차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또한 존재함.
 - 그러므로, 중앙 정부가 큰 틀에서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실시하되,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라 사료됨.

4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가. 쟁점 요약 및 기본 방향

- ☐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강사와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각 부처별 아동돌봄서비스의 기초적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각 부처의 돌봄 사업이 일정 질적 수준 이상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필요성이 있음.
- ☐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군의 경우에도 종사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역에서 보다 심각하여, 통합 사례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높음.

나. 정책 및 개선 방안

□ 아동, 청소년 돌봄 서비스 인력 표준화

- 아동 돌봄 사업별로 인력 배치의 호환이 가능하여 관련 자격 및 경력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일정 부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자격기준이 넓게 개방되어 있거나 모호한 점은 지역 사회에서 관련 필요 인력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과후 돌봄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돌봄 사업이 정한 본래의 종사자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자를 선발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자격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재공모를 통하여 종사자를 선발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2단계에서 종사자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3개 사업 자격기준에 나타난 자격증(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음.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 및 후생 복지 증진 필요

- 아동 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해마다 종사자의 경력 증가를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률을 산출·적용해야 할 것임. 현재는 종사자의 경력 누적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산출한 인건비를 적용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간 인건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동, 청소년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해당 학교 및 교육 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등의 예산 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임의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돌봄 종사자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실무지도자가 유사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 사업 간에 종사자가 전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정익중 외, 2013).

- 또한 돌봄 사업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방과 후 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1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종사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임. 따라서 관련 사업비 내에 초과 및 연차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필수적으로 편성하여 돌봄 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아동 돌봄 종사자 공통 교육·연수

- 현재 영유아, 아동 돌봄 종사자의 교육·연수는 사업별로 정한 관련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내용은 주로 해당 돌봄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 업무 지침 이해, 이용 청소년의 이해 및 상담 기법 습득, 관련 국가 정책의 이해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또한, 교육·연수 일정은 중앙정부 및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관련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고, 해당 사업의 실무자는 근무여건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방과 후 돌봄 종사자의 교육·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먼저, 교육·연수는 운영 책임자와 실무지도자 과정을 구분하고, 다시 기본공통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적어도 기본 공통 과정은 서로 다른 기관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지도자가 현장에서 아동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역할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함. 이러한 공통 교육·연수를 통해 서로 다른 아동 돌봄 사업의 관계자가 모여 서로 이해하고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지역 사회 내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현재 지역 사회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 분야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력에 대한 보수 및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이 이 분야로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이때, 담당자 교육 등을 담당할 양성 교육 기관 및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강신욱·강혜규·노대명·이현주·이병재(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14).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17).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7년도 시행계획.
- 교육부(2015). 유아학비지원계획.
- 교육부(2016). 유아학비지원계획.
- 교육부(2017). 유아학비지원계획.
- 교육부(2018). 유아학비지원계획.
- 교육부(2017).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양심영·김기현·하태정(2013).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 :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205~235.
- 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2014).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

태조사 -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지연·정소연·최수정(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대한민국 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2), 97-138.

박진규(2011).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287-309

배윤진·조숙인·장문영(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5a).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2015b).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5c).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6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7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a).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8a).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 1).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18.08.10.일 인출.

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201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조건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201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계획.

서미(2017). 후기청소년 상담복지모형. 2017 청소년포럼(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 상당복지적 접근) 자료집. pp. 31-55.
- 아이돌봄서비스,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2018. 8. 22. 인출).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오윤섭·강지원·이세미(2016).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이정원·최윤경·유해미·강은진·권미경·도남희·최효미·김동훈·임준범·백선희·이완정·김진석·황옥경(2017). 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정주영·정익중·조혜주(2013). 다부처 관련 정책 현황조사: 아동돌봄서비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이창호·최용환·도수관·이승아(201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익중·김홍원·길은배·양애경·양계민·김광혁(2013). 『방과후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 정은진·김기현(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1), 117-143.
- 최성은, 2011. 보육료 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85~105.
- 최윤경·이정원·박진아·송헌재·이동하(20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진아·최효미·김동훈·김태우(2017, 미발간).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15).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7).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통계간행물 → 2018년 교육통계연보 → 일반고등학교 현황 → 졸업후 상황
- 〈참고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_care/babycare2.do (2018. 8. 22. 인출).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set/15001466/fileData.do>,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425291&fileDetailSn=1), (2018. 11. 20 인출).
- 국민청원 게시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4303>, (2018. 11. 20 인출).
- 보건복지부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InfSno=50>, (2018. 5. 3 인출).
- 보건복지부 복지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InfSno=46> (2018. 5. 3 인출).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iframe_url= (2018. 5. 3 인출).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sc.go.kr/cont/info/info030400.tiles?bigcate=013&menuFile=info030400> (2018. 5. 5 인출).
- 성남시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8612>, (2018. 10. 10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part2.go> (2018. 8. 21.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 <https://www.idolbom.go.kr/bbs/notice/detail.go?id=4517>(2018. 8. 22. 인출).
-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none> (2018.7.27. 인출).

-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mainFinanceStat1Page.do> (2018.7.27. 인출).
- 열린재정(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none> (2018.7.27. 인출).
-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2018.08.10.일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8.08.10.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8.08.10. 일 인출).
- 통계청, KOSIS, 합계 출산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checkFlag=N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2018. 9. 5 인출).
- 행정안전부,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각년도 12월 말 기준(2018. 8. 17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5-’17년) 유초등현황 중 학년별 인원수. <http://kess.kedi.re.kr>(2018년 7월 30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5-’17년) 유초등현황 중 학년별 인원수 참조 (<http://kess.kedi.re.kr>)(인출일: 2018년 7월 30일).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pi.or.kr/site/hp3/contents/business_n/business01_1.jsp,
 (2018. 11. 20 인출),
<https://blog.naver.com/hykim0417/221375913174>(“최근 3년간 대학·전문 대학생 42만 명 학업 중도포기, 매년 증가 추세”)(인출일: 2018. 10. 12)



부록

- 부록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사업
- 부록 2. 아동돌봄 사업군 평가 사업
- 부록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사업

부록 1.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사업

가. 영유아 보육 사업군 평가 사업 개요

1)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

■ 부록 표 1-1 ■ 만0-2세 보육료 지원사업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만0세아 : '17.1.1 이후 출생아동 - 만1세아 : '16.1.1~ '16.12.31 - 만2세아 : '15.1.1~ '15.12.31 - 만3세아 : '14.1.1~ '14.12.31 - 만4세아 : '13.1.1~ '13.12.31 - 만5세아 : '12.1.1~ '12.12.31 (취학유예아동일 경우 '11.1.1~'11.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기준	• 2016.7.1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이용 - 종일반(12H)은 취업, 구직, 다자녀, 조손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6H+긴급보육바우처 15H/월)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지원내용	• 2018년 지원 단가 • 만0세아 : (종일반) 441,000원 / (맞춤반) 344,000원 • 만1세아 : (종일반) 388,000원 / (맞춤반) 302,000원 • 만2세아 : (종일반) 321,000원 / (맞춤반) 250,000원 • 만3~5세아 : 220,000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 까지 이월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로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2)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 부록 표 1-2 ■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개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지원연령('18.3.1.부터 적용) - 만5세 : 2012.1.1 ~ 2012.12.31 - 만4세 : 2013.1.1 ~ 2013.12.31 - 만3세 : 2014.1.1 ~ 2015.2.28.
선정기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5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지원내용	- 만 3~5세아 교육비(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주의]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 예1)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시작 :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 산정 - 예2)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이었으나 A원아는 3월 7일부터 입학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 - 예3) A원아, 3월 2일 유치원 입학, 3월 7일 유아학비 신청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3월 2일 ~ 3월 6일은 학부모 부담금 발생) - 만 3세 ~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유아교육법 시행령
사업부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 부록 표 1-3 ■ 다문화 보육료 지원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1.1.1.~ 12.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 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종일반) 441,000원 / (맞춤반) 344,000원 • 만 1세 아동: (종일반) 388,000원 / (맞춤반) 302,000원 • 만 2세 아동: (종일반) 321,000원 / (맞춤반) 250,000원 • 만 3세: 220,000원 • 만 4세: 220,000원 • 만 5세: 220,000원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부록 표 1-4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7년 11월 1일 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18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2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19.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05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9.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취약계층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49천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49천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포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부록 표 1-5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시간연장형보육료: 만 0~2세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1)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 3,000원(시간당), 장애아동 4,000원(시간당)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2) 야간 보육료 • 지원단가: 2018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19:30~익일 7:30 •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24시간 보육료 • 지원 단가: 2018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 시간: 7:30~익일 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4) 휴일보육료(토요일 제외)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6)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부록 표 1-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개요	•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시설설치비는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지원한도 : 대규모기업(단독형(3억), 공동형(4억)), 우선지원대상기업(단독형(4억), 공동(8억), 컨소시엄형(10억)) * 단,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지원한도 : 신규(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교체비(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용자 - 시설건립비, 매입비 등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한도로 연 2.0% 이율로 용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7) 가정양육수당

■ 부록 표 1-7 ■ 가정양육수당

개요	•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전년도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미만)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12개월 미만: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최장 84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은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신청방법	• 등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8) 시간제 보육

■ 부록 표 1-8 ■ 시간제 보육

개요	• 가정양육시에도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 선택권 제고
지원대상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온라인신청(www.childcare.go.kr)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9)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부록 표 1-9 ■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개요	•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선정기준	•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지원내용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 중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신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10) 아이돌봄서비스

■ 부록 표 1-10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아동연령 기준 - 기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 지원 대상자 자격 - 아동 연령 -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소득 * 상기 세가지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중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기준: 선정기준 상세 참고 • 기간제 및 영아 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10.12.31.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A형 시간당 6,240원, B형 5,46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A형 시간당 3,90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2,340원 지원 •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200시간 기준 117만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월 200시간 기준 85만8,00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0시간 기준 54만6,000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271만2,000원 - 기준 중위소득 85%: 384만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542만3,000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지원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 •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1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부록 표 1-11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요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 · 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대여 •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
신청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근거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1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부록 표 1-1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개요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날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미만)
선정기준	•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전성 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월 6만 4천원)·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 지원 -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전성 면역결핍증(HIV)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5일)

나. 영유아 보육 사업군 부록 표

■ 부록 표 1-13 ■ 지역별 영유아 수 및 영유아 비중

단위 : 명

	2015		2016		2017	
	영유아 수	영유아 비중	영유아 수	영유아 비중	영유아 수	영유아 비중
전체	3,187,718	5.9	3,153,489	6.1	3,044,577	6.2
서울	546,824	5.1	530,484	5.3	504,604	5.5
부산	187,693	5.2	187,409	5.4	180,213	5.3
대구	142,823	5.6	142,275	5.7	137,711	5.7
인천	189,521	6.1	186,583	6.3	178,698	6.5
광주	97,599	6.2	95,232	6.5	91,407	6.6
대전	99,724	6.2	97,680	6.5	92,647	6.6
울산	81,922	6.7	81,221	6.9	78,312	7.0
세종	20,941	9.9	24,353	10.0	27,793	9.9
경기	862,159	6.5	860,224	6.8	838,610	6.9
강원	83,855	5.1	81,964	5.3	78,458	5.4
충북	98,631	5.9	97,656	6.1	94,031	6.2
충남	136,809	6.3	136,336	6.5	133,264	6.6
전북	108,996	5.5	106,734	5.7	101,312	5.8
전남	109,694	5.5	108,200	5.7	103,413	5.7
경북	156,764	5.6	155,467	5.8	149,782	5.8
경남	220,697	6.2	217,810	6.5	210,705	6.6
제주	43,066	6.6	43,861	6.8	43,617	6.9

주: 영유아 비중은 (지역별 0-6세 영유아 수/ 지역내 총 인구) *100으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tr/sub/a05/ageStat/screen.do>

■ 부록 표 1-14 ■ 지역별 및 연도별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2,517	41,084	40,238	8,930	8,987	9,029
서울특별시	6,598	6,368	6,226	888	879	880
부산광역시	1,971	1,937	1,920	403	412	417
대구광역시	1,539	1,483	1,464	392	375	370
인천광역시	2,278	2,231	2,186	418	427	430
광주광역시	1,264	1,238	1,240	315	321	318
대전광역시	1,669	1,584	1,505	268	269	269
울산광역시	934	895	881	194	196	199
세종특별자치시	216	250	289	43	45	53
경기도	12,689	12,120	11,825	2,188	2,234	2,258
강원도	1,227	1,180	1,149	386	379	375
충청북도	1,230	1,208	1,186	343	345	345
충청남도	1,988	1,974	1,955	503	509	508
전라북도	1,623	1,562	1,497	530	532	536
전라남도	1,238	1,251	1,241	552	553	553
경상북도	2,130	2,102	2,063	711	707	710
경상남도	3,349	3,158	3,084	679	686	690
제주	574	543	527	117	118	118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2)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

■ 부록 표 1-15 ■ 지역별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 현황

단위 : 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790,821	1,767,224	1,756,603	580,524	718,670	727,102
서울특별시	274,132	270,231	268,100	79,150	98,179	97,607
부산광역시	90,014	89,658	89,040	35,000	44,286	46,650
대구광역시	77,547	75,255	74,696	28,519	37,804	37,275
인천광역시	94,735	94,314	93,938	43,058	50,780	51,157
광주광역시	63,471	62,528	63,161	24,356	24,762	24,179
대전광역시	55,635	54,514	53,688	22,498	27,677	27,779
울산광역시	40,899	40,257	40,305	19,038	20,684	21,162
세종특별자치시	10,913	12,587	14,658	4,505	5,331	6,351
경기도	474,619	467,469	466,020	161,963	218,655	221,861
강원도	55,718	54,408	53,468	16,245	17,466	17,646
충청북도	63,601	63,108	62,582	15,092	17,956	18,062
충청남도	87,524	87,635	87,488	23,406	26,630	26,603
전라북도	73,738	71,946	69,650	21,122	25,174	24,811
전라남도	70,802	70,863	70,248	14,626	16,164	17,158
경상북도	93,978	93,950	92,669	26,291	32,274	33,650
경상남도	130,665	127,325	126,361	41,214	49,852	49,893
제주	32,830	31,176	30,531	4,441	4,996	5,258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2)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유치원 모집정원(내부자료).

■ 부록 표 1-16 ■ 시간 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시간연장형 보육 제공 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어린이 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어린이 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어린이 이집	특수보육어린이집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시간 연장	휴일	24 시간
계	1,290	8,582	305	268	844	8,296	300	258	652	8,245	306	252
서울특별시	147	2,067	87	95	92	2,034	85	89	66	2,054	88	77
부산광역시	12	309	3	34	10	314	3	34	3	311	3	32
대구광역시	58	319	0	3	39	309	0	3	21	304	0	3
인천광역시	39	312	1	12	23	297	1	13	21	289	1	16
광주광역시	34	224	7	11	27	230	6	11	27	246	5	12
대전광역시	52	410	2	3	23	423	2	3	22	417	2	2
울산광역시	5	112	25	11	3	109	25	10	6	109	25	11
세종	3	28	0	0	1	28	1	0	1	30	1	0
경기도	434	2,015	22	57	298	1,944	24	53	230	1,912	31	54
강원도	35	188	11	6	29	168	11	5	17	149	10	4
충청북도	15	293	2	4	17	272	2	4	9	293	1	7
충청남도	44	266	7	2	31	240	7	3	25	272	9	3
전라북도	64	432	4	5	37	424	4	6	28	403	4	6
전라남도	13	328	8	1	9	310	8	1	9	303	8	1
경상북도	136	361	2	6	88	323	2	6	69	305	2	6
경상남도	189	640	19	16	112	603	19	15	95	585	19	16
제주도	10	278	105	2	5	268	100	2	3	263	97	2

주: 1)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시간연장 보육,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을 모두 합산한 값임.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 부록 표 1-17 ■ 지원 대상별 보육료 지원자 수

단위: 명

		전체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2015	만0-2세 보육료	832,118	132,229	297,043	402,843	-	-	-
	다문화 보육료	32,593	1,965	5,550	7,276	6,660	6,258	4,884
	장애아 보육료	11,540	191	265	1,030	2,074	2,373	5,607
2016	만0-2세 보육료	801,058	134,097	302,089	364,869	2	1	0
	다문화 보육료	41,476	3,696	9,441	11,607	5,989	5,478	5,265
	장애아 보육료	11,872	196	302	1,008	2,176	2,504	5,686
2017	만0-2세 보육료	821,309	133,631	316,437	371,237	2	0	2
	다문화 보육료	42,009	3,385	8,849	11,348	8,788	4,956	4,683
	장애아 보육료	11,689	160	295	949	2,019	2,642	5,624

주: 1)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연령별 학급을 기준으로 지원자 수를 집계하므로, 이 표의 각 연령은 보육 연령을 의미함.

2) 만 0-2세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만 3세 이상에서 잡히면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 혼합반 등으로 위의 연령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발생함.

자료: 1) 각 년도 보육통계.

■ 부록 표 1-18 ■ 가정 양육 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전체	0~ 11개월	12~ 23개월	24~ 35개월	36~ 47개월	48~ 59개월	60~ 71개월	72~ 취학전
2015	계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일반아동	1,004,154	385,309	308,916	131,197	65,717	39,698	37,570	35,747
	장애아동	2,169	9	242	528	513	365	286	226
	농어촌	3,023	1043	1054	470	316	76	38	26
2016	계	933,153	363,178	305,911	117,302	47,840	34,711	30,609	33,602
	일반아동	927,821	361,765	304,654	116,311	47,164	34,306	30,293	33,328
	장애아동	2,171	10	244	543	493	346	288	247
	농어촌	3,161	1,403	1,013	448	183	59	28	27
2017	계	836,290	317,981	274,578	106,954	43,300	29,134	32,163	32,180
	일반아동	830,635	316,492	273,056	106,025	42,609	28,740	31,837	31,876
	장애아동	2,274	11	245	561	513	363	313	268
	농어촌	3,381	1,478	1,277	368	178	31	13	36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각 년도 12월말 기준.

■ 부록 표 1-19 ■ 가정 양육 수당 수혜율

단위 : %

월령	만 연령	가정양육수당 수혜율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31.7	29.6	27.5
0~11개월	0세	91.0	92.3	92.0
12~23개월	1세	70.8	69.3	67.0
24~35개월	2세	30.0	26.7	24.1
36~47개월	3세	13.6	10.9	9.8
48~59개월	4세	8.4	7.1	6.6
60~71개월	5세	8.0	6.4	6.6
72~취학전	6세	8.0	7.1	6.8

주: 1) 수혜율은 (월령별 가정 양육 수당 전체 수혜자 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100으로 산출하였으며, 월령과 연령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11개월 영아의 경우 출생월에 따라 0세 혹은 1세로 구분되어 있음에 유의.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통계. 각 년도 12월말 기준.

2) 행정안전부.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각년도 12월 말 기준. (2018. 8. 17 인출)

부록 표 1-20 시간제 보육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시간제 보육		
	2015년	2016년	2017년
연 인원	16,490	32,063	43,400
실 인원	7,297	13,377	18,115

주: 2018년 1월~5월은 총 450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부록 표 1-21 프로그램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51,522	5,357,314	5,905,652
프로그램	부모교육	-	122,278	139,893
	자체부모교육	84,563	137,230	63,589
	영유아교육	70,507	15,169	103,851
	부모자녀체험	580,055	697,946	964,033
	상담	380,559	359,481	661,799
	장난감도서대여	1,446,764	2,017,612	1,764,788
	놀이실(체험실)	1,246,804	2,007,598	2,207,699
	기타	542,270	-	-

주: 1) 가정 양육 지원 사업 관련 이용자수로, 가정 양육 지원 사업에는 부모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부모·자녀체험 프로그램, 부모 상담, 부모소모임, 육아카페, 장난감·도서대여 및 놀이실 운영 이용자 수 등이 포함됨.
2) 2017년 이후 시간제 보육 사업은 주관기관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적에서 제외함.
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부록 표 1-22 ■ 시도별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단위 : 가구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 가정 수	이용형태별		이용 가정 수	이용형태별		이용 가정 수	이용형태별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시간제	종일제
계	57,687	52,354	5,333	61,221	55,958	5,263	63,546	58,489	5,057
서울특별시	10,251	9,151	1,100	10,715	9,472	1,243	10,685	9,402	1,283
부산광역시	3,784	3,336	448	4,150	3,720	430	4,436	4,034	402
대구광역시	2,233	2,003	230	2,423	2,199	224	2,592	2,387	205
인천광역시	2,305	2,105	200	2,614	2,374	240	2,583	2,342	241
광주광역시	1,744	1,522	222	1,773	1,594	179	1,970	1,814	156
대전광역시	1,889	1,660	229	1,860	1,661	199	1,846	1,680	166
울산광역시	1,925	1,739	186	1,911	1,766	145	2,088	1,980	108
세종	302	282	20	384	357	27	518	474	44
경기도	11,453	10,786	667	12,619	11,903	716	13,438	12,718	720
강원도	3,201	2,868	333	3,254	2,958	296	3,271	3,009	262
충청북도	1,889	1,704	185	1,929	1,745	184	1,989	1,804	185
충청남도	2,476	2,230	246	2,475	2,273	202	2,637	2,477	160
전라북도	2,975	2,690	285	3,223	2,966	257	3,257	3,028	229
전라남도	2,976	2,678	298	3,010	2,778	232	3,102	2,866	236
경상북도	3,808	3,468	340	4,146	3,807	339	4,235	3,930	305
경상남도	3,754	3,465	289	3,917	3,629	288	4,002	3,714	288
제주	722	667	55	818	756	62	897	830	67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부록 표 1-23 ■ 지원 대상별 보육료 및 누리과정지원금 지원 금액

단위: 천원

		보육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
2015년	만0~2세 보육료	406	357	295	-	-	-
	만3~5세 누리과정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	-	-	220 (60)	220 (60)	220 (60)
	다문화 보육료	406	357	295	220	220	220
	장애아 보육료	406	406	406	406	406	406
2016년	만0~2세 보육료	418	368	304	-	-	-
	만 3~5세 누리과정지원금	-	-	-	220 (60)	220 (60)	220 (60)
	다문화 보육료	418	368	304	220	220	220
	장애아 보육료	438	438	438	438	438	438
2017년	만0~2세 보육료 (맞춤반*)	430 (344)	378 (302)	313 (250)	-	-	-
	만 3~5세 누리과정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	-	-	220 (60)	220 (60)	220 (60)
	다문화 보육료	430 (344)	378 (302)	313 (250)	220	220	220
	장애아 보육료	438	438	438	438	438	438
2018년	만0~2세 보육료 (맞춤반*)	441 (344)	388 (302)	321 (250)	-	-	-
	만 3~5세 누리과정지원금	-	-	-	220 (60)	220 (60)	220 (60)
	다문화 보육료	441 (344)	388 (302)	321 (250)	220	220	220
	장애아 보육료	449	449	449	449	449	449

주: 1) 연령 기준은 보육연령 기준임.

2) 만0~2세 지원금의 ()는 맞춤반 지원금을 의미하며, 만3~5세 누리과정지원금의 사립유치원 기준 지원금으로 ()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지원금 액수임.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2) 교육부(2015~2018). 유아학비지원계획.

■ 부록 표 1-24 ■ 지원 대상별 시간 연장형 보육료

단위: 천원

		보육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
2015년	야간 보육료	406	357	295	220	220	220
	24시 보육료	609	535.5	442.5	330	330	330
	휴일 보육료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시간연장 지원단가	일반아동	연령 무관 2.8천원, 상한 168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장애아동	연령 무관 3.8천원, 상한 228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2016년	야간 보육료	418	368	304	220	220	220
	24시 보육료	627	552	456	330	330	330
	휴일 보육료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시간연장 지원단가	일반아동	연령 무관 3천원, 상한 18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장애아동	연령 무관 4천원, 상한 24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2017년	야간 보육료	430	378	313	220	220	220
	24시 보육료	645	567	469	330	330	330
	휴일 보육료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시간연장 지원단가	일반아동	연령 무관 3천원, 상한 18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장애아동	연령 무관 4천원, 상한 24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2018년	야간 보육료	441	388	321	220	220	220
	24시 보육료	661	582	481	330	330	300
	휴일 보육료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시간연장 지원단가	일반아동	연령 무관 3천원, 상한 18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장애아동	연령 무관 4천원, 상한 240천원 (지원율은 기준액×100%)				

주: 1)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은 평일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를 기준 시간으로 하며, 야간 보육료 기준시간은 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료 지원은 07:30~익일 07:30, 휴일 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 07:30~19:30분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록 표 1-25 ■ 지원 대상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단위: 천원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84 개월
2015년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농어촌 양육수당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0	200	200	100	100
	시간제 보육	보육료 시간당 4천원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2016년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농어촌 양육수당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0	200	200	100	100
	시간제 보육	보육료 시간당 4천원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2017년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농어촌 양육수당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0	200	200	100	100
	시간제 보육	보육료 시간당 4천원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2018년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농어촌 양육수당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양육수당	200	200	200	100	100
	시간제 보육	보육료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주: 1) 84개월 미만의 경우 미취학 자녀에 한함.
 자료: 1)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부록 표 1-26 ■ 연도별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단가

단위: 원, %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2015년	이용요금		6,000		7,800		
	소득기준	가형	4,500	1,500	4,500	3,300	
		나형	2,700	3,300	2,700	5,100	
		다형	1,500	4,500	1,500	6,300	
		라형	-	6,000	-	7,800	
2016년	이용요금		6,500		8,450		
	자녀연령 및 소득기준	A형	가형	4,875	1,625	4,875	3,575
			나형	2,925	3,575	2,925	5,525
			다형	1,625	4,875	1,625	6,825
			라형	-	6,500	-	8,450
		B형	가형	4,225	2,275	4,225	4,225
			나형	-	6,500	-	8,450
			다형	-	6,500	-	8,450
			라형	-	6,500	-	8,450
2017년	이용요금		6,500		8,450		
	소득기준	가형	4,375(75%)	1,625(25%)	4,875	3,575	
		나형	2,925(45%)	3,575(55%)	2,925	5,525	
		다형	1,625(25%)	4,875(75%)	1,625	6,825	
		라형	-	6,500	-	8,450	
2018년	이용요금		7,800		10,140		
	자녀연령 및 소득기준	A형	가형	6,240(80%)	1,560(20%)	6,240	3,900
			나형	3,900(50%)	3,900(50%)	3,900	6,240
			다형	2,340(30%)	5,460(70%)	2,340	7,800
			라형	-	7,800	-	10,140
		B형	가형	5,460(70%)	2,340(30%)	5,460	4680
			나형	-	7,800		10,140
			다형	-	7,800		10,140
			라형	-	7,800		10,140

- 주: 1) 이용요금은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기준 금액으로 정부지원+본인부담이 서비스별 이용요금임.
 2) 소득기준별도 가형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나형은 85%이하, 다형은 120%이하, 라형은 120%초과 가정을 의미함.
 3) 2018년도 A형과 B형은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미취학자녀와 취학자녀(만7세이상)로 구분됨.
 3) 괄호 안의 수치는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중을 의미함.
- 자료: 1)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51~53.
 2)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part2.go> (2018. 8. 21. 인출).
 3)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care/babycare2.do> (2018. 8. 22. 인출).
 4) 아이돌봄서비스,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2018. 8. 22. 인출).

■ 부록 표 1-27 ■ 연도별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 단가

단위: 천원, %

				영아 종일제		보육교사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2015년	이용요금			1,200		1,440	
	소득기준	0세	가형	840	360	840	600
			나형	720	480	720	720
			다형	600	600	600	840
			라형	480	720	480	960
		1세	가형	780	420	780	660
			나형	660	540	660	780
			다형	540	660	540	900
			라형	420	780	420	1,020
2016년	이용요금			1,300		1,560	
	소득기준	가형	910	390	910	650	
		나형	650	650	650	910	
		다형	390	910	390	1,170	
		라형	-	1,300	-	1,560	
2017년	이용요금			1,300		1,430	
	소득기준	가형	910(70%)	390(30%)	910	520	
		나형	650원(50%)	650원(50%)	650	780	
		다형	390원(30%)	910원(70%)	390	1,040	
		라형	-	1,300	-	1,430	
2018년	이용요금			1,560		1,716	
	소득기준	가형	1,170(75%)	390(25%)	1,170	546	
		나형	858(55%)	702(45%)	858	858	
		다형	546(35%)	1,014(65%)	546	117	
		라형	-	1,560		1,716	

- 주: 1) 이용요금은 기준 금액으로 정부지원+본인부담이 서비스별 이용요금임.
 2) 소득기준별로 가형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나형은 85%이하, 다형은 120%이하, 라형은 120%초과 가정을 의미함.
 3) 괄호 안의 수치는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중을 의미함.
 자료: 1)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51~53.
 2)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part2.go> (2018. 8. 21. 인출).
 3)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care/babycare2.do> (2018. 8. 22. 인출).
 4) 아이돌봄서비스,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2018. 8. 22. 인출).

부록 2. 아동돌봄 사업군 평가 사업

가. 아동돌봄 사업군 평가 사업 개요

1) 초등돌봄교실

■ 부록 표 2-1 ■ 초등돌봄교실(방과후돌봄서비스)

개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대상	-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 학생은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3~6학년 학생 중심으로 학년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선정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오후돌봄: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저녁돌봄: 돌봄 참여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근거법령	
사업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 학교연계형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내용이 동일함.

2) 지역아동센터지원

■ 부록 표 2-3 ■ 지역아동센터지원

개요	만 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복지교사 3,500명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동센터 및 복지교사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가정의 아동 - 가구특성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형태가 한부모가정인 모든 가구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6)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7)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9)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외)조부·모 중 1인 이상 받는 경우 해당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 선정기준으로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마) 조손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 선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사)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아) 맞벌이 가정의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3)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부록 표 2-4 ■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개요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해(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해(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마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25,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중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부록 표 2-5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개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3순위: 학교장 추천 - 기타 등
선정기준	(1순위)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해당년도 100%)내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3순위)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 그 자녀 및 기타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의에서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중·고등학교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사업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5)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 부록 표 2-6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개요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지원과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방과후~21:00(일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주요 내용 : 청소년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지도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30일)

나. 아동돌봄 사업군 부록 표

■ 부록 표 2-7 ■ 연도별 및 연령별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7세	491,138	455,780	453,142	488,783
8세	468,240	491,295	455,931	453,239
9세	442,673	468,407	491,452	456,002
10세	447,756	442,803	468,530	491,519
11세	485,234	447,854	442,930	468,545
12세	485,912	485,302	447,912	442,920
13세	521,549	485,972	485,318	447,842
14세	601,453	521,575	485,933	485,172
15세	631,983	601,468	521,487	485,709
16세	624,206	631,941	601,270	521,077
17세	657,436	624,057	631,627	600,610
18세	679,244	657,238	623,634	630,976

자료: 행전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부록 표 2-8 ■ 지역별 아동 수 및 비중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6,536,824	6,313,692	6,109,166	5,972,394
서울	1,120,436	1,067,712	1,020,898	982,102
부산	388,128	370,511	354,076	343,257
대구	325,332	310,115	296,761	286,815
인천	372,030	360,519	349,759	342,463
광주	224,011	214,290	204,962	198,169
대전	212,356	202,084	192,903	185,615
울산	159,706	152,987	146,802	142,816
세종	27,027	33,748	39,523	45,796
경기	1,715,762	1,677,803	1,641,892	1,626,512
강원	193,213	185,447	178,090	172,167
충북	204,893	197,189	190,455	185,659
충남	265,810	259,539	254,885	252,221
전북	246,423	236,822	227,565	220,086
전남	236,471	226,978	218,420	211,401
경북	314,650	303,142	291,467	284,120
경남	441,385	426,701	413,794	406,184
제주	89,191	88,105	86,914	87,011

주: 영유아(0~6세)를 제외한 7세 이상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행전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부록 표 2-9 ■ 지역별 초등돌봄사업 지원 투입 배분(2017년 자료 보완 필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학교수 (A)	전체교실수	이용학생수 (B)	비율 (B/A)	학교수 (A)	전체교실수	이용학생수 (B)	비율 (B/A)	이용학생수 (B)	이용학생수 (B)
계	5,972	12,380	239,798	40.2	5,998	11,920	238,480	39.8	245,303	245,303
서울	570	1,626	31,791	55.8	571	1,666	33,094	58.0	34,706	34,706
부산	301	578	11,587	38.5	303	585	11,773	38.9	12,336	12,336
대구	214	454	8,857	41.4	218	425	8,159	37.4	8,674	8,674
인천	243	546	11,143	45.9	246	538	11,168	45.4	11,321	11,321
광주	151	329	6,285	41.6	150	313	6,061	40.4	5,992	5,992
대전	147	363	7,710	52.4	147	366	7,737	52.6	7,734	7,734
울산	120	262	5,737	47.8	119	273	5,976	50.2	6,093	6,093
세종	35	101	1,570	44.9	37	98	1,821	49.2	2,337	2,337
경기	1,224	2,802	55,854	45.6	1,238	2,760	54,171	43.8	53,941	53,941
강원	357	611	9,643	27.0	357	617	10,449	29.3	10,695	10,695
충북	260	434	8,841	34.0	260	431	8,835	34.0	9,070	9,070
충남	415	789	14,272	34.4	416	706	14,394	34.6	14,857	14,857
전북	414	686	14,821	35.8	416	720	15,192	36.5	16,272	16,272
전남	421	663	13,439	31.9	422	621	13,035	30.9	13,125	13,125
경북	489	1,082	15,780	32.3	487	802	14,952	30.7	15,000	15,000
경남	506	861	18,359	36.3	506	818	17,689	35.0	18,901	18,901
제주	105	193	4,109	39.1	105	181	3,974	37.8	4,249	4,249

자료: 1) 2016년: 교육부 보도자료(2017. 0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별첨 1. 오후돌봄 데이터 수치임.
 2) 2015년, 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 2015년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교수, 학생수, 학생수 2017년 시도별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현황 (2017) 참조
 3)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 2015년, 2017년 수치에 오후돌봄 데이터 수치만 포함됨.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서비스 수치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2016년 수치도 동일하게 오후돌봄 데이터만 정리함.,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수치 미포함.

부록 표 2-10
지역별 방과후 보육료 자원 투입 배분

단위: 천원,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규모	지원대상 아동 수	지원규모	지원대상 아동 수	지원규모	지원대상 아동 수
계	3,144,168,458	76,977,263	2,752,437,888	45,140,468	2,265,246,023	12,770,736
서울	1,523,042,558	13,552	1,272,504,501	11,664	972,899,833	9,665
부산	474,570,970	3,232	425,618,200	2,611	370,511,370	2,185
대구	24,848,860	94	-	-	-	-
인천	34,762,240	317	29,686,488	240	26,126,160	195
광주	124,810,320	598	140,483,894	578	129,696,355	498
대전	12,234,818	120	9,262,497	93	9,158,580	90
울산	286,025,220	1,298	331,369,010	1,426	341,618,900	1,435
세종	-	-	-	-	-	-
경기	195,044,066	1,735	145,248,612	1,237	103,362,820	917
강원	76,948,660	732	45,117,250	390	12,751,270	110
충북	29,076,000	24	25,195,000	21	25,191,000	21
충남	55,310,838	551	47,252,610	469	27,500,730	273
전북	340,800	2,473	275,935	1,658	224,400	1,323
전남	75,000,000	600	40,000,000	156	18,705,000	156
경북	256,530,257	2,272	231,477,264	2,121	195,044,820	1,660
경남	145,161	1,447	86,181	771	62,155	930
제주	52,425,618	190	53,977,306	173	45,143,790	118

자료: 부처 지역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부록 표 2-11 ■ 지역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자원 투입 배분

단위: 백만원, 실인원(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입 비용 (A)	이용아동 수 (B)	비율 (A/B)	투입 비용 (A)	이용아동 수 (B)	비율 (B/A)	투입 비용 (A)	이용아동 수 (B)	비율 (B/A)
계	115,100	640,245	0.18	352,254	576,395	0.61	323,876	505,594	0.29
서울	17,035	119,503	0.14	50,086	97,534	0.51	44,417	94,387	0.28
부산	10,710	52,710	0.20	25,879	58,798	0.44	23,862	51,054	0.46
대구	14,028	53,122	0.26	30,546	55,159	0.55	26,816	45,722	0.48
인천	7,321	35,225	0.21	23,495	32,918	0.71	21,564	27,616	0.29
광주	6,523	27,676	0.24	14,244	24,056	0.59	13,189	18,368	0.40
대전	6,112	30,623	0.20	12,935	28,882	0.45	12,003	26,673	0.45
울산	3,354	14,910	0.22	6,598	16,375	0.40	6,548	14,556	0.56
세종	369	1,411	0.26	696	1,235	0.56	829	1,424	0.46
경기	12,102	112,021	0.11	68,336	100,271	0.68	62,957	84,347	0.16
강원	2,766	14,487	0.19	11,415	13,103	0.87	10,030	9,984	0.22
충북	5,005	18,769	0.27	10,022	16,640	0.60	9,296	15,872	0.44
충남	3,574	25,282	0.14	13,316	19,406	0.69	12,475	16,616	0.21
전북	7,006	33,008	0.21	18,946	31,570	0.60	17,658	28,567	0.35
전남	4,211	20,856	0.20	14,194	15,157	0.94	12,540	12,706	0.22
경북	7,260	37,415	0.19	22,312	26,729	0.83	20,457	23,024	0.23
경남	6,798	36,494	0.19	23,098	33,356	0.69	23,657	30,388	0.27
제주	926	6,733	0.14	6,136	5,206	1.18	5,578	4,290	0.12

자료: 지역별 부처 사업추진실적 자료(내부자료).

■ 부록 표 2-12 ■ 지역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원 투입 배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시설수 (A)	이용 아동수 (B)	비율 (B/A)	운영 시설수	이용 아동수	비율 (B/A)	운영 시설수	이용 아동수	비율 (B/A)
계	244	9,490	38.9	250	10,021	40.1	250	9,940	39.8
서울	24	910	37.9	25	1,000	40.0	23	910	39.6
부산	15	600	40.0	15	600	40.0	15	600	40.0
대구	12	470	39.2	12	470	39.2	13	500	38.5
인천	8	320	40.0	9	360	40.0	9	360	40.0
광주	7	260	37.1	7	260	37.1	6	220	36.7
대전	5	190	38.0	6	220	36.7	6	40	6.7
울산	6	240	40.0	6	240	40.0	6	240	40.0
세종	2	80	40.0	3	120	40.0	3	110	36.7
경기	41	1,630	39.8	43	1,770	41.2	43	880	20.5
강원	16	610	38.1	16	610	38.1	16	295	18.4
충북	11	430	39.1	12	490	40.8	12	490	40.8
충남	16	630	39.4	16	640	40.0	17	670	39.4
전북	17	670	39.4	15	640	42.7	16	630	39.4
전남	23	850	37.0	24	921	38.4	24	930	38.8
경북	14	570	40.7	13	560	43.1	13	550	42.3
경남	19	710	37.4	19	760	40.0	19	750	39.5
제주	8	320	40.0	9	360	40.0	9	360	40.0

자료: 1) 2015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 162

2) 2016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p. 152-153

3) 2017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p. 168-169

■ 부록 표 2-13 ■ 시도별 초등돌봄사업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39,798	238,480	245,303
서울특별시	31,791	33,094	34,706
부산광역시	11,587	11,773	12,336
대구광역시	8,857	8,159	8,674
인천광역시	11,143	11,168	11,321
광주광역시	6,285	6,061	5,992
대전광역시	7,710	7,737	7,734
울산광역시	5,737	5,976	6,093
세종특별자치시	1,570	1,821	2,337
경기도	55,854	54,171	53,941
강원도	9,643	10,449	10,695
충청북도	8,841	8,835	9,070
충청남도	14,272	14,394	14,857
전라북도	14,821	15,192	16,272
전라남도	13,439	13,035	13,125
경상북도	15,780	14,952	15,000
경상남도	18,359	17,689	18,901
제주	4,109	3,974	4,249

자료: 1) 2016년: 교육부 보도자료(2017. 01. 11).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별첨 1. 오후돌봄 데이터 수치임.
 2) 2015년, 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 2015년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2017년 시도별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현황 (2017) 참조
 3)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 2015년, 2017년 수치에 오후돌봄 데이터 수치만 포함됨.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서비스 수치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2016년 수치도 동일하게 오후돌봄 데이터만 정리함.,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서비스 수치 미포함.

■ 부록 표 2-14 ■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9,661	106,668	108,578
서울특별시	11,428	11,058	12,050
부산광역시	4,940	4,653	4,747
대구광역시	5,007	4,905	4,911
인천광역시	4,544	4,498	4,442
광주광역시	8,137	7,970	7,970
대전광역시	4,112	3,872	3,894
울산광역시	1,305	1,271	1,198
세종특별자치시	285	323	321
경기도	21,682	21,111	21,577
강원도	4,375	4,350	4,320
충청북도	5,095	4,959	4,960
충청남도	6,357	6,098	6,340
전라북도	7,275	7,125	7,141
전라남도	10,342	9,944	9,802
경상북도	6,503	6,417	6,617
경상남도	6,417	6,396	6,578
제주	1,857	1,718	1,710

자료: 각 연도('15-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 부록 표 2-15 ■ 시도별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연인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6,977,263	45,140,468	12,770,736
서울특별시	13,552	11,664	9,665
부산광역시	3,232	2,611	2,185
대구광역시	94	-	-
인천광역시	317	240	195
광주광역시	598	578	498
대전광역시	120	93	90
울산광역시	1,298	1,426	1,435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1,735	1,237	917
강원도	76,948,660	45,117,250	12,751,270
충청북도	24	21	21
충청남도	551	469	273
전라북도	2,473	1,658	1,323
전라남도	600	156	156
경상북도	2,272	2,121	1,660
경상남도	1,447	771	930
제주	190	173	118

자료: 지역별 부처 사업추진실적 자료(내부자료).

부록 표 2-16
시도별 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아동수(실인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40,245	576,395	505,594
서울	119,503	97,534	94,387
부산	52,710	58,798	51,054
대구	53,122	55,159	45,722
인천	35,225	32,918	27,616
광주	27,676	24,056	18,368
대전	30,623	28,882	26,673
울산	14,910	16,375	14,556
세종	1,411	1,235	1,424
경기	112,021	100,271	84,347
강원	14,487	13,103	9,984
충북	18,769	16,640	15,872
충남	25,282	19,406	16,616
전북	33,008	31,570	28,567
전남	20,856	15,157	12,706
경북	37,415	26,729	23,024
경남	36,494	33,356	30,388
제주	6,733	5,206	4,290

자료: 지역별 부처 사업추진실적 자료(내부자료).

■ 부록 표 2-17 ■ 시도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이용아동수			이용아동수			이용아동수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계	5,920	3,570	9,490	5,758	4,263	10,021	4,530	5,410	9,940
서울	690	220	910	730	270	1,000	620	290	910
부산	360	240	600	360	240	600	360	240	600
대구	380	90	470	380	90	470	370	130	500
인천	160	160	320	160	200	360	160	200	360
광주	130	130	260	110	150	260	110	110	220
대전	190	-	190	180	40	220	220	180	40
울산	-	240	240	-	240	240	-	240	240
세종	40	40	80	40	80	120	40	70	110
경기	950	950	1,630	950	820	1,770	1,790	910	880
강원	350	350	610	330	280	610	610	315	295
충북	390	390	430	390	100	490	390	100	490
충남	320	320	630	240	400	640	195	475	670
전북	350	350	670	320	320	640	280	350	630
전남	450	450	850	408	513	921	360	570	930
경북	420	420	570	360	200	560	350	200	550
경남	480	480	710	540	220	760	510	240	750
제주	260	260	320	260	100	360	260	100	360

자료: 1) 2015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 162
 2) 2016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p. 152-153
 3) 2017년 청소년 백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pp. 168-169

부록 표 2-18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자원 투입 배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시설 수 (A)	이용학생 수 (B)	비율 (B/A)	전체시설 수 (A)	이용학생 수 (B)	비율 (B/A)	전체시설 수 (A)	이용학생 수 (B)	비율 (B/A)
계	4,102	109,661	26.7	4,104	106,668	26.0	4,189	108,578	25.9
서울	414	11,428	27.6	414	11,058	26.7	450	12,050	26.8
부산	205	4,940	24.1	204	4,653	22.8	208	4,747	22.8
대구	200	5,007	25.0	199	4,905	24.6	198	4,911	24.8
인천	179	4,544	25.4	183	4,498	24.6	182	4,442	24.4
광주	300	8,137	27.1	301	7,970	26.5	306	7,970	26.0
대전	146	4,112	28.2	145	3,872	26.7	145	3,894	26.9
울산	56	1,305	23.3	55	1,271	23.1	54	1,198	22.2
세종	11	285	25.9	12	323	26.9	12	321	26.8
경기	757	21,682	28.6	763	21,111	27.7	783	21,577	27.6
강원	166	4,375	26.4	168	4,350	25.9	168	4,320	25.7
충북	188	5,095	27.1	184	4,959	27.0	185	4,960	26.8
충남	232	6,357	27.4	226	6,098	27.0	240	6,340	26.4
전북	281	7,275	25.9	286	7,125	24.9	285	7,141	25.1
전남	387	10,342	26.7	384	9,944	25.9	379	9,802	25.9
경북	259	6,503	25.1	258	6,417	24.9	267	6,617	24.8
경남	253	6,417	25.4	259	6,396	24.7	261	6,578	25.2
제주	68	1,857	27.3	66	1,718	26.0	66	1,710	25.9

자료: 각 연도('15~'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부록 3.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사업

가. 요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평가 사업 개요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부록 표 3-1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요	• 전국에 있는 6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지원대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방문 및 우편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2)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 부록 표 3-2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개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 요청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지원내용	• 거주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부록 표 3-3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에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 방문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복수혜 불가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 지원 안됨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부록 표 3-4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개요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 체중미달 /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 체중미달 /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에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 : 월 551,000원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복수혜 불가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 지원 안됨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포털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8월 27일)

5)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부록 표 3-5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개요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중 국내입양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 2세~만18세) - 추천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4회 이상, 월 20만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단, 필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방법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 부록 표 3-6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개요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함.
지원대상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7)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부록 표 3-7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개요	•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 실종아동등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개소를 통해 실종·유괴예방 방문교육 및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 방문, 전화, 우편
근거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평가 사업 개요

1)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부록 표 3-8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개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 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 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 기타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방법	• 시군구 - 드림스타트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2) 청소년 특별지원

■ 부록 표 3-9 ■ 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지원대상	• 연령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 생활, 건강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함)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상담)지원센터 상담은 아님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 비용 ·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교류활동비 · 특기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 지원 등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전화, 우편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중복수혜 불가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 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부록 표 3-10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개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만 18세미만의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만12,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신규가입 가능, 2018년은 2001년생부터 2006년생 까지 대상)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11년부터)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2011년 1999년생 신규선정, 2012년은 2000년생 신규선정, 2013년 2001년생 신규선정, 2014년 2002년생 신규선정 2015년 2003년생, 2016년은 2003년생, 2004년생 (신규선정) 2017년 2004년생, 2005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선정 2018년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선정 -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함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 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지원내용	- 기본매칭적립 : 대상아동이 월 4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 4만 원내에서 지원 - 추가적립액 : 4만원 적립 후 월 46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 방문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업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중복수혜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4) 장애아동수당

■ 부록 표 3-11 ■ 장애아동수당

개요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단, 3급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단, 3급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5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7만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복수혜 불가	• 장애수당

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부록 표 3-12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 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등급 : 1~3급 장애아동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등급 : 1~3급 장애아동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 급여액 : 1가정당 연528시간 지원 • 서비스내용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 방문(시군구, 읍면동)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중복수혜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6)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부록 표 3-13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 복지증진 유지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13만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증복수혜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7)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부록 표 3-14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개요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연령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18만원/인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인 • 학용품비 : 연5.41만원/인 • 자립지원촉진수당: 국기초대상, 월1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중복수혜 불가	• 청소년 특별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부록 표 3-1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에게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방문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9) 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부록 표 3-16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운영

개요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단,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 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등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다. 학교밖 및 위기 아동·청소년 평가 사업 개요

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부록 표 3-17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개요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 등을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한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등 지원 - 그 밖의 다양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지원
지원대상	만 9~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유·무선상담: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채팅상담(www.cyber1388.kr)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2)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 부록 표 3-18 ■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개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지원대상	만 9~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제공서비스 - 홈페이지(www.cyber1388.kr)를 이용한 사이버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웹심리검사 등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부록 표 3-19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찾아가는 전문가 심층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 9세 ~ 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 동반자):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화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4)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 부록 표 3-20 ■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개요	•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담까지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 전화 1388: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 문자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센터(#1388로 문자, 카카오톡을 러스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 제공서비스 -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내방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5) WEE 클래스 상담지원

■ 부록 표 3-21 ■ WEE 클래스 상담지원

개요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조기 진단 및 치유
지원대상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일반학생
선정기준	• 해당 초·중·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로 조치가 필요한 학생, 학교 부적응으로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지원내용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을 위한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 ※ 관련사이트(http://wee.go.kr)
신청방법	•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실 방문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사업부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6)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 지원)

■ 부록 표 3-22 ■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 지원)

개요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취약계층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
선정기준	• 연령: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소득수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단, 치료비 지원 등 일부사업은 소득별 차등 지원) - 치료비 지원: 일반 30만 원 이내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50만 원 이내 - 취약계층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내용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료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30만원, 취약계층 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부록 표 3-2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요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전국 200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공서비스 -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대안학교 진학지원, 학업중단 예방지원 등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 지역에 따라 제공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전화, 인터넷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부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8)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 부록 표 3-24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쉼터 운영 지원

개요	• 가출청소년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
지원대상	• 9세~24세 청소년(가출)
지원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자립 및 보호지원, 가정 및 학업복귀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신청방법	• 지자체,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 등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9)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 부록 표 3-25 ■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개요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지원대상	•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숙식, 상담, 치료 등 회복 및 자립지원 • 전국 4개소 운영
신청방법	•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 부록 표 3-26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개요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지원대상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교육: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교육 전후)
신청방법	•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부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검색일자 2018년 5월 2일)

라.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부록 표

■ 부록 표 3-27 ■ 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지역	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역특성화 (자기계발)	기타
서울	8,582	3,388	1,400	1,152	1,793	734	115
부산	6,134	2,538	1,035	988	1,090	324	159
대구	2,655	390	593	873	496	254	49
인천	2,502	1,452	450	229	273	98	0
광주	1,877	714	167	326	267	346	57
대전	1,861	660	236	330	462	118	55
울산	2,150	858	356	428	315	187	6
경기	10,034	4,983	1,182	1,397	1,198	1,120	154
강원	3,421	1,206	564	813	665	173	0
충북	6,504	2,269	1,252	915	870	904	294
충남	4,417	1,525	826	861	885	266	54
전북	2,620	1,181	506	366	466	99	2
전남	5,443	2,014	514	1,095	1,674	141	5
경북	4,376	2,220	617	582	818	136	3
경남	8,272	2,890	1,420	1,786	1,531	569	76
제주	1,967	861	135	542	302	127	0
세종	137	33	19	3	75	7	0
계	72,952	29,182	11,272	12,686	13,180	5,603	1,029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부록 표 3-28 ■ 2016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지역	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역특성화 (자기계발)	기타
서울	55,372	19,989	14,454	4,353	9,100	4,958	2,518
부산	55,820	21,889	11,530	3,369	12,760	4,248	2,024
대구	37,341	5,968	11,174	2,200	15,352	1,870	777
인천	26,568	9,639	6,986	1,510	6,285	1,485	663
광주	25,862	6,973	5,826	1,665	5,019	4,718	1,661
대전	20,089	2,770	4,495	1,303	6,127	1,402	3,992
울산	19,242	6,919	4,037	1,337	4,841	1,047	1,061
경기	109,659	39,102	23,804	7,670	20,451	12,800	5,832
강원	25,478	8,073	5,800	2,178	4,605	3,205	1,617
충북	48,959	17,423	11,016	3,479	10,702	1,855	4,484
충남	38,122	12,490	10,579	2,452	7,437	3,332	1,832
전북	22,975	9,920	5,065	2,141	3,036	1,898	915
전남	45,809	15,401	9,776	5,981	10,737	2,980	934
경북	41,986	15,781	9,674	3,633	6,355	3,667	2,876
경남	88,923	20,491	22,962	5,877	27,321	5,568	6,704
제주	13,132	5,716	2,331	1,379	1,902	1,620	184
세종	1,847	777	584	67	88	237	94
계	677,184	219,321	160,093	50,594	152,118	56,890	38,168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

■ 부록 표 3-29 ■ 2017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수

지역	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지역특성화 (자기계발)	기타
서울	73,457	24,688	20,301	6,095	10,624	9,387	2,362
부산	73,416	22,480	15,474	6,731	16,050	8,472	4,209
대구	58,439	11,062	12,508	3,465	25,545	3,383	2,476
인천	32,845	12,934	8,110	2,092	7,609	1,545	555
광주	31,480	6,574	6,021	3,561	4,535	10,110	679
대전	22,790	3,443	4,277	1,166	6,704	693	6,507
울산	19,390	6,740	3,967	1,531	4,908	1,200	1,044
경기	131,202	43,074	31,387	10,503	22,152	17,929	6,157
강원	24,468	6,870	6,892	2,350	4,048	2,072	2,236
충북	55,864	24,366	10,129	4,526	9,061	2,263	5,519
충남	50,281	17,929	12,300	2,740	11,161	4,359	1,792
전북	23,095	10,604	4,330	1,580	3,661	2,207	713
전남	53,066	16,367	12,446	6,034	12,703	3,280	2,236
경북	60,072	17,724	12,726	5,051	10,947	8,030	5,594
경남	101,900	27,091	26,053	5,791	29,378	8,607	4,980
제주	11,926	4,737	2,793	1,151	1,481	1,603	161
세종	2,276	901	871	119	160	216	9
계	825,967	257,584	190,585	64,486	180,727	85,356	47,229

자료: 각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내부자료).